상거래법(1993/18)

#목차

제1편 서론(1-3)

01 제1장

02 제2장 -점포, 상호, 불법경쟁, 상표, 영업보고서(39-71)

02 제2편-상업의무와 계약(72-370)

01 제1장-상업의무(72-95)

2 제2장-매매(96-163)

03 제3장 상업저당(164-177)

04 제4장 공공창고임치(倉庫任置)(178-195)

05 제5장 어음시장(196-196)

06 제6장 상업위임(委任)(197-253)

07 제7장 "중개"업(254-271)

08 제8장 운송(272-370)

03 제3편 은행업무(371-477)

01 제1장 은행예금과 계정(371-389)

02 제2장 당좌계정(當座計定) (390-408)

03 제3장 은행신용장(銀行信用狀)(409-439)

04 제4장 상업어음 관련업무(440-449)

05 제5장 금융어음(융통어음)에 관한 업무(450-466)

06 제6장 금고임대(467-477)

04 제4편 상업어음 (478-644)

01 일반법령 상업어음의 정의 (478-483)

02 제1장 환어음 (484-590)

03 제2장 약속어음 (591-594)

04 제3장 수표 (595-644)

05 제5편 파산과 파산 전 증재 (645-900)

01 제1장 파산 (645-830)

02 제2장 파산조정 (831-877)

03 제3장 파산범죄와 조정 (878-895)

04 제4장 벌금과 비용 (896-900)

제1편 서론(1-3)

제1조 본법은 상인에게 적용한다. 또한 상인이 아닌 모든 자들의 상행위에 적용한다.

제2조 1)계약자 쌍방이 합의한 바는 그 합의가 상업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상인과 상행위에 적용한다.
2)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본법 혹은 기타 상업문제관련 법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특정관습이나 현지관습이 일반관습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상관습법에 그 효력이 있다. 또한 상관습이 없으면 상업활동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법 법령이 적용해야 한다.
3)공공제도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 특정협약 또는 상관습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3조 연방법이 특별히 공표한 상업문제는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또한 본법령에 반하지 아니한다.

01 제1장

제1절 상행위(4-10)

제4조 이하 상행위라 한다:

1) 상인이 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또한 상인이 행하는 모든 영업은 그것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그의 상업과 관련된 행위로 본다.

2) 상인이 아닌 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업행위

3) 법이 상행위로 명시한 행위

4) 상업관련 혹은 상업에 용이한 행위

제5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그 성격에 따라 상행위로 본다:

1- 판매용으로 내놓거나 형태를 변경 혹은 형성된 이후의 재화와 그 밖의 유체동산과 무형동산의 구매

2- 임대목적의 재화와 그 밖의 유체동산과 무형동산의 구매 혹은 임차

3- 이전에 명백히 구매 또는 임차한 재화와 동산의 판매 혹은 임대

4- 은행, 출납업무, 증권거래시장, 투자회사와 신용기금과 재정중개기관 업무와 여타 모든 재정중개업무

5- 상업어음에 관한 것 혹은 이를 위한 업무에서 비롯된 상업어음관련업무

6-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다:

ㄱ)선박과 항공기 제작 혹은 매매 혹은 임대차 혹은 수리 혹은 보수와 해상 항공운송을 포함한 해상 항공 수송

ㄴ)선박 혹은 항공기 설비 혹은 도구 혹은 원자재 매매 혹은 공급

ㄷ)적재 혹은 양륙작업

ㄹ)해상, 항공대부

ㅁ)상업 선박과 항공기 선장과 선원 채용 계약

7- 회사설립

8- 당좌계정

9- 협동조합보험을 제외한 여러 종류의 보험

10-경매상점

11-호텔, 식당, 영화관, 극장, 경기장, 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한 행위

12-물과 전기와 가스의 유통에 관한 행위

13-신문과 잡지가 광고와 뉴스와 기사 개재를 통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이를 개재

14-우편, 소포, 전신업무에 관한

15-방송, 텔레비전과 녹화 촬영 스튜디오의 업무

16-공공 창고와 보관자금에 대한 저당물에 관한 행위

제6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그것이 직업적인 경우 상행위로 본다

1- 중개

2- 상업대표부

3- 중개부

4- 상업대리

5- 공급계약

6- 토지 혹은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판매 혹은 형태를 변경하거나 분할 후 이윤을 목적으로 이를 매매하는 행위

7- 육상운송

8- 자재와 노동자 제공 계약 시 부동산 공사(사업)

9- 자연자원채취에 관한 행위

10-관광, 관공서, 수출입, 관세통관, 직업소개소에 관한 행위

11-인쇄, 출판, 촬영, 녹화, 광고에 관한 행위

12-산업

13-동물자원과 어류자원에 관한 행위

14-제3자의 업무 임대와 임대 목적으로 이를 임차

15-가구가 딸리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집 혹은 아파트 혹은 원룸을 재임대 목적으로 임대차

제7조 전 2조에서 명시한 행위와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여 유추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제8조 예술가가 스스로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작가가 본인의 글을 출판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제9조 1)농민이 자신이 소유한 혹은 경작을 통하여 토지를 변경한 후

경작한 토지산물을 파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단, 농민이 토지산물을 있는 그대로 혹은 가공 후 판매를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상점 혹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판매행위를 상행위로 본다.

제10조 계약자 일방에게 있어 행위가 상업적이고 타방에게 있어 민사적인 경우 법이 특정하게 명시하거나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본법은 쌍방의 의무에 적용한다.

제2절-상인(11-25)

제11조 이하 상인이라 한다: 1)자신의 명의로 상업을 위해 일하는 자이다. 또한 상인은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직업으로 채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을 가진다.
2)민간적 활동을 이행했을지라도 상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법에 명시된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모든 회사

제12조 설립한 점포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제13조 차명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혹은 명의인이 상인이라는 점을 밝히는 대신 타인의 뒤에서 상행위를 하는 모든 자는 상인의 성격을 띤다.

제14조 특별 법 혹은 제도에 따라 상행위가 금지된 자가 상행위를 한다면 상인으로 보고 상법을 적용한다.

제15조 국가부처와 부서, 공공기관과 공공이익을 위한 위원회와 기관과 협회와 상행위를 아니하는 자유직업종사자는 상인의 성격을 띄지 아니한다. 단, 이들이 하는 상행위는 법령이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이 적용한다.

제16조 국가 혹은 공공위원회와 기관이 설립하거나 소유하거나 기여하는 상업회사는 상인의 성격을 띈다. 또한 이 회사에는 법령이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을 적용한다.

제17조 화폐자본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상업에 의존하여 단순노동 혹은 영세사업 행위를 하는 개인은 상업장부 혹은 상업 등기 등록에 관한 상인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파산, 보호계약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경제 및 상업부는 에미리트의 관할 당국과 협의하여 이들의 수와 영세상업 자본의 최소한도를 정한다.

제18조 1)법에 반하지 않은 만 21세에 달하는 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2)그럼에도 후견 혹은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만 18세에 달하고

법원의 절대적 혹은 제한적 허가를 얻은 경우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 1)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에게 상업자금이 있다면 법원은 따라 자금출자나 그의 이익이 되는 바에 따라 상행위 지속을 명할 수 있다.
2)법원이 상행위 지속을 명한다면 법원은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의 대리인에게 이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행 할 수 있는 절대적 혹은 제한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타당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법원은 권한을 철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단, 이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의 상행위 지속 혹은 지속권한 철회 혹은 제한에 관한 사안은 법원에서 공표하며 이는 아랍어로 상업등기에 기재하고 두 관보에 개재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이 미성년 혹은 금치산자의 상행위 지속을 명한다면 이 상업의 투자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파산선고는 파산이 이 상업에 투자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에게는 파산에 선고되지 아니한다.

제21조 1)기혼녀의 상행위 자격여부는 민법 제11조와 그의 본국법이 정한다.
2)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혼녀의 경우 남편의 허가를 받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단, 적용되어야 할 법이 부인에 대한 남편의 상업종사 반대

혹은 이전허가 철회를 허용하면, 이는 아랍어로 상업등기에 기재하고 두 관보에 개재하여야 한다.

3)부인에 대한 남편의 상업종사 반대 혹은 이전허가 철회는 상업등기 기재와 개재 완료 시기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이 반대 혹은 허가 철회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2조 1)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혼녀는 부부간재산계약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혼인한다. 또한 이를 상업등기에 기재하고 그 요약본을 두 관보에 개재하지 않은 경우 본계약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아랍어로 상업등기에 본계약 기재와 두 관보에 그 요약본을 개재 해태시 제3자는 혼인이 재산분할제보다 더 적절한 이득이 있는 재산제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

3)아랍어로 상업등기 기재와 두 관보 개재 이전에는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한 외국판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조 1)외국인은 회사법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혹은 그 조건에 따라 자국민 동업자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2)직업인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국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본법집행기간을 갖는다. 이들의 자신의 상황이 법령에 상응하여 자국민 동업자를 갖지 아니하는 자이다.

제24조 1)다음과 같은 자는 명백히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ㄱ)본법이 그를 상인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파산 선고한 모든 상인

ㄴ)본법이 그를 상인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장파산 혹은 상업사기 혹은 절도 혹은 기만 혹은 신뢰파기 혹은 위조 혹은 위조지폐 범죄로 판결이 선포된 모든 자

2)전항에 명시된 금지를 어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이상 만 디르함[1] 이하의 벌금 또는 모든 상황에서의 상점 폐쇄로 처벌 받는 자

제25조 상업등기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상인의 업무에 관한 상행위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

제3절-상업장부(26-38)

제26조 1)상인은 그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하고 그의 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여 업무의 성격과 중요성을 요하는 상업장부를 보유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상인은 이하 두 장부를 보유한다.

ㄱ)매일장부

ㄴ)상업부기장

[1] 아랍에미리트의 화폐단위. 기호는 DH.

제27조 1)매일장부는 상인이 행하는 모든 재정행위와 그의 개인어음을 기록한다. 또한 매일 기록한다.

2)상인은 상세한 상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매일보조장부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정기적으로 매일장부에 상행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보조장부를 일반장부로 본다.

제28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업부기장에 기록한다:

1) 증명문건으로부터 나온 매일장부의 모든 계정, 특히 기금, 은행, 동업자, 채권자, 채무자, 이윤, 어음, 지출에 관한 계정
2) 최근 회계연도에 상인이 보유한 상품의 세부사항 혹은 이에 관한 모든 보고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이 자체장부 혹은 목록에 명시되는 경우 이 장부 혹은 목록을 상업부기장의 추가분으로 본다.
3) 일정형태의 연간 예산과 손익결산

제29조 1)상업장부는 모든 공백 혹은 소멸 혹은 삭제 혹은 여백의 기입이나 그 외 부분의 삭제 혹은 기입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일반일일장부와 상업부기장을 이용하기 전에 상인에 대한 상업등기 내 두 장부에 관한 부분에 날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일자를 확인하고 상기 언급한 부분에 공식결산을 기입해야 한다. 두장부 중 한 장부에 관한 부분이 소멸하는 경우 상인은 이를 최종기입 후 혹은 새 장부 사용이전에

동 부분에 이를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3)상점영업 중단 시 상인 혹은 상인자산은 상업등기에 두 장부를 제출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4)이전상황의 공식결산기록과 확인에 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상인은 상법이 게시 혹은 공표한 조항, 전문, 송장의 정확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된 그의 상행위에 관한 모든 조항, 전문, 송장, 그밖에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보관은 발송 혹은 도착일자로부터 5년 이상 참고가 용이한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31조 상인 혹은 영업양도인은 상업장부와 이에 관한 기록문에 대한 보조문건을 장부 소멸일자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산업부[2]장관이 지정한 은행, 회사 혹은 기업은 전 두조에 언급한 기간동안 송장, 문건, 조항, 전문, 그밖에 경제행위와 상행위 관련 서류대신 이를 (마이크로필름 혹은 그밖에 최신기술장비를 통하여) 간단한 형태로 보관한다. 또한 이 합리적 형태는 재정산업부장관이 지정한 본조항의 목적을 위해 이의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이 은행과 회사와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아랍에미리트 재정산업부(http://www.uae.gov.ae/mofi/)

제33조 공인된 상업사용인에 의한 상업장부의 기록은 상인 스스로 기재한 기록에 명시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다르게 기록 할 수 있다.

제34조 법원은 자체 수령 혹은 상대방 중 1명의 요청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관한 바를 요구하기 위해 상인에게 그의 상업장부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자체적으로 혹은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이 장부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다.

제35조 1)법원은 제기된 분쟁이 상인과 상대방의 공동자산 상속 혹은 공유 혹은 분할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열람을 목적으로 상인에게 상업장부 제출을 명할 수 없다.
2)파산 혹은 이로 인한 실질계약의 경우 상업장부는 해당법원 혹은 파산관리인 혹은 계약 감독자에게 위임한다.

제36조 상인이 보유한 상업장부는 그의 상행위와 관련하여 상인으로부터 혹은 상인에 대하여 진행하는 소송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다:

1) 상업장부에 명시된 보고서는-본법령에 따라 체계적이지 않더라도-보관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증거로써 보고서를 요구하는 자는 언급된 보고서를 분할할 수 없다.

2) 본법령에 따른 체계적 상업장부에 명시된 보고서는 상인 상대방에 대한 장부 보관인의 증거가 된다. 단, 상대방이 본법령에 따른 체계적 상업장부에 명시된 보고서를 거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타당성 부재로 보고서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다.
3) 쌍방의 장부가 본법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대조작업을 통해 쌍방 보고서가 상위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4) 쌍방의 장부의 보고서가 서로 상위하고 일방의 장부가 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타방의 장부가 비체계적인 경우, 체계적 장부에게 그 의의가 있다. 단, 타방이 이에 언급된 바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그러하다. 본법은 일방이 체계적 장부를 제출하고 타방이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않을 시 적용한다.

제37조 상인 쌍방 중 일방이 소송에서 그의 상업 상대자의 장부에 의거하고 사전에 이에 언급된 바를 위임하는 경우 상업상대자는 바로 이 장부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는 장부의 확인이 필요한 문건의 타당성에 대한 증명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의 타당성에 관하여 서약할 수 있다.

제38조 영업을 조직하는데 있어 컴퓨터 혹은 본법의 (26, 27, 28, 29)조항의 최신기술장비를 이용한 상인은 예외로 한다. 또한 이 장비 혹은 그밖에 첨단방식으로 얻은 정보는 상업장부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정산업부

장관의결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공공규정을 제정한다.

02 제2장 -점포, 상호, 불법경쟁, 상표, 영업보고서(39-71)

제1절-점포, 상호, 불법경쟁(39-70)

1.제1관-점포(39-56)

제39조 점포, 상호, 불법경쟁

제1관

점포

점포란 상행위를 위한 모든 물적 지적자산이다.

제40조 1)점포는 상업활동의 필요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이 요소는 자재, 기계, 도구와 같은 물적요소와 고객관리, 상업적 명성, 상호, 임대권과 상업과 무형, 기술적 재산권과 허가증과 같은 지적요소로 나눌 수 있다.
2)점포에 물적요소가 많이 갖추어져 있거나 그 이상인 경우 점포에 없는 지적요소보다 더 필요한 요소로 본다.

제41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상인의 경우 이 부동산은 점포의 한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에 상위하는 모든 조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점포재산이전 혹은 이에 대한 물적 권리 확립에 관한 행위는 허위가

아니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상업등기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 행위는 이하 항목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자 성명, 국적, 거주지
2) 행위일자와 그 형태
3) 점포형태, 주소, 이 행위의 해당요소
4) 물적요소, 그밖에 요소의 가치, 이 행위가 매매행위인 경우 각각의 가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계약비준 시 필요한 부분과 기타사항의 이행방안
5) 점포에 관한 계약과 약정에 관한 합의사항(존재 시)
6) 판매자의 취소권 혹은 중지권 혹은 특허권에 관한 합의사항(존재 시)

제43조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선 상품가격에서부터 자재와 비물질적 재산의 가격을 공제한다.

제44조 1)제3자에게 있어 계약자간의 점포재산이전은 아랍어로 상업등기에 기재하고 그 요약문을 두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이행할 수 없다. 두 문서의 게재기간은 각 이의신청기간 후 1주일이다.

2)점포가 특정 공시 혹은 등기제도에 해당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점포행위에 관한 공시는 특정 공시 혹은 등기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점포행위는 다음과 같은 절차완료 후 이행한다:

1)해당 점포의 종업원은 고객의 요구와 소비에 따라 판매계약의 요약문을 아랍어로 두 관보에 게재한다. 두 관보의 게재 기간은 각각 1주일로 한다.

2)전항에 언급한 요약문은 계약자들의 이름, 국적, 거주지와 점포지정, 한도총액, 마지막 달로부터 10일 동안의 채권자 이의제출권을 포함한다.

3)해당상점이 위치한 지역의 민사법원에 대한 이의제출은 부채규모와 그 사유를 포함한다.

4)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시 법원의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판매자는 채무자 권리 이행이 충분히 보장받는 경우 이의신청고려 이전에 해당판사에게 대금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5)이의신청채권자 혹은 저당권자는 합의가격보다 5퍼센트 높은가격으로 본인 혹은 제3자의 점포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

6)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제시된 증가분과 함께 원가 3분의 1이상의 금액을 법원금고에 저장할 수 있다.

7)관할법원은 점포매매계약 쌍방에게 경매청구를 통지한다. 통지일자로부터 20일이 경과 시 법원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점포판매를 결정한다.

제46조 1)점포의 재산을 보유한 모든 자는 법령에 의거하여 점포에 관한 계약에서 비롯된 모든 권리와 약정에 있어서 행위자를 대신한다. 단, 이에 관하여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계약이 개인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에 명시한 계약의 차선권자는 점포행위공시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폐업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새 소유자가 제때 폐업을 통지한 경우 그러하다.

제47조 1)점포의 재산을 보유한 자는 이전 채권자들에 관하여 점포 재산 매각에 대한 그들의 부채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공시시기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관하여 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아랍어로 게재한다. 두 게재 시기는 각 일주일이며 게재일자로부터 90일 이후 채권자들에게 이 시기에 관하여 공시한다. 또한 이 조항 내 언급한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기언급한 기간동안 이전소유자들이 관련서류를 제출한 이 채무재산의 양수인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양도인들이 전항에 명백히 명시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채에 관하여 해당 점포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3)재산처분자는 공시이전에 발생한 상인의 부채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단 이 부채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비준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다.

제48조 파산법은 예외로 하고 금액을 완전히 수령하지 않은 점포매도인은 본인의 점포매매계약취소, 철회권 혹은 특권으로 매수인의 파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에 이 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한 계약요약문에 명백히 명시한 경우에 그러하다. 또한 그가 보유한

요소에 대하여는 취소권 혹은 정지권 혹은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9조 1)점포는 은행과 융자기관 외 다른 기관의 저당물이 될 수 없다.
2)저당이 적용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호, 임대권, 고객관리, 상업명성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50조 1)저당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상업등기에 기재되는 계약에 한하여 행한다.
2)저당계약은 매도인이 저당상점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허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인의 상점에 대한 보험회사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1조 1)상업등기기록은 기재일자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다. 전기간 동안 갱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된다.
2)이 기록은 해당소유자의 상호합의 혹은 최종판결에 따라 말소한다.

제52조 저당자는 점포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3조 1)점포소유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금액, 그밖에 것 및 저당권자의 만기일 부채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 혹은 저당권자는 상점소유 채권자의 통지기간으로부터 8일 후, 그들의 특권이 적용하는 상점재산 모두

또는 일부를 경매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해당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이 매매는 특정장소, 일자, 시간에 판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또한 매매에 관하여 최소 10일전에 게재한다.

제54조 전항에 명시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저당물보유권 혹은 처분권을 허용한 저당계약 전문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55조 매도인과 저당권자는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와 특혜로 보험금 만기에 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고 증명된다면 일정보험금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56조 점포 영업에 이용한 저당설비와 장비를 갖춘 점포임대인은 2년 이상의 사용료에 대하여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02 **제2관 상호(**商號**)** (57-63)

제57조 상호는 상인개인의 이름과 칭호로 구성한다. 또한 상기 언급한 자들에 대하여명시한 영업형태관련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상호작명이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는 사실과 부합하여야 하며 공공질서 및 윤리를 위배 혹은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회사의 상호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59조 상호는 관련판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호와 그 칭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경우 상인은 타인의 상호와 구별 할 수 있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1)상인은 상호를 점포외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상호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
2)상인은 폐지 혹은 소멸한 타인의 상호를 폐지, 소멸일자로부터 1년 경과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 1)상호처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점포소유자가 점포를 정리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직 간접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를 처분 할 수 없다.
3)상호를 제외한 점포재산양수인에 관하여 상업등기에 기재된 특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인의 의무에 대하여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1)점포재산양수인은 상호를 소유하거나 혹은 양도인으로부터 재산이전에 명시한 설명첨부 시 상호사용에 관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2)전항의 위반 시 구류 또는 10000디르함 이상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벌한다.

제63조 1)점포재산이전으로 인한 상호양수인은 이 상호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양수한다. 또한 이에 관한 모든 합의는 상업등기기재, 관계인 통지일자 이전에 제3자의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거부, 합법성 부재 시 점포재산이전일자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인 의무에 관한 책임 소송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3관-불법거래(64-70)

제64조 상인은 경쟁자의 종업원 및 고용인을 선동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혹은 경쟁업체에서 이탈하여 그 비밀을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거래로 추정하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65조 상인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특징, 그밖에 상품의 특성이나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상위하는 사안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본인의 등급 또는 증명서 또는 상의 수령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유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6조 상인은 상품의 종류를 위조 혹은 날조하거나 경쟁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에 관한 거짓문서를 보급,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7조 상인은 전고용인 및 종업원에게 사실에 상위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명서 위조로 인한 경쟁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68조 1)상인이 제3자에게 가능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호를 보유한 자가 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은 상업등기에 기재되는 경우 관할법원에 사용금지와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그들의 보상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전항의 위반 시 구금 혹은 10000디나르 이상의 벌금 혹은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벌한다.

제69조 본래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인해 영업장에 영업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인의 상도 및 재정상황에 관하여 사실에 상위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70조 상기 언급한 법안은 이 법안이 포함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안이 명시한 처벌에 합의한다.

제2절-상업거래와 상업보고서(71-71)

제71조 상업거래와 보고서는 공표한 관련법이 지정한다.

02 제2편-상업의무와 계약(72-370)

01 제1장-상업의무(72-95)

제72조 1)2인 혹은 그 이상의 수인이 상업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관련법,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전항의 법령은 상업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다수인 경우 적용한다.

제73조 관련 법 및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보증인이 채무자의 상업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또는 상인이거나 또는 채무보증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보증을 상업적인 것으로 본다.

제74조 상업보증에 있어 보증인들 중 일부는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75조 상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영업에 관한 행위 혹은 서비스 제공 시 다르다는 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인은 보상으로 행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관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은 관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6조 채무자는 계약의 규정가격에 따라 상업부채에 대한 이자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규정가격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 통용되는 이자에 따라 계산하고 이러한 경우 지불완료까지 12%를 넘지 아니한다.

제77조 계약이 이자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지불완료가 이행될 때까지 합의 가격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제78조 채무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거나 부채 만기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상관습을 적용하거나 또는 이에 관하여 은행의 집행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한 연말에 이자를 지불한다.

제79조 채무기간을 정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관한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전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만기 이전에 부채 지불을 완료 할 수 없다.

제80조 상인이 그에 영업에 관하여 공표한 청구와 권한은 그의 이행종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함께 상속인들은 상업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청구와 권한 폐지

의향을 피상속인의 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어떠한 보상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1조 1)일정 기간동안 특정물에 관한 수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수령의무시기 지정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에 근거한다. 또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관습에 의거하여 수령한다.
2)상품의 기준방안, 무게, 수량에 관하여 국가에 통용하는 관습에 따라 계약한다.

제82조 채무자가 불이행한 계약을 지연 또는 종료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에 관한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제83조 채무가 연기되고 채무자가 만기해제이전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관련 합의 혹은 법령이 다르게 판결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합의 없이 부채상환 시 채무의 일부를 삭감할 수 없다.

제84조 계약자 일방이 계약 이행 전 계약파기권을 가지는 경우 계약에 명시된 의무 이행 혹은 타방의 계약의무 이행으로 그의 파기권을 상실한다.

제85조 상업문제의 경고 혹은 사면은 공증인 혹은 수신통지 등기우편 혹은

전보로 이루어진다.

제86조 법원은 채권자의 합의가 없이 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시 상업의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상환 및 할부상환유예를 허용할 수 없다.

제87조 채무자가 채무청산명령서를 가진 자 또는 채권자의 청산영수증을 보유한 자에게 상업채무를 이행할 시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된다.

제88조 상업채무에 일정금액이 필요하고 그 한도와 채무발생시기를 공지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지체될 시 특별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체에 대한 보상으로 전 두 조(76조, 77조)에 규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9조 지체에 대한 이자지급 시 채권자는 지체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하여 증명 할 필요는 없다.

제90조 상업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이자는 이에 관한 법 혹은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불을 통해 만기된다.

제91조 1)채권자는 채무자가 사기 혹은 큰 오류로써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야기하였다는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이행지체에 대한 이자에 더하여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채권자가 악의로 논쟁기간연장권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자를 삭감하거나 혹은 근거 없는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이자지급을 판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92조 1)일정금액지불 및 상품수령에 사용하는 모든 수표는 채권자의 경우 배서(背書)방식으로 유통하고 소유자의 경우 위임할 수 있다.

2)배서 및 위임 이후 수표로 인한 모든 권한은 배서자 혹은 새 소유자에게 이전한다.

3)배서인은 배서에 관한 권리에 따라 보증제한에 대한 배서형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만기일 수표의 기존권리를 배서 시 이행한다.

4)영업으로 발행한 수표의 경우 배서형식에 있어서 다른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표서명자는 이를 보증한다.

5)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전 수표발행인 혹은 소유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불로 수표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수표소유자의 의도로 채무자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지불이 채무자의 능력부족에 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6)채무자는 채무청산명령서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표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3조 채무자의 채무서류는 이에 관하여 다르게 증명할 때까지 채무면제의

증거가 된다.

제94조 상업의무는 이에 관한 법 또는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치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제95조 거부와 합법성 부재 시 법이 그 최소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상인의 상호의무와 의무이행일자가 10년 경과한 상행위에 관한 소송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2 제2장-매매(96-163)

1 제1절-일반법령

제96조이 절에 명시한 법안은 이에 관하여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영업을 위해 상인들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적용한다.

제97조 계약자 쌍방이 가격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간의 거래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그들 간의 이전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 통용되는 가격으로 계약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상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가격을 적용한다.

제98조 계약자 쌍방이 시장가격을 통한 매매에 합의한 경우 가격은 합의가 특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일시와 장소의 가격에

따라 정한다. 또한 여러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절충가격을 적용한다.

제99조 계약자 쌍방은 제 3자에게 상품가격지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정일자 미 결정으로 결정된 일자 또는 적정일자에 가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일시와 장소의 시장통용가격을 적용한다.

제100조 상품의 수량을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합의 또는 통용되는 관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품의 정량(定量)에 따른다.

제101조 1) 매수인이 상품의 형태, 증서, 그밖에 특성을 지정할 것에 관하여 계약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매수인은 특정기한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합의기한 또는 적정기한에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2)매수인이 상품의 특성을 정하지 않은 채 전항에 명시한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상품 특성을 지정하거나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매수인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이 지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제102조 1)상품인도(商品引渡)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기한에 상품인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계약을 체결한다.
2)계약자 쌍방이 매수인의 상품인도시기지정에 합의하는 경우 매도인은

상품인도와 상품구비기간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시기에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03조 1)매수인에게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 상품을 인도하는 때까지 상품훼손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2)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상품인도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품인도시기부터 상품 수령시기까지 상품파손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3)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의 자체부담이 아닌 운송방식에 대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품의 훼손의 책임은 이 위반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
4)상품인도지정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의 상품인도비용은 특정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4조 상품인도 시 발생한 결함은 관습에 따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매도인이 지정상품을 인도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적정한 기간 내 상품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법원에 필요한 보상과 함께 매도인에게 가능한 시기의 지정 상품 인도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계약을 해제(解除)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도인의 부담으로 유사상품을 구매하여 합의 가격과 상품 취득의도로 지불한 금액의 가격분할(價格分割)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에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인은-유사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매도인에게 합의가격과 지정일자의 상품인도 시장가격간의 가격분할(價格分割)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6조 계약자 쌍방이 상품의 [3] 분할인도(分割引渡)에 합의하는 경우 매수인은 합의기간에 한 차례의 상품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약해제는 상품분할로 인하여 매수인이 큰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한 분할인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매수인이 합의일자에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 후 상품판매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이 선의로 합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격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에 시장통용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게 합의가격과 상품지불 지정일자의 시장가격간의 가격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8조 1)가격지불을 완료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격지불완료를 명시한 상품명세서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상품명세서를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모든 자는 명세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품인도시기로부터 8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3] 돈이나 화물 따위를 몇 번으로 나누어서 넘겨주는 일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양도에 대한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

제109조 1)매수인이 상품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법원에 그의 상황을 증명하고 법원이 지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 법원의 감독 하에 판매 허용을 요청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법원은 유예, 통지 없이 훼손이 쉬운 상품판매를 명할 수 있다.
2)판매총액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분쟁이 조정될 때까지 매도인이 부담한 총지출의 공제 후 법원금고에 보관한다.

제110조 상품인도 시 수령한 상품이 수량과 종류에 있어서 합의한 상품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다른 종류의 상품수령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의도에 맞게 상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를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계약파기 판결요청거부 시 수령상품수량의 부족 및 초과에 따라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 및 결함여부에 따라 가격을 삭감하거나 보완할 것은 결정 할 수 있다. 이는 계약파기에 관한 특정합의나 관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111조 1)전조에 명시한 상황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실제 상품인도기간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종류의 상품수령 및 상품하자에 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전항에 명시한 인도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파기 및 가격삭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의 결함이 알려지지 않고 기존상품검사에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발견 시 지체없이 이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상위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상품인도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함에 대한 책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매수인이 다른 종류의 상품수령 및 상품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항에 명시한 기한에 계약해제, 가격삭감, 하자의 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소송은 거부 및 합법성 부재 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고의성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인도기간으로부터 1년 경과 시 이 소송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3)실제 상품인도시기로부터 60일 경과 후 상품수량의 초과 또는 종류에 따른 가격보완에 대한 매도인의 소송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4)매수인에게 전항에 명시한 기간을 면제해 주거나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12조 1)상품이 등록된 상표의 보호를 받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판매 시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부과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2)법원은 상품이 필수품(必需品)에 포함된다고 추정하는 경우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판결 할 수 있다.

3)매수인들은 이전에 명시한 조건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13조 공급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우선권을 결정하는 납품계약 시 매수인이 제3의 공급자로부터의 유사상품 구매를 금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합의기간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적용한다. 또한 최대기간에 대한 모든 합의는 5년 미만으로 한다.

02 **제2절-매매의 종류**(114-163)

01 **제1관-할부매매**(114-121)

제114조 할부매매계약서는 2통의 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매매상품의 특성과 가격의 정도와 할부기간과 조건을 지정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통의 사본을 양도하여야 한다.

제115조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할부금 지불은 계약서에 명시한 매도인의 거주지에서 이행한다. 매수인의 거주지에서 할부금 수령을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에 관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할부금 청산은 그에 대한 이전 할부에 대한 청산으로 본다.

제116조 1)매수인이 합의가격에 대한 할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 후 필요 시 보상과 함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경우 매수인에게 지불유예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 매수인이 할부금을 지불하는 경우 계약해제요구를 부결(否決)시킬 수 있다.

2)계약해제 판결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품을 돌려주어야 하며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특정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에 입힐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께 매수인이 지불한 할부금을 이익금 공제 후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합의한 총액은 이자와 함께 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해당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한 가격해결에 관한 합의는 만기일자에 할부금 미 지급 시 효력을 갖는다.

제118조 1)매수인이 모든 할부금을 지불할 때까지 매도인이 매매되는 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매수인은 최종할부금 지불을 통해 이 동산을 취득한다. 또한 수령 후 동산파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2)'파산' 장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산소유조건은 제3자의 권리에 있어 효력을 갖는다. 단, 이 조건이 합의에 기록되거나 제3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119조 할부매매계약이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 재산보유조건은

제3자의 권리에 있어서 효력을 갖는다. 단, 이 조건이 확정된 일시에 관한 합의에 기록되고 상품에 관한 채권자들의 이행절차에 우선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120조 동전

제121조 계약자 쌍방이 매매를 임대로 보는 경우에도 전조에 명시한 할부매매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02 제2관-이미 사용한 동산의 공개선별경매(122-128)

제122조 1)이 관의 법령은 이미 사용한 동산의 공개선별경매에 적용한다.

2)공개선별경매에 관한 모든 매매는 지정된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3)이미 사용한 동산을 뜻하는 모든 점유동산재산은 모든 재산취득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이전한다.

제123조 1)민법절차에 관한 법령과 일부 매매의 종류에 관한 법에 반하는 경우 전조에 명시한 동산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업자를 통하여 경매를 이행할 수 없다. 이 목적을 위한 장소에서 해당동산과 장소에 관하여 관련 [4]토후국 내 관할당국의 허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아랍에미리트연방을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iah), 아즈만(Ajman), 움알콰인(Umm al-Qaiwain),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푸

2)낙찰자는 전항과 상위하게 이루어진 경매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거부와 합법성 부재 시 경매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 경매취소소송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3)경매제시가격이 10000디르함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매물은 전 두 항에서 예외로 한다.

제124조 1)경매를 담당하는 전문감정평가업자는 경매해당물품의 세부항목과 1차감정평가액과 판매인 명단을 아랍어로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물품에 기록번호카드를 부착하고 모든 매매 결과를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전항을 위반하는 모든 자는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문감정평가업자의 직무에 관한 판결에서 명시하는 어떠한 처벌 및 징벌(懲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 위반 시 2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 경매 목적물에 대한 1차감정평가액이 20만 디르함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감정평가업자는 경매에 관하여 일간신문에 기재하고 국가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일시로부터 최소 7일전에 둘 중 하나를 아랍어로 기재하고 경매물에 대한 검사일자는 입찰일자 이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자이라(Fujairah)

제126조 1)경매 낙찰자는 경매위원회에 낙찰가의 반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낙찰물 수령 후 지불하여야 한다. 낙찰물은 경매일자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한다.

2)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전항에 명시한 일자에 낙찰물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령일자 경과 후 15일 이내 재경매(再競賣)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낙찰자에 대한 재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이전 입찰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입찰한 경우 낙찰자는 나머지 금액 지불 및 가격에 다르게 책정된 목적물 수령을 할 수 없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입찰한 경우 경매의뢰인은 가격증대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4)경매를 실시한 전문감정평가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한다. 금액 지불에 관한 책임은 경매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자에게 있다.

5)경매의뢰인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자신이 제시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7조 입찰장소제공인과 전문감정평가업자는 경매실시금액에 대하여 임금 혹은 수수료 수령권한을 갖는다.

제128조 전문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이행과 입찰장소이용에 관하여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재정산업부 장관의 결정을 공표한다. 다른 법이 명시한 최고의 처벌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결정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게 5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판사는 사용이 법에 위배되는 사무실 및 영업장 폐쇄와 간판 및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아랍어로 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03 제3관-점포 내 경매와 낮은 가격을 통한 매매(129-132)

01 첫 번째-경매(129-129)

제129조 점포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하여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후 상품에 대한 경매를 할 수 있다:

1)점포정리

2)1종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종류의 영업상품이 최종 영업일까지 남아있는 경우

3)본점이 위치한 도시 이외의 다른 지역의 지점 중 1곳을 정리하는 경우

4)한 토후국에서 다른 토후국으로 본점과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점포는 최대 4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경매종결일자로부터 최소 6년 이내에는 점포를 정리한 관할 토후국 내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없다.

5)화재와 누수 및 습기, 곤충떼, 그밖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상품정리

02 두 번째-낮은 가격을 통한 판매(할인판매)(130-131)

제130조 두번째-낮은 가격을 통한 판매(할인판매) 1)한 도시 내 본점과 그 지점은 계절상품(季節商品)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회, 그밖에 다른 상품에 대하여 1회 정도 할인판매 할 수 있다.

2)할인판매는 3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또한 계절상품에 대한 할인판매는 이전 계절상품 할인판매 종료일로부터 최소 5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3)할인판매에 관련 법령은 모든 관련행위를 낮은 가격을 통한 판매에 대한 공지행위로 본다.

4)할인판매 및 모든 방식을 통한 공지행위는 해당 토후국 내 관할당국의 허가취득 후 가능하다. 관할당국은 이 허가를 통해 할인판매개시기간과 종료기간, 기간전과 기간후의 판매가격을 지정한다. 또한 효력있는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관할 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자에게 허가를 승인한다.

제131조 해당 토후국 내 관할당국 직원은 이 법의 전 두조(제129조, 제130조)의 법령이행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정리 및 할인판매허가를 취득한 점포에 출입하여 허가에 관한 서류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위반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03 세 번째-처벌(132-132)

제132조 세번째-처벌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자는

2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재 위반 시 3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일자로부터 3년동안 위반자에게 할인판매를 불허한다.

04 제4관 국제매매의 종류(133-163)

01 FOB 매매(133-140)

제133조 1)FOB매매란 매수인이 운송을 지정한 선박의 선적항에서 상품수령이 이루어지는 매매이다.

2)이러한 종류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고 매도인에게 운송선박명, 선적장소, 선적일자, 선적의무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계약과 매수인부담으로 하는 상품보험계약체결을 약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 운송위탁계약내용을 적용한다.

제134조 1)매도인은 상품을 포장하여 선적항에 운송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여야 한다. 이는 지정일자에, 선적의무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2)매도인은 물품선적이전에 상품포장비 및 검사, 측량, 계산, 무게측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3)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상품선적을 통지하고 선적증명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5조 1)물품이 국외 수출용으로 수출허가 또는 그밖에 정부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허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매수인은 수입허가와 그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매도인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36조 동전

제137조 매도인은 수출세를 포함하여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물품 선적에서부터 본선의 난간을 통관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이 단계까지 물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이후의 비용과 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38조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선적의무기간종료 후 선적항에 연착하거나 선박이 이 기간 종료이전에 상기 명시한 선적항을 떠나거나 또는 매도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물품이 선적의무기간에 도착한다는 조건 하에 이 기간의 경과 후 발생할 물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39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당한 시기에 선박명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일정 기간 내 물품수령일자 지정권한을 갖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기간 내 적절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통지기한 또는 수령일자 지정에 대한 합의기간 경과 후 매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지정기한의 상품도착을 전제로 한다.

제140조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박하는 선착장 부두에서 물품을 수령한다고 합의하는 경우 이 매매를 (F.A.S)매매로 칭한다. 또한 이 매매는 선박의 상품선적을 제외하고 FOB 매매제도를 적용한다.

02두 번째- CIF매매(141-154)

제141조 1)CIF매매란 상품원가, 해상보험료,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각각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매매이다.

2)상품은 선적완료 시 매수인에게 수령하며 이 기간 이후 상품 멸실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매도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매매를 (C & F)매매로

본다.(*)

제142조 매도인은 선의의 운송인과 일반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운송을 위한 선박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비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지불하기로 한 그밖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43조 1)매도인은 선의의 보증인과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또한 통용 가능한 증명서와 관습에 맞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매매계약에 명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또한 일반 운송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 아닌 경우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매수인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추가위험과 전쟁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4)매도인은 선의의 보험사의 선적상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인의 보험료 미 지급을 이유로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4조 1)매도인은 상품을 포장하고 관습이 지정한 선적의무기간 동안 상품을 선적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포장비 및 선적에 필요한 검사, 측량, 계산, 무게측정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2)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선박명과 선적완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5조 1)매도인은 (선적)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선화증권을 통해 물품의 선적을 증명한다. 선화증권이 (선적세를 통하여)라고 명시한 경우 매수인은 증권에 기입한 일자에 선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선화증권이 상품이 지정일자에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박의 선장이 날인하고 서명한 보고서를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항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다.

제146조 1)매도인은 상품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고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매도인은 상품수출과 타 국가의 통관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수인이 상품선적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취득해야 할 증명서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147조 1)매도인은 상품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 선적이 이루어지고 수출세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수입세, 하역항의 상품관세와 각종 세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48조 매도인은 상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관할 때까지 상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후 이 책임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149조 1)상품선적 후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고 통용가능하며 하역지정항에 필요한 선화증권을 발송하고, 지정상품, 가격목록, 보험증서 또는 상품에 대한 증명서와 매수인이 요청한 그밖에 증명서를 선화증권에 동봉하여야 한다. 선화증권을 통하여 선박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한 사본도 동봉하여야 한다.

2)선화증권이 상품의 하자여부에 대한 정확한 추가조건 또는 포장방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완전한 것으로 본다. 용기, 봉투를 개봉하기 전 또는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훼손 또는 꾸러미, 상품무게에 대하여 운송자가 인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바는 이 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보험증서원본을 대신하는 증서는 보증인에 의해 공표되고 증서원본에 명시한 기본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증서의 소유자는 증서가 허용한 권리를 갖는다.

제150조 1)매수인은 매도인이 발송한 증서가 매매계약에 명시한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이 증서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증서수령일자로부터 7일 이내 은행을 통하여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이 증서를 수취한다. 이 거부는 적당한 시기에 매도인에게 합의조건에 부합하는 증서발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행한다. 매수인은 이 기간의 경과 후 필요 시 보상과 함께 매매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매수인이 특정한 이유로 증서를 반환하거나 신중하게 이를 수취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이전의 이유와 주의 외 어떠한 거부도 표명할 수 없다.
3)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서를 반환한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51조 선박이 증서도착이전에 도착한 경우 또는 증서가 불충분한 경우 매도인은 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매수인이 미 도착한 증서의 사본을 취득하거나 불충분한 증서를 완성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필요 시 보상과 함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52조 제111조 법령에 따라 매수인은 합의한 항구의 상품 도착 시 상품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도착 시 하역비용을 부담한다. (하역까지는 CIF매매로 한다)

제153조 매수인이 일정기간 동안 선적일자 또는 하역항 지정권을 갖고 상기 언급한 기간 동안 이에 관하여 지시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선적의무기간종결까지 상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 상품이 이 기한에 도착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154조 상품에서 증서에 명시된 바에 대한 위반사항이 나타나고 이 위반이

관습적인 허용기준을 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도착항에서 통용하는 관습에 따라 전문가들이 지정한 가격을 인하하여야 한다.

03 **세 번째 도착매매** (155-155)

제155조 관련조건을 포함한 계약에서 매도인은 상품선적이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선박의 무사도착여부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매수인에게 합의 또는 계약 시 수령한 견품에 따른 상품수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로 인하여 CIF매매 또는 FOB매매를 이행하며 이는 도착지 수령조건에 따른 매매로 본다.

04 **네 번째 출발공항의 매매**(156-163)

제156조 출발공항의 매매란 출발공항에서 상품인도가 이루어지는 매매이다. 매수인이 지정하거나 매도인이 선정한 항공운송인의 관리 하에 상품을 적재한다.(*)

제157조 매도인은 출발공항에서 항공운송인에게 또는 항공운송 대리인에게 합의장소와 일자에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출발공항에 통용하는 규범과 관습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다. 또한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모든 유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인도완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8조 1)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한 경우 매수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상품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매수인이 적절한 일자의 상품운송에 대한 지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상관례에 통용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2)매도인이 운송계약을 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를 준수하고 동종상품운송에 적합한 항공기를 선정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출발공항에서 도착공항 또는 매수인의 관할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기존노선을 통하여 상품을 운송하여야 한다.

제159조 1)매도인은 상품수출에 필요한 모든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관할하는 상품수령에 필요한 모든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 항공운송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타인이 출발공항의 상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품운송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적당한 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빠른 시일 내에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 매도인이 상품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출발공항에서 도착공항까지의 상품운송업무를 관리하고 항공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상품을 수령할 타인을 지정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적당한 시기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품운송에 필요한 지시를 적당한 시기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상품이 도착한다는 조건하에 상품수령일자 이후 상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62조 매수인은 항공운송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타인의 상품수령 거부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상품수령 준비일자 이후 발생하는 상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63조 선진국제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은 독자적으로 이행하며 이는 운송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과 운송인 또는 증서대출계약의 매수인과 은행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03 제3장 상업저당(164-177)

제164조 1)상업저당은 상업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동산자금을 통하여 계약한다.

2) 상업채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기록한 바를 이외의 모든 증명방식으로 계약자 쌍방 또는 제3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제165조 1)상업저당은 저당물소유를 [5] 저당권설정자(抵當權設定者)로부터 [6]저당권자(抵當權者)에게 이전하거나 이를 계약자 쌍방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저당 만기까지 전2인으로부터 저당물을 수령한 자가 저당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와 별개로 단독으로 저당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2인이 저당물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권리 하에 이행한다.

2)제3자가 저당물이 그의 관리하에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또는 저당물에 대한 증서를 수령하고 제3자 이외의 소유자가 지체없이 소유권을 인도하는 경우 저당권자 및 제3자는 저당물을 소유한다.

3)권리에 대한 소유는 채권의 수령을 통하여 이전한다. 채권이 제3자에게 예치된 경우 예치영수증 수령은 채권수령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는 채권이 정확하게 예치되어 있고, 채권보관자가 저당권자의 채권소유를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채권보관자는 저당의 우선적 이유로 모든 채권보유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저당권자의 채권 수령 시 채권보관자가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다.

제166조 1)저당물이 명목채권(記名債券)인 경우 보증형식의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저당은 서면으로 이행하여 이를 채권자체에 명시하고 채권발행처의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재일자부터 저당권자의

[5]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보통 채무자를 말하나, 제삼자도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6] 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아 두고 있는 사람.

등급을 설정한다.

2)환어음의 저당은 저당 및 보증의 가치의 배서 또는 이 의미를 표시한 다른 항목에 대한 배서를 통해 이행한다.

제167조 1)상업채무자는 채권자의 문서화된 채권을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저당설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이 채무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채무의 저당은 채무에 대한 저당을 공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권리에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저당물채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 외 제3자의 권리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저당의 공지 또는 수취 지정일자 이후 저당에 대한 등급을 설정한다.

제168조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보관, 보존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저당물이 상업문서인 경우 저당권자는 만기 시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저당권설정자는 이 과정에서 저당권자가 지불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69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의 부담으로 저당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당물의 가격과 이익과 수익 그밖에 이에 관한 비용을 수령하여 수령액 중 저당권설정자가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 이후 수익, 저당채무의 원금을 수령한다.

제170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저당권설정자가 요구하는 경우- 저당물과 그 종류, 크기, 무게와 그밖에 저당물의 특성을 명시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1조 1)저당이 대체자산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저당물이 동종의 다른 목적물로 대체된다 할지라도 저당은 지속된다.
2)저당물이 비대체 자산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를 다른 목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저당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합의하고 저당권자가 이를 수락하고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하다.

제172조 1)저당권설정자가 만기일에 부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지불을 최고한지 7일 경과 후 법원에 저당물매매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판매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2)저당권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원금, 이자, 이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을 포함한 부채와 저당물매매로 인한 금액을 완전히 수령한다.

제173조 여러 자산에 대한 저당이 설정되는 경우 저당권자는 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에 적용하는 자산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저당물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매매는 저당권자의 권리가 적용하는 바를 따른다.

제174조 시장에서 저당물의 가격이 부족하여 채무를 보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채무보증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증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지정기한이 경과한 경우 저당권자는 만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172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저당물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5조 저당물이 훼손 또는 파손 또는 가격저락의 위험이 있거나 저당물에 소유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저당권설정자가 대체저당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법원에 즉각 저당물의 매매에 대한 허가와 매매방식지정을 요청하고 저당물을 매매가격으로 이전한다.

제176조 1)저당설정 시 또는 설정 후 비준한 모든 합의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만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2조에 명시한 법령과 절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저당물보유 또는 매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2)그러나 채무를 완료 또는 분할하여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저당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채무의 완료 또는 분할이행의 대가로 양도할 수 있다.

제177조 저당물이 그 명목가치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인 경우, 미지급분을 필요 시 저당권설정자는 이 부분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만기일로부터 최소 2일전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저당권자는 제172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이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04 제4장 공공창고임치(倉庫任置)(178-195)

제178조 1)공공창고임치는 수치인(受置人)이-개인 또는 회사 또는 공법인-임치물을 수령하고 임치인 또는 재산을 대신한 채권에 따라 재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자의 부담으로 상품보관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국내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산업경제부장관의 결정으로 공표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해당 토후국 내 관할당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공창고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수치인은 통용가능한 임치물에 대한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4)공공창고에 투자하는 자는 화재, 훼손, 절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9조 1)수치인은 그의 부담 또는 제3자의 부담으로 그의 창고에 보관되고 이에 대한 증서가 발행된 상품의 동종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2)회사자본의 최소 10%를 보유한 동업자 중 1인이 전항에 금지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회사가 창고의 투자자인 경우 이 법령을 적용한다.

제180조 1)임치인(任置人)은 공공창고에 임치물의 특성,종류,수량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임치인은 그의 부담으로 공공창고에 임치하는 상품을 검사하고 그 견품을 수령할 수 있다.

제181조 수치인은 임치인이 지정한 가격을 넘지 아니한 임치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임치물의 훼손 또는 하자가 불가항력의 힘이나 임치물의 특성이나 포장으로 발생한 경우 수치인에게 이에 관하여 물지 아니한다.

제182조 임치물이 빠른 시일 내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치인은 임치인에게 통지 후 창고의 관할법원에 임치물의 매매에 대한 허가와 매매방식의 지정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83조 1)임치인은 임치물과 가격을 지정하는데 기타서류가 필요한 경우 수치인에게 임치인의 성명, 직업, 출생지와 임치물의 종류, 특성, 수량과 창고명, 위치와 임치물의 보증인 성명을 명시한 보관영수증을 수령한다.

2)모든 보관영수증에는 영수증에 기록된 서류를 포함하는 저당증서를 동봉한다.

3)수치인은 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의 정확한 사본을 보관한다.

제184조 보관영수증, 저당증서가 수령된 임치물이 대체물(代替物)인 경우 이에 관하여 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 동종의 동일한 품질의 다른임치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5조 1)임치인의 이름으로 또는 허가를 통해 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2)임치인은 보유하고 있는 배서가 기재되어있거나 기재되어있지 않은 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를 양도할 수 있다.

3)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 또는 둘 중 1증서에 배서한 자는 그의 출생지, 직업관련 서류와 함께 수치인이 보관하는 사본에 배서의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6조 1)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의 배서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저당증서의 배서가 보관영수증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배서는 허가조건을 수반하여야 한다. 또한 저당물에 대한 채무, 만기일, 채권자 성명, 직업, 출생지에 관한 서류와 배서인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배서인은 저당증서와 창고장부의 배서관련서류의 배서 기재를 요청하고

이를 저당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87조 1)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소지인은 임치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임치물을 분할한 후 각 부분에 대한 보관영수증과 저당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보관영수증을 제외한 저당증서소지인은 임치물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다.

3)저당증서를 제외한 보관영수증소지인은 만기 시 저당증서의 부채를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임치물반환권을 갖는다. 또한 수치인에게 부채, 이자, 그밖에 비용을 만기까지 지불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예치한 경우 만기기한 이전에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법령은 채무가 만기되고 저당증서소지인이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있다. 또한 가격지불이 완료된 임치물의 해당부분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88조 만기일자에 저당증서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보관영수증을 제외한 저당증서소지인은 제172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저당물의 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9조 1)저당권자는 다음의 금액공제 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저당물 가격에 대한 우선권을 이행한다.

ㄱ)저당물에 대한 관세와 세금

ㄴ)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법정비용

ㄷ)저당물의 보존, 보관, 판매에 대한 비용

2)저당물매매기간에 필요 시 저당권자는 저당증서소지인이 보관영수증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추가금액을 지불한다. 또한 불필요 시 매매를 명령한 법원금고에 이 금액을 예치한다.

제190조 1)저당증서소지인은 저당물에 대한 집행과 저당물이 채무이행에 불충분하다는 증명 이후에 채무자 또는 배서인들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다.

2)저당증서소지인은 저당물매매일자로부터 15일 이내 배서인에게 채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 시 소송을 이행할 수 없다.

3)어떠한 경우에도 저당증서소지인이 만기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저당물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 대한 채무요구소송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제191조 저당물에 대한 사건을 집행하는 경우 이 사건집행 시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보관영수증 또는 저당증서소지인은 저당물에 대하여 결정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192조 1)보관영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공공창고 관할지역 내 민사법원에 충분한 보증인, 보증제공과 함께 그의 소유재산이라는 증명한다는 조건으로 영수증의 사본교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2)저당증서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자는 법원에 충분한 보증인, 보증제공을 조건으로 만기 시 저당물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제기자는 수치인이 보관하는 사본에 기록한 배서와 이 배서한 문서의 이행최고를 조건으로 제172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저당물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3조 1)보관영수증 분실 시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창고에 임치물 반환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2)저당증서분실 시 공공창고장부의 배서기재기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제194조 1)임치계약종결 시 임치인이 임치물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치인은 제172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임치물매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치인은 판매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임치인에게 양도하거나 그의 부담으로 법원금고에 예치한다.
2)임치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임치인이 임치물 회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1년이 경과하거나 임치인이 임치계약지속의사를 밝힌 경우 전항에 명시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195조 1)제178조의 2항에 명시한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공창고를 설립 또는 이에 투자하는 자는 어떠한 최고처벌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류나 5000디르함 이상 2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는다.

2)법원은 창고폐쇄에 대한 유죄판결 시 위반자에게 필요한 허가를 판결하고 창고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05 제5장 어음시장(196-196)

제196조 국무위원회의 합의를 얻지 아니하고 국내에 어음시장을 개장할 수 없다. 연방법은 시장업무조직법을 공표한다.

06 제6장 상업위임(委任)(197-253)

01 제1절 법령 일반(197-216)

제197조 상행위에 관련하여 상업위임이라 한다.

제198조 없음.

제199조 [7]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체결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미 체결이 [8]위임인(委任人)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되는 경우에도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 두 상황이 아닌 경우 수임인은 제공한 노무와 비용의 대가가 아닌 경우 관습에 따라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 법원이 지정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그러하다.

[7]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 받은 사람
[8]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사람.

제200조 절대적으로 위임하는 상업위임은 특정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행위에만 적용한다.

제201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상업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허가없이 이 거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202조 1)수임인은 위임인이 명백히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수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위임인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위임인의 훈시사항에 관하여 수임인은 위임인이 지정한 일반목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2)계약에 관하여 위임인의 명백한 지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임인은 계약체결을 연기하고 위임인에게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위임인이 손실을 입은 계약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거나 수임인이 지시사항 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203조 수임인이 가장 유리한 위임조건으로 위임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상황에서 위임인에게 상환되는 잔액을 점유할 수 없다.

제204조 수임인이 위임인의 부담으로 소유하는 상품 또는 물품이 훼손 또는

가격저락의 위험이 존재하고 적당한 일자에 이에 관한 위임인의 지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수임인은 즉각 법원에 법원이 지정한 방식에 따른 상품판매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5조 수임인이 위임한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별비용이 요구되거나 수임인과 위임인 쌍방이 수임인의 비용지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 또는 거래하지 아니하고 위임인이 이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은 업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6조 수임인이 위임한 업무이행 거부 시 수임인은 즉각 위임인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부담으로 소유하는 상품과 그밖에 물품에 관한 지시를 수령할 때까지 이를 보존한다. 적당한 일자에 지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은 법원에 보관자 지정과 상품 및 그밖에 물품위탁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7조 수임인은 상품과 그밖에 위임인의 부담으로 소유하는 물품의 훼손 또는 파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는 훼손 또는 파기가 수임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비롯되거나 또는 상품 및 물품 자체 하자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208조 위임인이 요구하거나 법 또는 관습의 필요에 따라 또는 물품자체의

특성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닐 시 수임인은 위임인의 부담으로 소유하는 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209조 1)다음과 같은 경우 수임인은 스스로 체결을 담당한 계약의 일방이 될 수 있다:

ㄱ)위임인이 허가한 경우

ㄴ)계약에 대한 위임인의 지시가 명백하고 구체적이고 수임인이 이를 면밀히 이행한 경우

ㄷ)계약이 시장 정가의 상품에 관한 계약이며 수임인이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위임인에게 이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2)이러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210조 수임인과 거래하는 제3자는 위임계약서와 수임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한과 그밖에 증명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제3자에게 통지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권한에 대하여 명시한 기록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11조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자신에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위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2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관습에 통용하는 또는 쌍방간의 이전거래에

따른 합의일자에 위임인을 위하여 이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를 보고하여야 한다. 고의로 회계에 거짓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위임인은 이 항목에 관한 계약을 거부하고 손해배상권을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은 상기 명시한 계약에 대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213조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 임금과 비용에 대한 담보로 위임인이 자신에게 발송하거나 임치하거나 양도한 상품과 그밖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14조 상업위임계약인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예고없이 또는 적당하지 않은 시기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을 지정한 경우 중대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215조 위임인의 소재지(所在地)가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임인의 소재지를 위임인의 소재지로 본다. 또한 위임인은 자신을 위해 수임인이 이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를 소송하고 공문서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16조 상업위임업무조직에 관하여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02 제2절 상업위임의 종류(217-253)

01 첫 번째 계약위임(217-228)

제217조 계약위임은 계약에 따라 1인이 지속적으로 특정활동지역에서 임금의 대가로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할당과 계약체결에 대한 협상을 담당한다. 수임인의 임무는 이 계약의 체결과 위임인의 이름으로 그의 부담으로 하는 계약이행을 포함한다.(*)

제218조 계약수임인은 위임업무를 이행하고 독립적으로 상업활동을 관리한다. 또한 수임인 1인이 활동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219조 계약수임인의 공급건물 또는 상품창고 또는 수리 및 보수시설건립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은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제220조 1)계약수임인은 위임인이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임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수임인은 허가 없이 권리를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계약수임인은 자신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이행에 관한 요청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불이행에 관한 항의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또한 수임인은 활동지역에서 자신으로부터 또는 자신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관련 소송에서

위임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본다.

제221조 1)위임인은 수임인에게 합의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이 임금은 계약금의 백분율로 지급하며 이 비율은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제222조 계약수임인은 계약이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완료한 계약 또는 위임인으로 인하여 미 완료한 계약으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223조 위임인은 위임업무이행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24조 1)계약수임인은 위임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위임인에게 활동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또한 수임인은 계약관계종료 후에도 위임업무이행 시 위임인에게 통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5조 위임인이 계약수임인을 새 수임인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 수임인은 이전수임인 교체가 위임인과 새 계약수임인의 결과라고 증명되면 위임인과 연대하여 이전 수임인에게 보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제226조 민사집행법의 명시한 관할규정을 제외하고 계약위임의 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에 대한 심의는 위임계약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관장한다.

제227조 상인이 특정지역의 원산지가공 또는 무역상품을 유통, [9]배급(配給)하여야 하는 배급계약은 제220조, 제225조, 제226조 법령을 적용하는 계약위임법령에 포함한다. 이는 유일한 배급자가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228조 위임종료로부터 3년 경과 후 계약위임의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거부, 합법성 부재 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02 **두 번째 임무위임**(229-244)

제229조 1)임무위임은 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수령한 위임의 대가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이행한다.

2)수임인이 위임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경우 상업위임의 일반법령을 적용한다.

제230조 1)임무수임인이 위임인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위임인은

[9] 상품 따위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옮김. 또는 그런 유통 과정

계약체결통지일자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거부의사를 수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가격을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2)위임인은 수임인이 가격의 차액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는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제231조 1)임무수임인이 위임인의 부담으로 위임인이 요구한 바와 다른 종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위임인은 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

2)임무수임인이 요구한 종류에 부합하지만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위임인은 자신이 요구한 수량이 아닐 시 이를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2조 위임인이 지정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수임인과 계약한 경우 임무수임인은 계약을 완료한 실제조건을 토대로 회계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3조 1)판매를 담당한 임무수임인이 위임인의 허가 없이 구매자에게 상품가격의 지급연기(支給延期)또는 할부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위임인은 즉각 수임인에게 가격지불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임인은 가격의 차액(差額)과 그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수임인은 현장가격을 통한 매매에 대한 위임인의

지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지역의 관습이 허용하는 경우 가격지급연기 또는 할부지급을 위임인의 허가 없이 허용할 수 있다.

제234조 위임인이 할부가격을 통한 매매를 지시하고 임무수임인이 더 낮은 현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위임인은 그가 지정한 할부금연기만료 시 수임인에게 가격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무수임인은 할부판매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35조 1)임무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그의 부담으로 수령한 상품의 지정상표를 변경할 수 없다.

2)임무수임인이 수인의 위임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수의 동종상품을 소유하는 경우 수임인은 각각의 상품에 고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6조 1)임무수임인은 위임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과 계약한 위임인의 이름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 동안 위임변경으로 인하여 위임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2)임무수임인은 위임인이 요구하는 경우 그에게 자신과 계약하는 제3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수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 이름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를 계약이행보증인으로 본다.

3)어떠한 경우에도 임무수임인은 위임인이 요구하는 경우 자신과 계약한 제3자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37조 1)임무수임인은 자신과 계약한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는 수임인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법이 특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임무수임인과 계약한 제3자는 위임인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소송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위임인의 경우도 그러하다.

제238조 1)수임인은-소유권 외에도-위임인이 발송하거나 자신에게 임치하거나 양도한 상품과 그밖에 물품에 대한 특권이 있다.

2)이 특권은 위임비용, 수임인이 위임인 대신 지불하거나 그에게 대부한 비용과 그 이자, 위임인이 위임을 이유로 수임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는 수임인이 상품 및 물품 수령 전 지불하였거나 또는 이를 소유하는 동안 지불한 경우 모두에 적용한다.

3)이 특권은 채무가 수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 및 물품에 관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그밖에 수임인에게 위임, 양도, 발송하기 전의 상품 및 물품에 관한 업무로 발생한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다.

제239조 1)수임인은 위임인의 부담으로 상품 및 물품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항에 언급한 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상품 및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ㄱ)수임인이 실제로 상품 및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ㄴ)수임인의 관할 하에 상품 및 물품이 공공창고 또는 세관에 보관된 경우

ㄷ)수임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밖에 운송증명서에 따라 상품 및 물품 도착이전에 법적으로 이를 소유하는 경우

ㄹ)수임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밖에 운송증명서에 따라 상품 및 물품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특권에 속하는 상품 및 물품이 판매되어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임인의 특권은 금액으로 이전한다.

제240조 수임인의 특권은 법정비용과 정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모든 특권에 적용한다.

제241조 1)수임인이 소유한 상품과 물품에 대한 집행은 상업저당물 집행절차를 따른다.

2)수임인은 자신이 소유한 상품 및 물품판매를 담당하는 경우 전항에 언급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위임인의 명확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242조 1)판매를 담당한 임무수임인이 상품가격지불이전에 파산하는 경우

위임인은 구매자에게 즉각 가격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2)구매를 담당한 임무수임인이 상품인도이전에 파산하는 경우 위임인은 판매자에게 즉각 상품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3조 1)임무수임인은 그가 명백히 보장하거나 또는 법이 이에 관하여 명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활동지역의 관습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과 계약한 제3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2)계약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임무수임인은 이에 관한 합의 또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정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44조 임무수임인은 위임인이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업무를 다른 임무수임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새 수임인은 소유권 또는 특권이 아닌 이전 수임인에 대한 채무만 취득할 수 있다.

03 **세 번째 상업대리**(245-253)

제245조 상업대리인(商業代理人)이 특정지역에서 계속해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또한 그의 부담으로 하는 계약체결을 약정하는 계약을 상업대리라 한다.

제246조 상업대리인은 비공개적인 경우 또는 활동지역의 관습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247조 1)상인은 자신이 허용한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이행하는 행위와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
2)대리인이 수인의 상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 수인의 상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대리인이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 회사의 형태에 따라 동업자들이 책임을 진다.

제248조 1)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권한은 대리인이 위임하여 이행하는 상업형태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상인이 제3자에게 위임권한의 범위를 통지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권한지정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49조 상업대리인은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인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성명과 상인의 성명, 대리인이라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항목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제3자는 상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상업에 관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0조 상업대리인은 자신이 행한 상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상인을 대리할 수 있다.

제251조 상업대리인은 상인과 연대하여 불법경쟁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52조 상업대리인은 자신을 고용한 상인의 명백한 합의 없이 상인 또는 제3자의 부담으로 이행하기로 한 거래와 동종상거래를 이행할 수 없다.

제253조 상업대리인이 합의지역에서 상인의 유일한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합의하는 경우 상인 스스로 또는 상업대리인 외의 타인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상업대리인은 이 지역에서 상인의 부담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07 제7장 “중개”업(254-271)

제254조 중개인이 중개료의 대가로 계약협상을 통하여 일방에게 특정계약체결을 위한 상대방 주선을 약정하는 계약을 중개라 한다.

제255조 1)법 또는 합의에서 중개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습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정한다. 관습이 없는 경우 판사가 계약가치와 중개인의

노무와 위임업무이행에 할애한 시간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2)판사는 중개료가 계약의 본질과 중개인의 노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삭감할 수 있다. 중개료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중개인이 알선한 계약체결 이후 고객이 자발적으로 이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료를 삭감할 수 없다.

제256조 1)중개인은 자신의 중개로 쌍방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료를 수수할 수 없다. 쌍방이 계약에 대한 모든 중요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관련 합의 또는 관습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인은 이행되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중개료를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미실현조건으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중개인은 조건이 실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료를 수수할 수 없다.

4)고객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중개인은 노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257조 중개인의 중개로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중개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중개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미 수수한 중개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258조 중개인은 법적으로 금지된 계약체결을 중개한 경우 중개료를 수수할 수 없다.

제259조 1)중개인은 자신의 중개로 체결한 계약의 계약자 쌍방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중개료를 수수할 수 없다.
2)계약자 쌍방이 권한위임을 공표한 경우 일방이 중개인에게 중개료 전부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쌍방 모두는 중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중개료를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60조 중개인은 계약자 일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도 쌍방에게 계약을 공정하게 제시하고 자신이 파악한 모든 정황을 쌍방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으로 인한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계약자 쌍방에게 책임을 진다.

제261조 중개인은 관련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업무를 이행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비용은 만기가 된다.

제262조 중개인은 자신이 체결을 중개하지 않은 다른 계약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자 일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다른 계약자 일방으로부터 선의에 반하는 이익에 대한약정을 수락한 경우 중개료를 청구하거나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제263조 중개인은 계약자 일방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 중개하여 체결한 계약의 일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264조 1)중개인은 자신을 통하여 체결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재하고 거래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 쌍방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이에 관한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 대하여는 상업장부법령을 적용한다.
2)견품매매에 있어서 중개인은 구매자가 지체없이 상품을 수령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계약자 쌍방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견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5조 중개인은 자신이 중개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수령한 문서 또는 서류 또는 목적물을 불가항력으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266조 중개인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거나 자격이 없다고 알려진 자들에게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7조 1) 중개인은 자신이 사기 또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증명되거나 관련합의 또는 법에 의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중개하여 체결한 계약자 쌍방의 편의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계약이행 또는 계약에 관한 상품의 가치와 종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중개인은 중개료를 수령하고 계약으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68조 1)중개인이 관련허가 없이 자신의 담당업무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중개인은 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가 중개인으로부터 비롯된 경우 중개인과 대리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중개인이 대리인 임명에 대한 허가를 얻은 경우 중개인은 대리인 선정의 과실 또는 대리인에 대한 잘못된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3)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자는 즉각 대리인에게 임무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9조 수인의 중개인이 1건의 계약을 위임받은 경우 이들은 개별업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0조

제271조 어음과 상품시장의 중개인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제도를 적용한다.

08 제8장 운송(272-370)

01 제1절 일반법령(272-281)

제272조 운송인이 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대가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객 또는 운송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계약을 운송계약이라 한다.(*)

제273조 해상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운송인이 담당하는 모든 종류의 운송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명시한 법령을 적용한다. 또한 일부 운송에 대한 법령과 국가에서 통용하는 국제운송협약도 준수한다.

제274조 이 장에서 명시한 법령은 계약의 주요 목적이 아닌 다른 성질의 업무와 관련한 것일지라도 운송에 적용한다.

제275조 1)운송계약과 운송위임계약은 계약자 쌍방이 수령일자까지의 계약연기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수락동의만으로 체결된다. 또한 모든 증명방법을 통하여 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
2)운송인이 운송을 담당하여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은 송하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3)여객이 운송계약체결을 의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의 이동수단 탑승은 운송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276조 1)운송인이 자신이 체결한 다수의 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자 쌍방이 특정양식을 따를 것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은 일반조건을 포함한 양식에 따라 체결한다.
2)계약자 쌍방이 특정 양식에 따를 것에 합의한 경우 상기 명시한 조건을 분할할 수 없다.

제277조 1)운송인이 특정 운송을 독점하거나 특정 운송노선의 투자를 독점하는 경우 운송인은 자신에 대한 모든 주문을 수령하여야 한다. 단, 주문이 운송결정조건에 위배되거나 또는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운송인이 주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2)다수의 운송주문이 운송인에게 허용된 운송수단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조건에 따라 일부 주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주문은 후주문에 대하여 주문신청일자가 우선하므로 운송인은 주문수령 시 신청일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8조 운송인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 하수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송인이 운송계약의무이행에 고용한 모든 자는 하수인으로 본다.

제279조 1)운송수단 폭발, 화재, 레일탈선, 충돌과 그밖에 운송인이 운송에 사용하는 장비나 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운송수단이 업무이행에 적합하도록 예방책을 세우거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였다고 증명 하더라도 운송계약 이행 중 불가항력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2)또한 운송하수인의 업무 중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육체적, 정신적 부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위하여 예방책을 강구하였다고 증명하더라도 불가항력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280조 환자, 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 또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거나 지정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운송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81조 1)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의 모든 행위 또는 행위거부는 운송계약이행에 대한 사기를 의도한 것으로 본다.
2)손해 발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의 모든 행위와 행위거부는 중대한 오류를 의도한 것으로 본다.

02 **제2절 물건운송계약** (282-322)

제282조 1)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송하인의 성명, 주소, 운송지, 운송물의 종류, 가격, 중량, 용적, 수량과 포장방법, 운송물에 포함된 꾸러미의 수량에 대한 정보와 기타 운송물의 특성, 인도유예기간, 운송로를 지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송하인은 자신이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3조 1)운송증서를 기재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ㄱ)운송증서 발급일자와 발급장소

ㄴ)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고용한 경우 운송 대리인의 성명

ㄷ)운송출발지와 도착지

ㄹ)운송물의 특성과 가격에 관한 정보

ㅁ)운송지정일자

ㅂ)운임과 기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ㅅ)선적과 하역, 운송에 사용하여야 하는 운송수단의 종류, 운송로, 책임지정에 관한 조건과 그밖에 운송합의에 포함할 특정조건

2)운송증서는 특정인의 명의로 그의 요청 또는 증명서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3)운송증서는 명목채권규정에 따라 통용한다. 또는 요청 시 배서를 통하여 통용할 수 있으며, 증명서소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이는 운송물양도

또는 이에 대한 소유권양도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284조 1)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증서사본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2)운송증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 수령에 대하여 서명한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영수증은 년월일을 기재하고 운송물 특성과 운임을 지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5조 운송증서와 운송물수령에 대하여 운송인이 서명한 영수증은 상기 두 문서에 명시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본다. 또한 이 정보의 위반사항을 제기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86조 1)수하인은 직 간접적으로 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계약으로부터 나온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취득하지 아니한다.
2)수하인의 운송증서 및 운송물 수령 또는 운송물 인도요청수령 또는 관련 지시사항 통지는 수하인이 운송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287조 1)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과 운송이행에 필요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상위하는 증명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운송인은 증명서의 분실 또는 사용에 대한 주의해태 또는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2)운송인이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송하인은 운송물인도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 소재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한다.

제288조 1)운송물의 특성상 포장하여 운송하여야 하는 경우 송하인은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고 운송물과 이동하는 사람 또는 물건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조건에 따라 운송물 포장에 있어 특정방식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송하인은 이를 준수한다.

2)송하인은 포장 중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운송인이 하자에 대하여 인지하고 운송이행을 수락하는 경우 이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실이 공개되거나 일반 운송인들에게 알려진 경우 운송인이 하자에 대하여 인지한 것으로 본다.

3)운송인은 다른 운송물 포장 중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을 통하여 운송 중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상위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한다.

제289조 1)운송인은 운송물의 상태와 송하인이 운송물에 관하여 통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검사할 수 있다.

2)검사에 따라 포장을 풀어야 하는 경우 송하인은 검사참석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지정일자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불참석 하에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검사비용을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검사를 통하여 운송물의 상태가 훼손 없이 운송이 불가능 하다고 판명된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부하거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상태를 인지하고 운송에 동의한 후 운송을 이행할 수 있다. 운송물의 상태와 송하인의 동의는 운송증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90조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은 운송증서에 명시한 정보와 부합하는 양호한 상태의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운송인이 이와 상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91조 1)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하고 이를 일반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2)송하인이 특정운송수단에 운송물 선적을 요청한 경우 운송인은 이 운송수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2조 1)운송인은 합의한 운송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정운송로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단거리 운송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2)운송인은 필요한 경우 합의한 운송로를 변경하거나 장거리 운송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연착, 운임 변경으로 인한

기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3조 1)운송인은 운송계약이행 중 운송물의 안전을 보증한다.
2)재포장, 운송물 포장외관 수리, 이를 첨가 또는 삭제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운송 중 운송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운송인은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하고 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인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물에게 먹이, 물, 도움, 그밖에 것을 제공하거나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비일상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294조 1)합의 또는 법 또는 규정 또는 지시에 따라 수하인 또는 타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도착 시 운송물을 하역하여야 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하역비용을 부담한다.

제295조 1)수하인의 소재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운송물 도착일자와 수령가능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2)수하인은 운송인이 지정한 일자에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일자의 경과 후 운송인은 추가운임을 대가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운반해 줄 수 있다.
3)수하인은 수령 시 운송물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운송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운송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6조 1)송하인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보관하는 동안 운송인에게 운송이행거부 또는 중단 또는 운송물 반환 또는 기존의 수하인이 아닌 타인에게 운송 또는 다른 장소로의 운송과 그밖에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송하인이 운임과 기타 비용, 새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을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또한 송하인이 운송증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 이를 운송인에게 반환하여 송하인이 서명하여야 하는 새 지시를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 지시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2)수하인이 운송증서를 수령하거나 운송계약을 직 간접적으로 수락한 후 운송물 관련지시발표에 대한 권리는 수하인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증서를 반환하여 자신이 서명하여야 하는 새 지시를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3)운송물이 도착하여 수하인이 수령을 요청하거나 직접 수령을 통지한 이후 운송물에 관한 새 지시를 발표할 수 없다.

제297조 운송인은 전 조항에 따라 지시발표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운송조건이 이를 금지하거나 또는 운송인이 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지시이행이 운송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운송물의 가격이 지시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새 지시를 발표한 자에게 지시이행거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거부를 이유로 운송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8조 1)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운송이행도중 중단하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러 오지 아니하거나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임 또는 그밖에 비용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96조 법령을 제외하고 운송인은 송하인이 자신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증서 사본을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송하인이 발표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2)일정기간동안 송하인의 지시가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법원에 운송물의 상태에 대한 증명과 송하인 부담의 보관자에게 송하인의 책임하에 운송물 위탁에 대한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3)운송물이 훼손 또는 멸실 또는 가격저락의 위험이 있거나 운송물을 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법원의 지정방식에 따른 운송물 판매와 이해관계인의 부담으로 법원금고에 판매대금위탁을 명령할 수 있다.

제299조 운임과 그밖에 운송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 수하인이 이를 부담한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송하인이 지불한다. 이러한 경우

송하인과 수하인 모두 운송인으로부터 이 비용지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0조 운송인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훼손된 운송물의 운임을 수령할 수 없다.

제301조 1)불가항력의 힘으로 운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수령할 수 없다. 또한 불가항력의 힘으로 운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이미 운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운임을 수령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선적과 하역비용과 그밖에 필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2조 운임지급자는 운송조건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된 운임에 대한 초과지급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3조 1)운송인은 운임과 운송으로 지급받아야 할 기타 비용 전부를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보관할 수 있다.
2)운송인은 자신이 운송한 운송물처분금액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또한 이는 운임과 그밖에 운송으로 운송인이 수령하여야 할 비용의 지불로 본다. 이에 관하여 상업저당물처분절차를 따른다.

제304조 1)운송물수령이후 운송물의 전체 또는 부분적 멸실과 훼손과

운송물인도지연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운송물인도기한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체조건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운송물인도지정기한 또는 일반운송인이 운송하는데 소모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수하인에게 수령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물은 모두 훼손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 운송인은 수하인 또는 합의한 세관 또는 법원이 운송물 위탁에 관하여 지정한 보관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6조 1)운송인에게 운송 중 일반적인 운송물 용적 또는 중량의 부족에 대하여는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운송증서가 여러 부분 또는 봉투로 분할되는 다수의 운송물을 포함하는 경우 운송물 용적 또는 중량의 부족은 각 부분 또는 봉투의 중량을 토대로 지정한다. 단, 운송증서에 독자적으로 중량을 지정하거나 지정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다.

제307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관리 하에 운송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8조 운송인은 불가항력의 힘 또는 운송물의 하자 또는 송하인 및 수하인의 과실 또는 잘못된 관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9조 1)운송인의 운송물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면제에 관한 모든 조건은 무효로 한다. 또한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불에 관한 모든 조건은 책임면제결정으로 본다.
2)운송인은 연착에 대한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310조 1)운송인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지정을 규정하고 이 유효한 조건으로 합의한 보상이 명목상의 보상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분쟁 시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2)운송인은 손해가 수하인으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합의한 배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손해금액이 합의한 배상액보다 적은 경우 판사는 배상액이 손해금액과 대등하도록 배상액을 삭감할 수 있다. 합의한 배상액보다 큰 손해를 입은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상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1조 책임지정조건 또는 연착에 대한 책임면제조건은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을 무효로 본다. 또한 운송계약이 인쇄물에 기록되는 경우 이 조건은 명백하고 주의를 기울여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 조건을 무효로 본다.

제312조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지정 또는 연착에 대한 책임면제조건을 준수할 수 없다.

제313조 1)운송증서에 그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멸실 또는 훼손된 운송물의 경우 법 또는 합의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배상액은 도착지와 도착시간의 운송물 실제가격에 따라 지정한다. 운송물을 전부 멸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 시 제298조 법령에 따라 부족액을 고려한다.
2)운송물 가격이 운송증서에 기재된 경우 운송인은 가격을 조정하고 모든 증명방법을 통하여 운송물의 실제가격을 증명할 수 있다.
3)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하인이 인도 시 명백한 서면문건에 작성하지 아니하면 운송을 약정한 현금, 어음, 귀금속, 기타 귀중품의 분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4조 1)운송물의 전부 멸실에 대한 배상과 연착에 대한 배상을 병합할 수 없다.
2)멸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부분 멸실의 경우 연착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3)어떠한 경우에도 운송물의 전부 멸실 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증대할 수 없다.

제315조 운송물이 일부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연착하여 그 목적에 이용될 수 없고 훼손, 멸실,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증명하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운송물의 전부멸실을 토대로 배상액을 수령하는 대가로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16조 1)운송인은 운송물 멸실로 인하여 배상액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운송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배상금수령인에게 운송물의 상태와 함께 이를 통지하고 그의 선택에 따라 선정한 운송물 취득장소 또는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서 운송물 검사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배상금수령인이 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동안 지시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시를 발송하고 운송인이 지정한 일자의 검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검사에 참석하여 운송인에게 운송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3)배상금수령인은 운송물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비용과 운송물 연착으로 발생한 손해의 대가로 수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7조 1)운송물수령과 수신인의 운임지불은 운송물의 하자가 드러난 경우 운송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하자가 없다고 드러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으로부터 27시간 이내 이를 통지하고 30일 이내 법원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언급한 하자에 대한 소송은 이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두 기간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행한다.

2)운송물상태는 관할당국 또는 법원이 긴급히 지정한 전문가를 통하여 증명한다.

3)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증명하거나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이 의도적으로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이 조항의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8조 1)수인의 운송인이 1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번째 운송인은 송하인과 수하인에 우선하여 전체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이에 위반하는 모든 조건은 무효로 본다.

2)첫 번째 운송인 이외의 모든 운송인에게 첫 번째 운송인 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 이전에 각 운송 담당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운송인은 각각의 운임에 비율로 배상액을 분담하여야 한다. 운송인 중 1인이 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타 운송인들은 같은 비율로 그의 배상액을 분담한다.

3)자신이 담당한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는 운송인은 연대책임을 면한다.

제319조 모든 계약운송인은 이전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수령 시 검사와 상태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한 경우 다르게 증명할 때까지 운송증명서에 명시한 정보와 일치하는 양호한 상태의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320조 최후의 운송인은 이전운송인들에 우선하여 수하인에게 운송운임지불요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운송인들을 대신하여 운송물보관권과 우선권을 포함하는 운임지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1조 거부와 적법성결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불허한다: 1)수하인 또는 세관 또는 법원이 운송물위탁을 위하여 지정한 보관인에게 운송물 수령일자로부터 국내운송의 경우 6월, 해외운송의 경우 1년경과 시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연착 또는 멸실 또는 훼손으로 운송인에게 제기된 소송.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이 기간은 제304조2항에 명시한 일자경과로부터 시작한다.

2)배상지급일 또는 공식적인 배상청구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제318조2항에 따른 수인의 운송인들에 대한 운송인1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322조 운송인 또는 운송하수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전항에 명시한 불허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

03 **제3절 여객운송계약**(323-340)

제323조 1)여객은 합의기한 또는 운송규정에 언급한 기한에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습이 지정한 기한에 운송인으로부터 발송한 운송관련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운송인은 여객이 여행 중 소지하는 물건을 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은 운송지시의 지정수준 또는 공인된 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운임에 한하여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324조 1)불가항력으로 운송을 이행할 수 없거나 운송이행 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운임을 수령할 수 없다.

2)운송이행 후 불가항력 또는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운임만을 수령할 수 있다.

제325조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그밖에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은 폐지되며 운임을 수령할 수 없다.

제326조 1)여객이 여행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 운송이행지정일 이전에 운송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명시한 일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2)전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수령할 수 없으나 여객의 운송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7조 여객이 여행이 시작된 후 이를 중단하는 경우 불가피한 장애로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운임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운임만을 수령할 수 있다.

제328조 전 두 조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여객이 운송지정기한에 오지 아니하는 경우 운임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기한 이전 또는 이후에 운임을 지불한 여객은 추후 운송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329조 1)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 또는 운송수단으로 인하여 운송이

시작 또는 완료 이전에 취소되는 경우 필요 시 여객의 배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여객에게 운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 또는 운송수단으로 인하여 운송이 이행 후 중단되는 경우 여객은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합의장소까지의 여객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은 운송재개까지 대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여객에게 추가운임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제330조 운송티켓이 여객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여객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운송시작 전 티켓을 양도할 수 있다.

제331조 1)운송인은 여객에게 합의한 수준의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객은 운송티켓에 지정된 수준 이하의 여행을 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잔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여객이 특혜의 대가로 추가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운송인이 이에 상응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에게 추가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2조 1)운송인은 운임과 운송계약이행 중 여객에게 제공한 음식과 기타 물품에 대한 담보로 여객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2)운송인은 운임과 그밖에 운송비용지불을 위하여 여객의 물품금액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상업저당물처분절차를 따른다.

제333조 1)운송인은 여객과 여객의 물품을 지정기한에 도착지로 운송하여야 한다. 기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체상황에 따라 일반운송인의 운송기한에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2)운송인은 운송시작 전 또는 운송 중 여객의 참석 하에 물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334조 1)운송인은 운송계약이행 중 여객의 안전을 보증한다. 운송인의 보증면제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2)운송계약이행은 출발지에서 승객이 이동수단에 탑승하여 도착지에서 내릴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운송수단의 정차를 위한 플랫폼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은 출발지에서 승객이 플랫폼에 입장하여 도착지에서 플랫폼을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3)운송 중 운송수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 보증은 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의 비보호 하에 운송수단에서 다른 수단으로의 여객운송기간을 포함한다.

제335조 1)운송인은 연착, 운송계약이행 중 여객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운송인이 연착 또는 손해가 불가항력 또는 여객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에 명시한 책임을

가중하지 아니한다.

제336조 1)여객의 육체적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면제를 규정한 모든 조건은 무효로 본다.

2)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여객의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지불을 의무로 하는 모든 조건은 책임면제로 본다.

제337조 1)운송인은 여객의 연착, 운송 중 발생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전부 또는 일부 책임면제를 조건에 불일 수 있다.

2)책임면제조건은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운송계약을 인쇄물에 기록하는 경우 이 조건은 주의를 기울여 명백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 조건을 무효로 본다.

3)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발생을 증명하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면제조건과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조건을 준수할 수 없다.

제338조 1)여객은 운송허가를 받은 물건과 동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인은 여객이 물건 및 동물의 분실 또는 손해가 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의 과실에서 발생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여객은 자신이 휴대한 물건 또는 동물로 인하여 운송인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운송인이 수령한 물건의 운송에 대하여는 물건운송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339조 1)운송 중 여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운송인은 여객의 물건을 보존하여 관계인에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1인의 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인은 물건보존을 위한 운송인의 조치를 조사하고 운송인에게 여객물품의 소유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0조 여객이 사고즉시 사망 또는 사고기간 경과 후 사망 시 여객의 상속인과 피부양자들은 운송계약에 대한 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4 **제4절 운송수수료대리**(341-352)

제341조 1)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의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피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대가로 운송관련업무를 이행하고 동일 운송인 사무소의 송하인에 있어 운송수수료 대리인의 임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운송수수료대리라 한다.

2)대리인이 특정수단을 통하여 운송수수료 대리를 담당하는 경우 특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계약법령을 적용한다.

제342조 이 절에 명시한 법령을 제외하고 운송수수료대리에 대하여는 수수료대리법령을 적용한다.

제343조 피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운송계약체결 이전에 운송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피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대리인에게 그가 부담한 비용을 상환하고 이를 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344조 1)운송수수료대리인은 특히 운송일자, 운송인선정, 운송수단, 운송로에 관한 피대리인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2)대리계약에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관습이 다르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수수료대리인은 운송인과 합의한 금액이상의 운임과 피대리인의 이득을 위하여 대리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특혜를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5조 운송수수료대리인은 여객과 운송물의 안전을 보증하며, 이에 상위한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346조 1)수령시기 이후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운송수수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또한 대리인은 불가항력 또는 운송물 자체 하자 또는 피대리인 및 수하인의 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여객운송에 있어서 수수료대리인은 연착과 운송계약 중 여객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대리인은 불가항력 또는 여객의 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대리인은 그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7조 1)여객의 육체적 손해에 대하여 운송수수료 대리인의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면제를 규정한 모든 조건은 무효로 본다.

2)수수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보증금 지불을 여객에게 규정한 모든 조건은 책임면제로 본다.

제348조 1)운송수수료대리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인도지연과 여객의 연착과 운송 중 여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 책임면제를 조건으로 불일 수 있다.

2)책임면제조건은 기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또한 수수료대리계약을 인쇄물에 기재하는 경우 이 조건은 명백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조건을 무효로 볼 수 있다.

3)운송수수료대리인은 자신 또는 자신의 하수인 또는 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전체 또는 부분 책임면제조건을 준수할 수 없다.

제349조 1)피대리인과 여객은 운송계약으로 인한 권리요청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운송인은 피대리인과 여객에게 이 권리요청에 대한 책임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2)여객운송계약에 있어서 여객과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수하인은 피대리인과 운송인과 수수료대리인에게 운송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350조 운송수수료대리인이 운임을 운송인에게 완전히 지불하는 경우 권리에 있어 그를 대신한다.

제351조 기존의 운송수수료대리인은 송하인과 합의하여 중개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이 중개한 운송수수료대리인을 보증한다.

제352조 운송수수료대리계약으로 인한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2조, 제321조에 명시한 법령을 적용한다.

05 **제5절 항공운송법령**(353-370)

제353조 1)이 법령의 항공운송은 운임의 대가로 한 사람, 물건, 상품에 대한항공기 운송이다.

2)전항에 명시한 물건은 항공기에서 여객이 휴대할 수 있거나 운송인이 수령하여 여행 중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다.(*)

제354조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한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에 대하여는 이 장의 법령을 적용하고 다음의 조항들에 명시하는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제355조 항공운송인은 운송 중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리는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육체적 피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56조 1)항공운송 중 손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항공운송은 비행 중 또는 비행기가 공항이나 착륙한 기타 장소에 있는 동안 운송인이 물건보관기간을 포함한다.

3)항공운송은 물건 또는 상품에 대한 공항 외의 육상 또는 해상 또는 하천운송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물건 또는 상품을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선적 또는 인도 또는 운송이 필요한 경우 다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항공운송 중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357조 항공운송인은 여객 또는 운송허가물건의 연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58조 항공운송인은 여행 중 여객이 소지하는 간소한 개인적인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여객이 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9조 1)여객운송의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에게 판결한 보상액은 법으로 지정한 보상금의 수준을 넘지 아니한다. 또한 보상액의 수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2)물건과 상품운송의 경우 보상액은 상향조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킬로당 150디르함을 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물건 또는 상품인도 시 송하인이 그 가액을 고려하여 도착지의 안전한 인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인이 요청할 수 있는 추가운임을 지불한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이 명시한 가액과 같은 수준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이 물건 또는 상품의 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높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3)특정 꾸러미에 대한 영수증이 분실 또는 훼손 또는 연착되고 운송신청서의 비용을 지불한 기타 꾸러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 꾸러미는 책임지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4)여행 중 여객이 보관한 개인적인 간소한 물건의 경우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모든 여객에게 판결하는 배상액은 3000디르함을 넘지 아니한다.

5)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를 해태한 항공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운송인이 운송이행에 고용하는 자)의 행위 또는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항공운송인은 이 조에 명시한 책임지정을 준수할 수 없다. 또한 운송수행 종사자의 행위 또는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인의 업무 집행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하여야 한다.

제360조 항공운송인은 책임소송의 상대자에 상관없이 전 조에 명시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제361조 1)운송수행 종사자 중 1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하수인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서비스 이행 중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면 제359조에 명시한 책임지정을 준수할 수 있다.

2)운송수행 종사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를 해태한 그의 행위 또는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정을 준수할 수 없다.

제362조 1)항공운송증서는 운송이 제359조에 명시하고 지정한 책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는 이 법령을 준수할 수 없다.

2)항공운송인에 대한 책임면제 또는 제359조에 명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책임지정을 규정한 모든 조건은 무효로 본다. 단, 운송물 자체의 특성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다.

제363조 도착지에서 수하인의 지체 없는 물건 및 상품수령은 운송증서조건에 부합하는 양호한 상태의 물건수령으로 본다. 또한 수하인은 이와 상위함을 증명할 수 있다.

제364조 1)훼손된 물건 또는 상품이 도착한 경우 수하인은 물건에 대하여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대하여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훼손발견 즉시 운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건 또는 상품이 연착한 경우 물건 또는 상품이 수하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지정한 일자로부터 최대 21일 이내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물건 또는 상품수령 시 운송증서에 기재된 항의형식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3)이 조에 명시한 일자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에 대한 책임소송은 이행하지 아니한다. 단, 검사가 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가 고의 또는 사기로 이 일자를 간과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의 손해를 숨겼다고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365조 1)무료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은 자신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로부터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제359조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이행한다.
2)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운송인이 직업으로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운송의 경우 무료운송으로 본다. 또한 운송인이 직업적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무료운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6조 항공기조종사는 모든 탑승자에 대한 의무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탑승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항공기시스템을 저해하는 자 또는 물건에 대하여 추방을 결정할 수 있다.

제367조 항공운송인은 손해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책임을 면한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일조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제368조 검사는 이하 법원 중 1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운송인 소재지 관할 법원 2)운송인의 주요 활동지역 관할법원 3)운송인이 계약체결을 담당한 회사 또는 기관 관할법원 4)도착지 관할법원

상기 명시한 법원관련규정의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건은 손해발생 이전에 규정된 경우 무효로 본다.

제369조 수인의 운송인이 담당한 연속운송의 경우 모든 운송인은 이행단계에 있어 운송계약의 일방으로 본다. 연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개인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에서 합의한 모든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70조 항공운송인 또는 운송수행 종사자 중 1인에 대한 책임소송은 항공기 도착일 또는 도착하여야 하는 일자 또는 운송중단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이행할 수 없다.

03 제3편 은행업무(371-477)

01 제1장 은행예금과 계정(371-389)

01 제1절 은행예금(371-379)

제371조 1)계약에 따라 1인이 모든 지불수단을 통하여 은행에 일정금액을 인도하고 은행은 요청 또는 합의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계약을 은행현금예금이라 한다.

2)은행은 예치한 현금자산을 보관하고 특정활동에 필요 시 이를 처분할 수있으며 예금자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예치금 동종화폐로 반환한다.(*)

제372조 1)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만으로 현금예금을 반환한다. 또한 예금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잔액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

2)이 처분권은 예고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종결된 이후 이행할 수 있다.

제373조 투자예금을 제외하고 현금예금은 부채로 본다. 또한 현금예금과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채를 조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이와 상위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374조 은행이 저금통장을 발행하는 경우 통장개설자의 이름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통장에는 예금내역과 수취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장에 기재하는 사항과 이에 서명한 은행직원은 은행과 통장개설자간 언급한 항목에 대한 증거로 본다. 이에 상위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375조 특정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정을 발급한 은행지점은 예금과 인출업무를 이행한다.

제376조 1인의 예금자가 1곳의 은행 또는 은행지점에 수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정하지 합의하지 아니하면 각각의 계정은 개별계정으로 본다.

제377조 이 법의 제391조에서 지정한 바를 준수하여 예금자는 예금계약으로 자신의 예금액 이상의 금액을 인출 할 수 없다. 은행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예금자의 잔액은 채무액으로 보며 은행은 예금자의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78조 은행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에게 고객의 계정명세서를 매달 발송하여야 한다.

제379조 은행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 또는 그 이상의 수인 간의 공동예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준수한다: 1)모든 계정소유자로부터 또는 관할기관이 승인하고 공동계정소유자로부터 위임한 권한을 취득한 자로부터 공동계정을 발급한다.

2)공동계정소유자 중 1인의 잔액을 차압하는 경우 은행의 차압통지일에 차압된 자의 계정잔액에 한하여 차압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공동계정의 차압분에 대한 인출을 중단한다. 또한 계정공동소유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게 차압이행일로부터 5일 이내 차압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3)은행은 특정계정의 소유자 중 1인에 대한 수개의 계정 청산 시 나머지 계정공동소유자의 서면합의 없이 이 계정을 청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공동계정소유자중 1인이 사망 또는 법적능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계정소유자는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은 통지일로부터 후임소유자를 지정할 때까지 공동계정의 인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02 제2절 은행송금(380-389)

제380조 1)은행송금이란 은행이 일정금액을 송금인의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상대방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이는 송금고객의 서면요청에 따라 이행한다.

2)이 업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ㄱ)특정인의 계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으로 일정액의 송금. 쌍방은 동 은행 또는 각자 타 은행의 계좌를 가질 수 있다. ㄴ)일정금액을 특정계정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 이 두 계좌는 동 은행 또는 타 은행에서 송금인의 이름으로 발행한 계좌이다.

3)은행과 송금고객간의 합의로 송금지시발행조건을 수립한다. 그러나 소지인에 대하여는 송금지시를 할 수 없다.

제381조 동 은행의 두 지점 간 또는 타 은행 간 은행송금의 경우 이 송금에 관하여 제3자가 발송한 모든 항의에 대하여 송금수취인계좌의 해당지점 또는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2조 일정기간동안 송금인의 계좌에 실제로 기재한 금액 또는 은행과 송금인의 계좌의 기재에 합의한 금액에 대한 송금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383조 송금인이 은행에 통지하는 대신 송금수취인이 송금인 계좌의 해당은행에 송금지시를 발송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84조 1)송금수취인은 은행송금액이 송금인계정의 차변에 기재된 이후 이를 수취할 수 있다. 송금인은 송금지시의 경우 송금액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2)송금수취인이 직접 은행에 송금지시를 발송하는데 합의한 경우 송금인은 제389조에서 지정한 바를 준수하여 송금지시를 요청할 수 없다.

제385조 송금인이 지불을 위하여 발송한 부채는 보증금과 그밖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취인 계좌의 대변에 이 가액을 실제로 기입한다.

제386조 송금인이 직접 발송하거나 송금수취인이 발송한 서신으로 인하여 특정송금지시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는 그밖에 동종의 지시와 함께 이행 마지막 일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일자에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7조 1)송금인의 잔액이 송금지시에 명시한 금액보다 적고 송금인이 직접 이 지시를 발송한 경우 은행은 송금이행을 거부하고 이를 지체 없이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수취인이 송금지시를 발송한 경우 은행은 수취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의 계좌에 일부 보상액을 기재한다. 또한 은행은 송금지시에 일부 보상액 또는 수취인의 송금거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3)수인의 수취인이 연대하여 은행에 지시를 발송하고 그들이 소유한 송금지시액이 송금인의 잔액보다 많은 경우 수인의 수취인은 그들의 권리에 따라 부족한 잔액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4)은행이 송금지시이행을 거부하거나 수취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분보상액송금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인은 이 보상액을 처분할 수 있다.

5)은행이 송금지시발송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금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지시는 무효로 본다. 또한 이 지시는 영수증을 대가로 발송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최장기간에 합의한 경우 차후 수일에 발송예정인 지시에 이행하지 않은 송금지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88조 송금인의 권리소멸 시 은행은 사망통지일로부터 송금인이 발송한 송금지시이행을 중단한다. 수취인의 권리소멸 시 은행은 계속해서 송금지시를 이행한다.

제389조 1)수취인이 파산을 공표한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이 스스로 지시를 수령하였을지라도 송금지시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2)송금인의 파산공표는 송금지시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단, 파산선고이전에 송금지시를 은행에 발송하였거나 법원이 이와 상위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다.

02 제2장 당좌계정(當座計定) (390-408)

제390조 2인간의 계약에 따라 상호관계로 인한 권리와 부채로 공제계정을 제한하여 계정폐쇄 시 최종 잔액만 만기부채가 되는 계약을 당좌계정이라 한다.

제391조 1)은행은 고객의 계정에 대하여 이행하는 업무가 대부 또는 신용대출과 관련된 경우 고객에게 당좌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
2)이 계정이 고객으로부터 공개되어 그 잔액이 대변에 남아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쌍방으로부터 계정을 공개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는 쌍방에 있어서 잔액이 대변 또는 차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제392조 지불금은 당좌계정에 기재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처분할 때까지 현금 또는 동종의 대체물이어야 한다.
2)실제로 존재하는 부채이며 한도가 지정되어야 한다.

3)소유형식으로 계정관리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제393조 계정이 특정한 종류의 업무 또는 화폐에 제한되는 경우 쌍방간 수개의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

제394조 당좌계정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1)수령하여 당좌계정에 기재한 현금재산과 자본이전
2)계정의 기업어음(CP)기재는 합법적이며 어음가격은 만기일에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을 소지인에게 반환하고 이를 제407조2항에 특별히 기재할 수 있다.
3)당좌계정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계정폐쇄와 최종잔액인출 이전에 분리 할 수 없다.
4)당좌계정의 사항과 동 계정의 다른 사항 간 조정 할 수 없다.
5)당좌계정에 기재한 세부기록은 이 사항에 대한 계약과 거래에 관한 쌍방의 권리를 폐지하지 아니한다.
6)당좌계정의 모든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정대변잔액을 처분할 수 있다.

제395조 1)당좌계정쌍방간의 사업관계로 인한 모든 부채는 법적 또는 합의한 담보에 포함되는 경우 법의 판결에 따라 계정에 기재한다.
2)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담보결정에 상관없이 모든 관계인이 명백히

합의한 경우 합의한 담보에 포함된 부채는 당좌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제396조 1)합의담보에 포함되는 부채의 당좌계정 기재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담보는 당좌계정사용 중 발생하는 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채의 액수만큼 계정폐쇄 시 잔액에 대한 담보로 전환한다.
2)법이 담보설정 또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특정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이 담보는 당좌계정잔액의 담보로 전환하지 아니하며 조치이행일자이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97조 쌍방 중 일방의 부채에 대하여 당좌계정을 도입하여 그 특성과 고유성을 상실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지불, 공제, 기소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98조 1)당좌계정의 사항이 다양한 화폐 또는 비 대체물로 구성된 현금부채를 포함하는 경우 쌍방은 이를 당좌계정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할 수 있다. 단, 이에 포함하는 동일한 지불금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부분에서 기재하고 계정이 수개의 부분을 포함하지만 한 부분만 소유하는 당좌계정에 대하여 쌍방이 설명을 한다는 조건하에 그러하다.
2)이 개별부분의 잔액은 송금이 가능하며 쌍방이 지정한 일자 또는 대부분의 계좌 폐쇄 시 한 부분의 잔액인출을 위하여 수개의 부분을 청산할

수 있다.

제399조 1)당좌계정에서 고객의 지불금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자는 합의가격으로 계산한다. 이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시 시장에서 통용하는 이자를 토대로 계산하며 12%를 넘지 아니한다.

2)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정폐쇄일로부터 부채잔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400조 1)당좌계정폐쇄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만기가 됨에 따라 폐쇄한다. 또한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이 기간 이전에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2)계좌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한 통지일자 또는 관습에 통용하는 일자를 고려하여 쌍방 중 일방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 또는 쌍방 중 일방의 파산선고 또는 법인의 종결 또는 영업은행목록에서 해당은행의 제명 또는 은행영업종결을 이유로 계좌를 폐쇄한다.

제401조 은행과 고객간의 당좌계정에 대하여는 은행의 회계연도 말에 계정을 봉쇄한다. 이 봉쇄는 계정을 폐쇄하지 않고 개방하며, 그 잔액이 동 당좌계정에 포함된다. 또한 계정은 다음 첫 번째 영업 일에 재개된다.

제402조 당좌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쌍방이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잔액은 효력 있는 부채로 본다. 또는 계정에 기재하여야 할 일부 업무에 대한 기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잔액의 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인 경우 잔액부채는 이 업무의무게재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403조 부채의 잔액과 그 이자에 대하여는 일정시기 경과 후 소송불허에 대한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제404조 당좌계정에 기재한 부채의 소멸 또는 계정의 부채게재로 인한 이유로 부채한도를 낮추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채게재와 한도의 하향조정을 취소하고 계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405조 당좌계정의 쌍방 중 일방의 채권자는 차압이행 시 무능력자의 채무잔액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에 관한 차압을 이행할 수 있다.

제406조 1)당좌계정 일방이 파산하는 경우 법원이 저당설정 시 차변 잔액의 액수만큼의 가능한 잔액부채에 대한 보증금지급을 중단한 일자 이후 어떠한 자산에 대한 저당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설정 시 채무자에게 지불중단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저당설정 시 차변잔액과 계정폐쇄 시 잔액 간의 차이에 대하여 모든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07조 1)당좌계정에 기업어음의 총 공제액을 기재하고 만기일에 어음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을 공제한 자는 공제요청인의 파산선고 이후에도 이와 상위하는 사실을 기재하여 계정의 어음가격기재를 취소할 수 있다.
2)당좌계정의 차변에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기업어음가격에 상당한 금액기재는 상위하는 사실 기재를 의도한 것으로 본다.
3)만기일자에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한 기업어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위하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이에 상위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408조 거부와 적법성 결여 시 계정명세서 수령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록에 대하여 과실 또는 부주의 또는 기록의 반복으로 당좌계정수정요청이 제기되었을지라도 수정요청에 대한 소송은 이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정명세서 수령일자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계정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정수정 준수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된 당좌계정의 고객이 은행과 상기 언급한 기간 동안 계정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그러하다. 이 두 경우 계정폐쇄일자로부터 5년 경과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03 제3장 은행신용장(銀行信用狀)(409-439)

01 제1절 은행대출(409-410)

제409조 1)은행대출이란 은행이 합의조건과 기간에 따라 채무자에게 대출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인도하거나 은행 내 채무자의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2)대출은 담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채무자는 합의일자에 합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0조 은행대출은 채무자의 특성 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상행위로 본다.

02 제2절 은행보증(411-419)

제411조 1)은행이 보증에 관한 합의조건에 따라 제3자에 우선하여 고객의 채무이행을 약정하는 것을 은행보증이라 하며, 보증기간은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은행보증은 연대성을 갖는다.

제412조 은행보증은 여러 형식으로 이행한다: 1)은행이 어음보증인으로써 상업어음에 서명하거나 1차례 일부 상업어음보증을 허용하는 개별증서를 통하여 어음보증을 제공한다.

2)개별계약은 보증을 통하여 체결한다.
3)보증서는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며 은행은 보증서를 통하여 고객의 채무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13조 은행보증은 주 채무자의 특성 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상행위로 본다.

제414조 보증서는 보증인인 은행이 고객(보증서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을 약정하거나 보증서에 조건을 달지 아니하는 한 기록 또는 조건 없이 타인(보증서수혜자)을 지정하는 것이며, 보증서의 지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보증서에 그 목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415조 1)은행은 보증서발행을 대가로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담보는 현금 또는 상업어음 또는 융통어음(금융어음) 또는 물품이어야 하며 또한 보증서요청자는 보증서수혜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은행에 양도할 수 있다.

제416조 보증서수혜자는 은행의 동의 없이 보증서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17조 1)은행은 은행과 보증서요청자 또는 보증서요청자와

보증서수혜자간의 관계로 인한 이유로 수혜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보증서요청자의 요구에 따라 요청자가 심각하고 확실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조건으로 은행에 있는 보증금을 차압할 수 있다.

제418조 보증서 유효기일동안 보증서수혜자로부터 지급요청을 수령하지 아니하면 은행은 수혜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단, 기간만료이전에 유효기일 갱신에 대하여 명백히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419조 은행이 보증서에 합의한 금액을 보증서수혜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혜자를 대신하여 보증서요청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요청한다.

03 **제3절 신용장개설**(420-427)

제420조 1)신용장개설이란 은행이 일정금액을 고객이 관리하도록 설정하고 고객은 1차례 또는 수 차례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2)신용장개설기간은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1조 신용장개설은 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은 개설된 신용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2조 1)미지정기간동안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신용장수혜자에게 신용장해지 최소 30일 이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조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을 해지할 수 있다. 예고 또는 최소기간의 통지 없이 은행에 미지정 기간의 신용장해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2)어떠한 경우에도 미 지정기간동안 개설된 신용장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장수혜자가 신용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신용장개설통지일자로부터 6월경과 시 신용장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423조 1)신용장수혜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거나 또는 개설된 신용장사용에 있어 수혜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더라도 수혜자의 사망 또는 법적능력상실 또는 미지급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지정기간의 경과 이전에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
2)신용장개설고객이 회사인 경우에도 신용장은 기간의 무효 또는 종결로 해지된다.

제424조 고객이 제공한 물적, 개인적 담보에 대하여 상당한 부족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부족에 대하여 신용장금액을 낮출 수 있다.

제425조 신용장개설은행의 동의 없이 신용장을 인수할 수 없다.

제426조 신용장개설계약은 고객의 특성 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상행위로 본다.

제427조 신용장개설계약은 신용장한도금액과 신용장사용방식을 지정한다.

04 제4절 화환신용장(貨換信用狀)(428-439)

제428조 1)화환신용장이란 은행이 고객(신용장개설 요청인)의 요구에 따라 일정금액 내에서 타인(신용장수혜자)에게 지정한 기간동안 수송화물 또는 수송예정화물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계약을 말한다.
2)화환신용장계약은 이 계약으로 인한 신용장개설계약과는 별개이며 해당은행은 이 계약과는 별개로 본다.

제429조 모든 화환신용장은 최대 유효기일과 지급 또는 수락 또는 할인 목적의 서류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용장유효기일이 은행휴일기간에 종료되는 경우 유효기일을 휴일 이후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한다. 휴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종료일자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은행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신용장개설요청인에게 명백한 권한이 없는 경우 신용장 효력은 연장할 수 없다.

제430조 1)화환신용장개설 또는 확인 또는 통지에 관한 문건에서 지급 또는 수락 또는 할인업무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계약에서 합의한 지급, 수락, 할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수송화물에 관한 서류가 이 계약에 명시한 항목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431조 1)화환신용장은 취소될 수 있고 또는 취소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화환신용장은 취소불능성에 대하여 명백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절대적이다.
3)화환신용장은 분할 또는 인수할 수 있거나 또는 할 수 없다.

제432조 1)취소불능 화환신용장으로 은행이 신용장수혜자에 우선하여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또는 신용장개설요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화환신용장계약의 항목과 조건에 부합하는 선하증권을 취소이전 계약기간동안 교부하는 경우 은행과 신용장개설요청인은 수취인에 우선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433조 1)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화환신용장의 개설계약 이행에 있어 신용장수혜자와 모든 선의의 수취증서소유자에 우선하여 절대적이고 직접적 의무가 있다.
2)절대적인 화환신용장에 대하여는 모든 관계인의 합의 없이 이를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434조 1)화환신용장을 개설한 제3의 타 은행은 취소불능 신용장을 확인하고 신용장개설계약이행에 있어서 신용장수혜자와 모든 선의의 수취증서소유자에 우선하여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화환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통하여 수혜자에게 발송하는 화환신용장 개설 통지는 타 은행의 신용장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35조 1)선하증권은 신용장기간만료 이전에 은행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교부한 경우 은행은 신용장개설요청인이 수취를 요청하여 은행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거절한다.
2)은행은 요청한 증권의 진위여부, 증권의 항목과 신용장조건의 일치여부, 증권의 상호부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6조 은행은 증권이 표면상 신용장에 필요한 증권에 부합한다는 확인을 위한 조사 외 다른 조사는 이행하지 아니한다. 상품에 대한 증권과 자체 상품의 일치여부조사에 대하여 은행의 관할로 보지 아니한다.

제437조 은행은 증권을 수취한 경우 신속히 신용장개설요청인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 증권을 거부하는 경우 즉각 화환신용장 수혜자에게 거부이유와 함께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8조 1)신용장수혜자는 은행이 허가하고 신용장에 명백히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명 또는 수인의 타인에게 신용장을 전부 또는 일부 인도할 수 없다.

2)은행은 신용장개설청구인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을 분할 이행할 수 없다.

3)신용장개설계약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1회 이상 신용장을 인도할 수 없다.

4)신용장 인도는 허용된 경우 신용장 배서를 통하여 또는 소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령을 통하여 인도한다. 명목상의 이전인 경우 이전절차를 따른다.

제439조 1)화환신용장개설요청인은 은행에게 개설신용장의 한도 내에서 은행이 수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은행은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담보로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증권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증권에 명시한 상품에 대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3)신용장개설요청인이 은행에 선하증권도착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신용장조건에 부합하는 선하증권가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상업저당물의 집행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저당권은 보증금으로 이전한다.

5)은행과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된 신용증서도착 이후 채무고객이

화환신용장에 포함한 상품 또는 그 일부를 은행부채 또는 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은행에 양도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이후 쌍방이 합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은행을 대신한 고객의 위탁물 형식의 상품수령과 판매를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의 책임은 수수료대리인의 책임으로 보며 은행은 이 상품 또는 그 가격에 대한 피대리인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04 제4장 상업어음 관련업무(440-449)

01 제1절 할인(440-443)

제440조 1)상업어음의 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하기 전에 은행이 미리 어음수취인에게 어음가격의 지급을 약정하는 합의를 할인이라 한다.

2)은행은 할인수취인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수수료와 어음가격의 이자를 공제한다. 또한 총 금액의 에 대한 할인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441조 1)이자는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어음 할인일자로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경과 기간을 토대로 계산한다.

2)수수료는 상업어음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442조 1)은행은 할인상업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모든 소지인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음의 서명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또한 은행은 어음할인수취인에 우선하여 관리한 금액의 회수와 수령한 이자와 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독립적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은행은 할인어음지급거부이유에 상관없이 미지급어음의 한도 내에서 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제443조 1)은행은 은행에 어음을 배서한 고객계정의 차변에 어음가격과 기타 비용에 상위하는 기록을 기재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상업어음가격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러하다.
2)은행에 고객의 당좌계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상업어음가격과 기타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02 **제2절 수취신용장** (444-445)

제444조 은행이 어음수취인의 역할을 이행하고 이를 통하여 은행의 고객 또는 고객과 거래하는 타인이 회수한 어음을 수취하고 만기 시 어음가격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수취신용장이라 한다.

제445조 은행이 수취상업어음가격을 지급한 경우 고객계정의 차변에 어음가격과 기타비용을 기입한다. 또한 은행은 수취를 약정한 상업어음의 지급 대가로 고객과 사용인에게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03 제3절 상업어음취득 (446-449)

제446조 상업어음소지인은 은행에 대리배서를 할 수 있다. 은행은 이 배서를 통하여 배서인부담의 어음취득을 대리하게 된다.

제447조 상업어음만기 시 은행은 어음수취인 또는 발행인에게 지급을 요청한다.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어음가격을 고객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10] 거절증서(protest)를 발행하거나 미지급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두 경우 은행은 고객의 계정을 동결시킨다.

제448조 1)은행은 대리업무이행에 있어 과실 또는 해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은행은 거절증서발행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또한 이 조건은 은행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과 은행 간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이 조건은 나머지 배서인들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9조 대리배서로 인한 대리업무는 배서인의 사망 또는 법적능력상실로 종결하지 아니한다.

05 제5장 금융어음(융통어음)에 관한 업무(450-466)

[10]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공정증서

01 제1절 금융어음담보대출 (450-457)

제450조 1)금융어음담보대출은 저당대출이다.

2)금융어음이 명목수표인 경우 그 저당은 담보형식으로 설정하였다고 명시하여 수표 자체에 이를 언급하고 수표발행처의 기록에 기재한 양도에 따라 서면으로 이행한다. 금융어음이 소지인의 수표인 경우 유체동산법령을 적용하며 모든 증명방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저당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51조 1)저당금융어음의 소유는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권자인 은행으로 이전한다.

2)은행은 이 수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52조 은행은 저당수표를 보관하여 그 이득을 취득하고 상환 시 수표가격을 수령하고 부채원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453조 지정기간종료 시 은행이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관할법원에 저당수표의 경매 또는 금융어음시장가격을 통한 판매허가를 요청하고 제3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판매액에 대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제454조 수표가 제3의 채무자로부터 양도된 경우 수표소지인이 실질적인 보증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설정부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455조 계약자 쌍방이 지정한 제3의 저당수표소지인은 상기명시한 저당관련 이유로 수표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부담으로 저당수표소유수락 시 이 권리를 소유한다.

제456조 저당설정한 수표의 완전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일부 미지급금의 만기 시 지체 없이 만기 이전 최소 2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이 법의 제453조 법령에 따라 법원에 수표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액으로 미지급액을 충당하고 저당을 대신한 담보로 나머지 금액을 소유할 수 있다.

제457조 저당권자의 우선권은 계약자 쌍방간의 저당권자의 위치로 인하여 지속된다.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수표이득과 이자와 수표를 대신한 어음과 그 가격을 만기일자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02 **제2절 금융어음보관**(458-466)

제458조 은행의 금융어음보관은 고객이 보관에 합의한 금융어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이 어음수령 시 고객에게 계약조건을 명시한 영수증과 어음번호를 발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영수증은 보관어음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갖지 아니하며 단지 계약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제459조 1)은행은 금융어음보관에 있어 보관료를 수령하는 보관자로써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관하는데 있어 은행관습이 규정하는 모든 예방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은행에 이 의무 면제를 규정한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2)은행은 어음의 멸실 또는 도난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60조 은행은 고객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보관하는 금융어음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거나 어음으로 인한 권리를 이행할 수 없다.

제461조 1)은행은 보관 중인 금융어음을 관리하여 그 이득과 만기채권 또는 상환채권가격을 취득한다. 또한 보관을 의뢰한 고객에게 보관의뢰인이 관리하고 의뢰인계정에 기재한 금액보관과 함께 이 어음의 교환과 갱신에 대한 업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2)은행은 어음에 관한 모든 사안 또는 권리를 보관의뢰인에게 통지하여 의뢰인의 허가를 취득하거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의뢰인의 지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의뢰인에게 유용하도록 이를 처분하고 의뢰인은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은행이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62조 1)은행은 의무이행에 대하여 보관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보관료는 보관금융어음의 수와 그 가격을 고려하여 관습에 따라 지정한다.

2)은행은 보관료를 취득하기 위한 담보로 보관중인 금융어음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수령할 때까지 어음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동산보관비용에 대하여 법적 우선권을 갖는다.

제463조 1)은행은 어음상환일자를 준수하여 고객의 요청 시 보관중인 금융어음을 고객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어음상환은 어음보관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은행의 여러 번호의 동종수표상환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동 수표로 상환하여야 한다. 이는 동종의 어음상환 또는 타 어음상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법이 이에 관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464조 보관의뢰인에 대한 어음상환은 어음에 제3자의 소유권을 기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법적대리인 또는 상속인 또는 특정대리인을 통하여 이행한다.

제465조 1)은행이 의도와 상관 없이 금융어음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어음소유권자에 대하여 어음상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어음소지인의 금융어음분실 또는 도난 시 은행은 어음발행처에 이를 통지하고 상환 또는 만기 시 어음이득 또는 가격을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466조 은행에 보관한 금융어음만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은행은 보관의뢰인에게 이를 직접 통지하고 소송에서 이에 관하여 판결할 때까지 어음상환을 거부하여야 한다.

06 제6장 금고임대(467-477)

제467조 1)금고임대란 은행이 임차고객의 관리 하에 특정금고를 설정하고 고객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2)은행은 은행관습이 규정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여 임대금고를 관리하고 금고를 안전하고 이용에 적합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468조 1)임대금고는 두 개의 열쇠를 통해 연다. 은행은 두 열쇠 중 하나는 임차고객에게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보관한다. 은행은 제3자에게 열쇠복사본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은행은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을 제외하고 금고에 진입 또는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임차인이 수령한 열쇠는 은행의 소유이며 임대종료 시 이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3)은행은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11]자기(磁氣)카드와 같은 기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69조 1)은행은 금고의 안전과 관리와 이용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불가항력을 증명하거나 불가항력이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은행 또는 직원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태만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면제조건을 준수할 수 없다.

제470조 1)임차인은 창고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만기일자에 합의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임차인은 창고의 안전 또는 해당장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창고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3)임차인은 은행과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창고 또는 그 일부를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471조 1)창고를 수인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모든 임차인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창고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인의 임차인 중 1인의 사망 시 은행은 사망통지 후 모든 관계인의

---

[11] 자기카드(magnatic card) 자기에 일정한 정보를 입력한 카드이다

동의를 통하여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고를 열 수 있다.

제472조 은행은 임차인의 금고개방일자와 시간을 기재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제473조 은행은 금고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한다고 밝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즉각 참석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금고로부터 위험물을 철거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지정일자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은행소재지 관할법원에 금고를 열거나 비우거나 위험물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 책임자가 참석하고 금고내용물을 증명하는 기록서를 작성한다. 금고를 위협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은 통지 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체책임으로 금고를 열고 비우거나 위험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는 30명 이하로 구성된 은행관할 위원회를 통하여 이행하며 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4조 1)임차인이 만기일자에 금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에 대한 지급예고로부터 15일 경과 후 계약을 자동해지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참석하여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할 것을 통지한 이후 금고를 회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은행에 지정한 최근 소재지로 통지한다.

2)임차인이 지정일자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이 종결한 경우 통지 이후 은행은 은행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원 파견자의 참석 하에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내용물을 증명하는 사건 조서를 기록하고 법원과 은행의 책임자가 각각 서명한다. 법원은 은행 또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 내용물 보관을 명령하여 내용물 소지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475조 은행은 임대료와 수령하여야 할 비용의 수령을 위하여 금고내용물에 대한 보관권과 내용물 판매액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제476조 1)금고내용물에 대한 가압류(假押留)와 본압류를 이행할 수 있다.
2)압류는 은행의 압류증서를 통지를 통해 이행하며 은행은 금치산자에게 금고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통지 수령즉시 금치산자 임차인에 대하여 금고사용을 금지하고 즉각 금고에 대한 압류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위임한다.
3)가압류인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금고내용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4)본압류인 경우 은행은 압류채권자와 집행자의 참석 하에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철거하고 임차인에게 금고개방지정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금고내용물을 판매할 때까지 지정일자에

금고내용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은행 또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내용물을 양도한다.

5)강매에 포함되지 아니한 어음 또는 증서를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금고개방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때까지 이를 집행책임자와 은행책임자의 날인으로 봉인 후 은행에 양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압류채권자는 은행에 압류기간동안 금고임대를 보증하는데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77조 법에 명시한 상황을 제외하고 은행은 임차인으로부터의 허가취득을 통하여 또는 임차인의 참석 하에 또는 법원에서 공표한 판결 또는 명령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금고를 열 수 없다.

04 제4편 상업어음 (478-644)

01 일반법령 상업어음의 정의 (478-483)

제478조 상업어음이란 법이 지정한 형식으로 기재한 수표이며, 이 수표는 인식즉시 또는 일정기간 및 지정가능기간이후 지급하여야 하는 일정현금금액에 대한 권리를 대신한다. 또한 상업적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지급수단으로써 관습에 따라 수취할 수 있다.

제479조 상업어음은 환어음, 공인채권, 소유채권, 수표와 그밖에 상업업무를

위한 발행어음을 포함한다. 상업어음은 거래 시 지급수단으로써 관습에 따라 수취할 수 있다.

제480조 환어음(발행채권)은 발행인으로부터 수취인에 대한 인지즉시 또는 일정기간 및 지정가능 기간에 수혜자의 허가를 위한 일정현금금액지급명령을 포함한 상업어음이다.

제481조 공인채권은 채권발행으로 타인 즉, 수혜자의 허가를 위하여 인지즉시 또는 일정기간 및 지정가능 기간에 일정현금금액지급을 약정한 상업어음이다.

제482조 소유채권은 채권발행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인지즉시 또는 일정기간 및 지정가능 기간에 일정현금금액지급을 약정한 상업어음이다.

제483조 수표는 발행인으로부터 수취은행에 대하여 제3자 즉, 수혜자 또는 소지인의 허가를 위한 발행일자로써 지정일자에 일정현금금액지급에 대한 명령을 포함한 상업어음이다.

02 제1장 환어음 (484-590)

01 제1절 환어음발행 (484-497)

제484조 환어음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수표뒷면에

해당언어로 환어음이라는 단어를 기재.

2)비조건부의 일정현금금액지급명령

3)환어음발행장소와 발행일자

4)발행인의 서명

5)어음수취인의 성명과 직함

6)나머지 환어음가격 지급인의 성명과 이를 수취하는 수혜자의 성명

7)만기일자와 지급장소

제485조 전항에 명시한 수 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수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환어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만기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환어음은 인식 즉시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지급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경우 수취인성명란에 기재한 지정장소를 지급장소, 동시에 수취인의 소재지로 본다. 또한 타 장소의 지급에 대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은 수취인의 소재지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

3)발행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성명란의 지정장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장소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장소는 발행인이 서명한 장소로 본다.

제486조 1)환어음은 서명 또는 엄지손가락의 지장을 통하여 서명한다.

2)두 명의 증인은 지장을 찍은 자에 대하여 서명한 바에 대해 지장과 함께 공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87조 1)환어음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입한 경우 차이가 발생할 시 문자로 기입한 부분이 우선한다.

2)이 금액을 수 차례 문자 또는 숫자로 기입한 경우 차이가 발생할 시 더 낮은 금액이 우선한다.

제488조 1)환어음은 한 금액이상을 포함할 수 없다.

2)환어음이 특정화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각 발행국과 지급국간 화폐로 발행된 경우 지급국의 화폐가 우선한다.

제489조 1)1인 이상 수 인의 발행인은 환어음에 서명할 수 있다.

2)또한 발행인은 제3자에게 그를 대신한 환어음서명을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는 환어음 서명 시 자신의 특성을 밝혀야 한다.

제490조 1)환어음은 인지 시 또는 인지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에 기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환어음에 이자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은 무효로 본다.

3)다른 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환어음발행일로부터 이자를 적용한다.

제491조 1)제3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대신 환어음에 서명한 자는 개인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리서명자가 환어음을 지불한 경우 그의 대리를 주장한 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이 법령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를 초과한 경우 적용한다.

제492조 환어음에 위조서명이 기재되어있거나 허위인물의 소유이거나 의무이행불능자의 소유이거나 다른 이유로 소지인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서명이 기재되어있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환어음에 서명한 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서명이 기재된 경우 나머지 서명인들에 대한 의무는 지속되며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

제493조 상업이 금지된 능력미달자와 불능자의 환어음 서명으로 인한 의무는 무효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2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환어음 소지인에 우선하여 무효로 한다.

제494조 1)환어음은 발행인 자체 요청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2)환어음은 발행인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3)환어음은 제3자의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95조 1)환어음의 형식은 발행국법을 따른다.

2)환어음에 따른 의무이행능력지정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국법을 따른다. 이 법을 타 국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하여야 할 법으로 본다.

3)적용하여야 할 법이 채무자를 능력미달자로 보는 경우 능력미달자가 자신을 완전한능력자로 인정한 국가에서 환어음에 서명한 경우 환어음에 따른 그의 의무는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

제496조 어음수취인 소재지 구역 또는 타 구역에 상관없이 환어음은 제3자의 소재지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97조 1)환어음발행인은 어음수취와 지급을 보증한다.

2)발행인은 수취보증면제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지급보증을 언급하지 아니한 모든 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02 **제2절 환어음유통** (498-510)

제498조 1)모든 환어음에 대하여는 어음이 요청에 의하여 수취하였음을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서를 통하여 유통할 수 있다.

2)발행인이 요청에 따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목을 기입한 환어음에 대하여는 권리이전법령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할 수 없다.

3)환어음수취이전 또는 이후에 상관 없이 어음수취인은 배서할 수 있다.

또한 발행인 또는 다른 채무자도 배서할 수 있다. 이 모든 자는 재차 환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제499조 1)제503조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배서는 조건에 붙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배서를 조건에 붙인 모든 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일부배서는 무효로 본다.

3)소지인의 배서는 백지배서로 본다.

제500조 1)배서는 환어음 자체 또는 관련증서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2)배서는 배서인의 서명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12]백지배서 白紙背書) 이러한 경우 배서의 상태를 위하여 환어음의 뒷면 또는 관련증서의 배서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501조 배서를 통하여 환어음으로 인한 모든 권리는 배서인에게 이전한다.

제502조 백지배서의 경우 어음소지인은 다음의 항목을 이행할 수 있다:1)백지에 자신의 성명 또는 타인의 성명을 기입할 수 있다.

2)백지에 또는 타인에 대하여 재차 환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

[12] 피배서인을 지정함이 없이 배서하는 것을 가리킨다

3)백지에 기입,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환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제503조 1)배서인은 다른 조건에 없는 경우 환어음수취와 지급을 보증한다.
2)배서인은 재차 배서하는 행위는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서인은 차후 환어음배서인에 우선하여 보증의무를 면한다.

제504조 환어음보유자는 최종 백지배서 일지라도 연속배서를 통한 권리취득자라고 증명하는 경우 합법적 환어음소지인으로 본다. 이에 관련하여 말소한 배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배서가 백지최종부분까지 지속된 경우 최종배서의 서명인은 백지배서를 통하여 환어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05조 특정인이 환어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전항에 따라 권리가 있다고 증명할 때까지 환어음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지인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506조 제493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환어음소송이 제기된 채무자는 어음수취 시 소지인이 채무자에 대한 손해발생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발행인 또는 이전 어음소지인 중 1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른 지급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07조 1)배서에 취득가격 또는 지급가격 또는 대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기재하는 경우 소지인은 개인명의를 통한 소송제기권을 포함한 환어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대리방식을 제외하고 어음에 배서할 수 없다.

2)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08조 1)배서가 보증금 또는 배서인의 환어음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저당설정을 포함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환어음으로 인한 모든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소지인이 환어음에 배서하는 경우 이를 대리배서로 본다.

2)이러한 경우 환어음 채무자들은 소지인이 어음취득 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발생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배서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지급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09조 1)만기일자에 대한 추후 배서는 이전배서에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으로 지정한 항의일자 종결 이후 미지불 또는 소지인에 대한 항의를 위한 추후배서의 경우 권리이전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이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배서의 경우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지정한 항의일자종결 이전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510조 배서일자는 제시할 수 없다. 이를 제시한 경우 위조배서로 본다.

03 **제3절 환어음지급대가** (511-518)

제511조 환어음발행인 또는 자신의 부담으로 환어음을 발행한 자는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대가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부담으로 어음을 발행한 자는 환어음배서인과 유일한 소지인에 우선하여 지급대가설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12조 지급인이 환어음 만기에 발행인 또는 발행요청인에게 최소 환어음금액과 동 수준의 금액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대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513조 1)환어음인수는 인수인의 지급대가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지급인과 소지인간의 관계에 있어 이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2)발행인은 거부 시 환어음인수여부에 상관 없이 지급인의 만기일자에 지급대가에 대한 지불의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한 일자 이후 거절증서를 작성시키더라도 지급을 보증한다. 발행인은 지급대가가 존재하고 거절증서작성일자까지 이것이 지속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대가를 자신의 이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대가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514조 1)법령에 따라 지급대가소유권은 환어음을 소지한 계약자들에게 이전한다.
2)지급대가가 환어음금액보다 낮은 경우 소지인은 부족한 대가에 있어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3)지급대가가 환어음 만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전항에 규정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15조 발행인은 법적 지정일자 이후 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지인에게 지급대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증서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리인이 이를 이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관한 비용은 어음소지인이 수령한다.

제516조 발행인의 파산으로 환어음기간을 폐지하고 어음금액지급일자를 해제한다. 발행인의 채권자 중 어음소지인은 지급인의 지급대가에 대한 권리를 수령할 수 있다.

제517조 1)지급인이 파산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그의 채무이며 이 부채는 파산재산에 속한다.
2)파산한 지급인의 발행인이 파산법령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상업어음 또는 금융어음 또는 그밖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재산이

명백히 지정되거나 환어음금액지급의 담보인 경우 소지인은 어음금액으로 인한 권리수령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제518조 1)모두 지불할 수 없는 하나의 지급대가에 수 개의 지급하여야 할 환어음이 존재하는 경우 어음발행시기에 따라 어음금액수령에 대한 우선권을 정한다.
2)수 개의 환어음이 같은 일자에 발행된 경우 지급인이 인수한 환어음이을 제시한다. 지급인이 어떠한 환어음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가로 할당한 환어음을 제시하며 이는 인수하지 아니함을 기재한 조건에 포함된 최종환어음에 속한다.

04 **제4절 환어음인수** (519-527)

제519조 환어음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발행일에서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제520조 1)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2)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의 지급인에 있어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4)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1조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모든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522조 1)지급인은 제1의 제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때에만 그 청구가 거절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2)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23조 1)어음인수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환어음 표면에 기재하고 지급인이 이에 서명한다.
2)지급인의 환어음 표면의 서명만으로 어음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3)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또는 특별한 조건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4)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24조 1)어음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환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2)환어음의 인수 시 다른 기재사항의 변경은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25조 1)발행인이 제3의 지급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급인의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지급인은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지급인이 인수 시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2)환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526조 1)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경우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모든 법적 가능방법을 통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527조 1)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 인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말소는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2)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기타 서명인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자들에 대하여 인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05 **제5절 환어음에 대한 어음보증** (528-531)

제528조 1)환어음 금액지급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2)모든 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환어음의 서명자도 같다.

제529조 1)어음보증은 보증을 의미하는 문언으로 환어음 또는 보전(補箋)에 이를 기재하고 보증인이 서명한다.
2)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서명이 있는 경우 이를 보증으로 본다.
3)보증에 보증된 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530조 1)어음보증은 보증된 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보증은 보증이행이 그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3)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531조 1)보증은 보증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독자적인 증서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다.
2)독자적인 증서를 통하여 보증한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자 외 타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06 **제6절 환어음만기** (532-536)

제532조 1)환어음은 하나의 만기일자를 포함할 수 있다.
2)발행인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환어음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ㄱ)일람출급
ㄴ)일람 후 정기출급
ㄷ)확정일출급
ㄹ)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3)전 두 조항에 언급하지 아니한 만기일자의 환어음은 상업어음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533조 1)일람출급의 환어음은 단순한 제시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일자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일자를 단축할 수 있다.
2)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34조 1)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일자로부터 기산한다.
2)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자를 부기하지 아니한 인수는 인수인에 있어서 제521조에 따라 인수를 위한 어음제시지정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1)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월 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한다. 지급할 달의 대응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2)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월반 또는 수월 반에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반월)이라 함은 15일을 이른다.

제536조 1)발행국과 세력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의 날은 지급국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2)세력을 달리하는 양국간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발행일자를 지급국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또한 이에 따라 환어음의 제시기한을 계산한다.

3)상기 명시한 법령은 단순한 환어음의 조건 또는 항목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대한 의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7 **제7절 환어음지급** (537-549)

제537조 1)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자에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2)어음교환소에 대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법령에 있어 법적으로 통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538조 1)환어음지급인이 환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 어음에 지급을 의미하는 서명을 통하여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상환할 수 있다.

2)소지인은 부분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부분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환어음에 이에 대한 증명과 지급영수증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행인과 배서인과 기타 환어음채무자는 환어음 원금에서 지급한 부분만큼 책임을 면한다. 소지인은 미 지급액에 대하여 항의하여야 한다.

제539조 환어음소지인은 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액지급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지급인이 만기일 이전에 환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540조 타당한 반대 없이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또한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제541조 1)아랍에미리트에서 공식적으로 통용하지 아니하는 통화로 환어음을 지급한 경우 만기일의 환시세에 따라 국내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국내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이 어음에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어음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통화의 환시세는 지급국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2)전항의 법령은 발행인이 통화법령을 준수하고 외부변화를 주시하여 특종의 외국통화로 환어음 지급에 대한 뜻을 밝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3)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국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42조 1)만기일자에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보관자에 양도한 증서에 따라 어음금액을 지급지의 관할법원금고에 공탁할 수 있으며, 이 증서에는 공탁금

액수, 환어음발행일, 만기일, 누구를 위하여 원본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명시한다.

2)소지인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후자는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을 수령하는 대신 공탁증서를 양도하고 증서에 지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소지인은 이 증서에 따라 법원공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소지인에게 공탁증서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환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3조 어음의 분실 또는 소지인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지급 시 반대 또는 지급거절은 수락하지 아니한다.

제544조 1)인수하지 아니하고 수 개의 사본을 발행한 환어음을 분실한 경우 환어음금액을 수령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사본 중 1본에 따라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환어음에 대하여 수 개의 사본을 발행하고 인도양식을 포함한 사본을 분실한 경우 관할법원의 장의 명령에 따라 또는 보증인제시조건에 따라 다른 사본 중 1본에 의거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5조 환어음을 -인수여부에 상관없이- 분실하고 다른 사본 중 1본을 제시할 수 없는 자의 경우 관할법원의 장에게 어음소유권 증명과 보증인 제시를 조건으로 어음금액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6조 1)전 두 조항의 법령에 따라 청구 후 분실한 환어음금액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만기일의 익일에 작성한 거절증서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고 제560조에서 지정한 일자와 방식으로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적절한 일자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에 명시한 기간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47조 만기일자에 환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자는 제544조와 제545조에 언급한 경우 법원명령에 따라 책임을 면한다.

제548조 제544조와 제545조에 언급한 보증인의 의무는 3년 경과 후 소멸한다. 단, 이 기간 동안 청구 또는 소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549조 1)분실환어음 소지인은 어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어음배서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배서인은 소지인을 지원하고 이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소지인은 배서인에서 발행인에게 까지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모든 배서인은 사본이 분실한 원본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기입한 이후 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환어음사본에 배서하여야 한다.

3)관할법원의 장의 명령과 보증제시조건에 따라 이 사본에 따른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

4)모든 비용은 환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

08 제8절 환어음채무자에 대한 소구(遡求) (550-571)

제550조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환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51조 1)소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만기이전에 환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 때

ㄴ)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또는 파산선고 이전의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ㄷ)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2)전항의 ㄱ)과 ㄴ)의 경우에 소구권 행사 시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의 1심법원에 소구권 행사일자로부터 3일 이내 지급유예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유예허가에 대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 지급일자를 지정한다. 단, 만기지정일자에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다.

제552조 1)상업어음만기와 국가공휴일 또는 은행공휴일이 일치하는 경우

익일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인수를 위한 어음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을 포함한 상업어음관련업무는 거래일 이외에는 이행할 수 없다.

3)상업어음관련업무이행을 위한 일자를 지정하고 이 일자의 말일이 국가공휴일 또는 은행공휴일 일치하는 경우 이 일자를 익일거래일로 연장한다.

4)이 일자에 일자와 일치하는 휴일을 계산한다.

5)상업어음에 관한 법적 합의일자계산 시 이 일자의 익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3조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는 관할구역의 공증인을 통하여 작성하며, 공증인은 증서의 사본을 수령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4조 1)거절증서는 환어음의 번역본과 인수, 배서, 보증, 필요 시 어음금액지급,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환어음금액지급예고, 인수자 또는 지급채무자의 참석 또는 부재 증명, 인수 또는 지급거절의 이유, 서명불능 또는 거절, 부분지급 시 환어음금액의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2)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는 환어음지급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알려진 타 주소지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5조 관할지역의 공증인은 매일 거절증서를 기록하고 페이지 번호를 매긴 등기의 일자 순서를 준수한다. 또한 이를 규정에 따라 기입한다.

제556조 관할지역의 공증인은 매달 첫 10일간 관할상업등기사무소에 이전 달에 작성한 지급거절증서목록을 발송하고, 관할상업등기사무소는 이에 대한 기록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자는 지정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일람 또는 그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기사무소는 이 거절증서를 포함한 공보를 작성한다.

제557조 1)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시지정기한의 말일에 제522조에 따른 인수를 위한 제1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2)일람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인수거절증서에 관한 전항의 지정조건에 따라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3)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만기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4)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58조 법이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증서도 거절증서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제559조 1)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보증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파산결정을 제시하면 된다.

제560조 1)소지인은 거절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 상환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어음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 이내에 자기의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전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배서인이 전 배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2)전항에 따라 환어음에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3)배서인중 1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4)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5)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6)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태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필요 시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61조 1)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조건 또는 (거절증서불요)조건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조건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2)이 조건은 소지인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의 어음의 제시와 필요한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적법한 기간의 불 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발행인이 무비용 상환조건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서명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 1인이 이 조건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4)발행인이 이 조건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조건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서명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62조 1)환어음의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소지인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3)어음채무자가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 모든 환어음 서명자의 소구권을 증명한다.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563조 1)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의 원금과 합의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ㄴ)만기 이후 통용하는 환시세로 계산한 이자
ㄷ)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2)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된 금액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환시세와 같은 금액이다.

제564조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한 총 금액과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5조 법원은 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지급 또는 이에 관한 업무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

제566조 1)소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 시 어음과 거절증서와 지급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환어음을 환수한 모든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567조 일부인수 이후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한 자는 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어음에 증명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확한 사본을 의미하는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68조 1)다음의 업무를 위한 지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은 소구권에 있어 환전법 규정에 따라 발행인, 배서인, 기타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
ㄴ)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ㄷ)무비용상환조건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위한 환어음제시
2)발행인이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에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한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3)발행인이 기재한 기한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이 조건에 의하여 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를 면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배서인이 배서에 인수를 위한 환어음제시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제569조 1)지정기간 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2)소지인은 자신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환어음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제560조에 따라 연속으로 통지하여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3)불가항력이 종지된 이후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4)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 이상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30일의 기간은 어음제시기간경과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30일의 기간에 일람기간을 가산한다.

6)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70조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환어음의 소지인은 보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각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보증인, 기타 환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민사절차법의 압류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고 보증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1조 1)환어음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의 경우 보증인 1인에게 새 환어음 지급을 통하여 권리가 만료한다. 이 어음은 일람출급의 환어음이며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소구권에 대한 어음은 법으로 지정한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지급분과 함께 제563조와 제564조에 명시한 금액을 포함한다.
3)소구권의 환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인 경우 환어음금액은 보증인의 주소지에 우선하여 환어음원본지급지에서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금액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4)소구권의 환어음발행인이 배서인 중 1인인 경우 환어음금액은 보증인의 주소지에 우선하여 소구권의 환어음발행인 주소지에서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금액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5)수 개의 소구권의 환어음이 존재하는 경우 환어음 원본발행인 또는 그

배서인은 1개의 소구권 환어음 금액에 대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

09 **제9절 환어음참가** (572-580)

01 **제1관 통칙** (572-572)

제572조 1)발행인 또는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필요 시 어음의 예비인수인 또는 지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2)이 절의 조항에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여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 할 수 있다.

3)제3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수를 하지 아니한 지급인 또는 환어음 채무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인수한 지급인의 경우 참가인이 될 수 없다.

4)참가인은 피 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태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02 **제2관 참가인수** (573-575)

제573조 1)참가인수는 인수가 가능한 환어음 소지인이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2)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인수인 또는 지급인을 지정한 경우 소지인은 예비인수인 또는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인수인 또는

지급인을 지정한 자와 그 후의 서명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그 외의 경우에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수락한 경우 피 참가인과 그 후의 서명인에 대하여 만기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구권을 잃는다.

제574조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 참가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75조 1)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 참가인의 그 후의 배서인에 대하여 피 참가인과 동일한 방식을 행하여야 한다.
2)피 참가인과 보증인은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환어음인도로 제563조에서 지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03 **제3관 참가지급** (576-580)

제576조 1)환어음의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2)지급은 피 참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577조 1)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참가인수자 또는 예비지급자의 경우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에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 시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2)이 기간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예비지급인을 지정한 자 또는 피 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책임을 면한다.

제578조 소지인이 참가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제579조 1)참가지급은 환어음에 피 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2)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0조 1)참가지급인은 피 지급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환어음에 다시 배서할 수 없다.
2)피 지급인 후의 배서인은 책임을 면한다.

3)참가지급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10 제10절 환어음의 복본 (581-583)

제581조 1)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 통의 복본을 발행할 수 있다. 수 통의 복본을 발행한 경우 각 복본에는 복본의 수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각 복본은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2)환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1통의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지인은 자신의 배서인에게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신의 배서인에게 청구함으로써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3)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82조 1)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경우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화 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하고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수인에게 복본을 배서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서명하고 반환을 받지 아니한 각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83조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유한 자의 성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를 거절당한 경우 소지인은 거절증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ㄱ)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1통을 소지인이 청구하여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ㄴ)다른 1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11 **제11절 환어음의 등본과 변조** (584-586)

01 **제1관 등본** (584-585)

제584조 1)환어음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

2)등본은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등본에는 배서와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3)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와 보증을 할 수 있다.

제585조 1)등본에는 원본점유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점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교부를 거절당한 경우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를 통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의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등본작성 전의 최후의 배서 뒤에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배서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을 원본에 기재한 경우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본다.

02 **제2관 변조** (586-586)

제586조 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 그 변조 후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서명한 자는 원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12 **제12절 소송시효경과** (587-590)

제587조 거부와 적법성 결여 시 다음과 같은 소송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1)만기로부터 3년 경과 후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 관련 소송

2)환어음이 무비용 상환의 조건을 포함한 경우 적법한 일자의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자로부터 1년 경과 후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 대한 소지인의 소송

3)배서인이 환어음을 지급한 일자 또는 배서인에 대한 소송제기일자로부터 6월 경과 후 일부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 대한 배서인의 소송

제588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 말일 이전에는 소송이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전조에 명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9조 제587조에 명시한 기간은 채무에 대한 판결을 공표하거나 채무자가 개별서류를 통하여 채무갱신에 대한 승인을 취득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0조 소송시효중단을 채택한 자 이외 타인은 소송시효중단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03 제2장 약속어음 (591-594)

제591조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약속조건 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숫자 또는 문자로 표기한 일정현금금액지급에 대한 무조건의 약정

3)만기

4)지급지

5)지급을 받을 자와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성명

6)발행일과 발행지

7)발행인의 서명

제592조 전 조의 각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어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지급지 또는 발행인의 주소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와 발행인의 주소로 본다.

3)발행지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 이름에 지정한 주소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 증권의 서명지로 본다.

제593조 1)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2)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509조에서 규정한 기간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의미하는 일람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인은 이에 일자를 부기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일람기간은 일람의 뜻을 기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4)발행인이 일람의 뜻의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거절증서의 기간은 일람기간의 효력발생의 초일로 한다.

제594조 1)권한, 환어음 복본과 등본, 배서, 만기, 지급,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지급유예불가, 가압류, 거절증서, 거래기간과 일자의 계산, 환어음발행으로 인한 소구권 이행, 소송시효소멸에 대한 환어음 관련 법령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약속어음에 적용한다.

2)제3자의 주소지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 이자의 약정,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서명의 효과, 위조되거나 허상의 인물의 서명의 효과, 불필요한 서명의 효과,

대리권한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서명의 효과에 관한 법령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3)보증에 관한 법령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보증에 보증된 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04 제3장 수표 (595-644)

01 수표-수표 (595-595)

제595조 이 장에서 명시한 법령을 준수하여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환어음법령을 적용한다.

02 제1절 수표 발행 (596-607)

제596조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지급인의 성명

4)지급을 받을 자와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성명

5)지급지

6)발행일과 발행지

7)발행인의 서명

제597조 전조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의 효력이 없다: 1)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성명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성명에 수 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지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성명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발행인의 성명에 부기한 지가 없는 경우 실체 서명장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598조 1)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표는 국가 내 은행 중 1곳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각 은행은 고객에게 금고의 수표에 따라 지급을 위한 백지수표를 포함한 장부를 교부하고 각 수표에는 양도한 계정소유자의 성명과 계정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3)발행은 은행이 제시한 방식으로 작성한 서면요청을 통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형식상으로 수표를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
4)수표와 서면요청의 서명은 서명견본, 은행에 기재하고 승인된 서명에 일치하여야 하며 계정소유자는 채권계정 또는 채무계정에 상관 없이 은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99조 1)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따라 수표발행 시 발행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지급인이 있지 아니한 경우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2)수표발행인 또는 자신의 계정으로 발행을 요청한 자는 수표지급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계정의 발행인의 경우 배서인과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대가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3)발행인은 거부 시 수표발행인이 발행 시 지급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으로 지정한 일자 이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수표지급을 보증한다.

제600조 1)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기재한 인수는 무효로 한다.
2)지급인은 수표에 인증을 표기할 수 있다. 인증은 수표제시일자에 지급인의 지급대가를 의미한다. 수표의 지급인서명은 인증으로 본다.
3)지급인은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인증을 요청하고 수표금액지급에 충분한 지급대가가 있는 경우 수표인증을 거부할 수 없다.
4)인증된 수표지급대가는 지급을 위한 수표제시기간종결까지 지급인에 대하여 동결하고 소지인을 위하여 지급인의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01조 수표지급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기명식 또는 지시식
2)(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것
3)소지인 출급식

제602조 기명식수표에 (또는 소지인에)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제603조 (통용할 수 없는)조건을 포함하고 한 국가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수표의 경우 이 조건에 따라 양도한 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04조 1)수표는 발행인 자신의 요청으로 발행할 수 있다.
2)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3)수표는 은행지점 간 또는 은행 간 또는 은행본점 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소지인출급식수표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605조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규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06조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07조 지급을 수령하여야 하는 양도된 수표의 경우 채권자의 인도로 채무를 갱신할 수 없다. 기존의 채무는 모든 담보를 통하여 지속되어 수표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03 제2절 수표유통 (608-616)

제608조 1)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를 통하여 유통할 수 있다. 발행인 또는 다른 채무자도 배서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자는 수표에 다시 배서할 수 있다.
2)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수표는 권리이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통할 수 없다.
3)소지인출급식수표는 양도를 통하여 유통한다.

제609조 1)배서인은 반대의 조건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2)배서인은 다시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10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 개인 경우 수표가 지급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1조 소지인출급식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배서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612조 배서로 유통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연속배서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배서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말소한 배서는 이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배서 이후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그 배서에 서명한 자는 백지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13조 소지인출급식수표 또는 배서가능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의 경우 그 수표의 취득자는 전 조에 지정한 방식으로 그의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그 수표를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취득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4조 1)거절증서 이후의 또는 수표제시기간 경과 후에 취득한 배서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력만이 있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증서작성 전 또는 수표제시기간경과 전에 한 것으로 본다.
3)배서기간에 수표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위조로 본다.

제615조 1)어음보증인은 수표금액 또는 그 중 일부 금액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서명한 자도 같다.

제616조 1)일부배서는 무효로 본다. 지급인의 배서의 경우도 그러하다.
2)소지인의 배서는 백지배서로 본다.

04 제3절 수표지금 (617-627)

제617조 1)수표는 발행일로써 지정한 일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2)이 기간 이전에는 지급을 위한 수표제시를 할 수 없다.

3)지급대가가 수표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지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 수표 뒷면에 이 지급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인에게 지급에 대한 증서를 교부하고 이 증서를 통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구권을 증명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18조 1)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6월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전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진행한다.

3)은행 중 1곳에 수표를 제시 또는 수표금액압류는 지급인의 은행 중 이 은행으로부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이행한다. 또한 법으로 통용하는 어음교환소 중 1곳에 대한 수표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제619조 세력을 달리하는 양국 간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자를 지급국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한다.

제620조 1)지급인은 수표제시기간경과 후에도 수표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수표분실 또는 소지인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지급에 있어 반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은행은 전항에 명시한 두 경우 외의 경우에 발행인의 반대에 불구하고 수표를 교환하여야 한다. 법원은 권리에 대한 소송제기의 경우에도 교환중단을 명할 수 없다.

제621조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수표관련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2조 1)수 개의 수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지급대가가 모든 지급에 대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일자 순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2)제시한 수 개의 수표가 하나의 장부와 별개이고 동시에 제시한 경우 그 전의 수표는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수표에 대하여 취득번호를 갖는 것으로 본다.

제623조 1)국가 내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통화로 수표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제시기간 내에 지급일의 가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시기간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가격에 그 국가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수표제시기간경과 후 제1의 수표제시가 있는 때에는 제시기간 종결일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3)외국통화의 가격평가에 있어 시장통용가격을 따른다. 그러나 발행인은 수표에 지정한 가격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수표에 기재할 수 있다.

4)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수표금액을 지정한 경우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24조 요청에 따라 수표분실 시 제시한 보증인의 경우 6월 동안 청구 또는 소송이 있지 아니한 경우 6월 경과 시 그 의무는 종결한 것으로 본다.

제625조 1)수표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수표금액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반대는 수표번호와 금액, 발행인성명, 이를 의미하는 기타 각 항목, 멸실 또는 훼손을 나타내는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반대에 해당국가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이에 관하여 지정한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지급인은 반대를 수령한 경우 점유자에 대한 수표금액지급을 거부하고 수표지급대가를 그의 요청에 따라 분리하도록 할 수 있다.

3)지급인은 반대자의 부담으로 분실 또는 훼손된 수표번호, 금액, 발행인의 성명, 반대자의 성명, 그의 주소지를 아랍어로 국가의 매일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일자 이후 수표에 대한 모든 집행은 무효로 한다.

제626조 1)전조에 명시한 수표점유자는 지급인에게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인은 점유자로부터 영수증의 대가로 수표를 수령하여 반대자에게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반대자는 통지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표만기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반대자가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만기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는 반대에 의의를 두지 아니한다는 판사의 판결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점유자는 지급인에게 있어 소지인이다.

4)반대자가 수표만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인은 수표소유권에 대한 최종판결 또는 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쌍방 간의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상대방 중 지급을 받을 자에게만 지급을 할 수 있다.

제627조 1)점유자가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625조에서 명시한 반대취득일자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음 달 이내에 반대를 통하여 지급인에 대한 수표소유권청구와 수표금액지급허가에 대한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반대자가 전항에 명시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할 것을 결정한 경우 지급인은 발행인 계정의 원문에 지급대가를 다시 기재하여야 한다.

05 제4절 횡선수표(橫線手標)와 계정기재수표 (628-631)

제628조 1)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은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2)횡선을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3)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을 할 수 있다.

4)2조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특정횡선으로 본다.

5)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 없다.

6)횡선 또는 지정은행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29조 1)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자신의 거래인 또는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2)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2조의 횡선 내에 명칭을 기재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이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은행의 거래인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推尋)하게 할 수 있다.

3)은행은 은행의 거래인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4)전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경우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5)이 조에서 (거래인)이란 지급인에 대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인으로부터 수표장부를 취득하거나 이 장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630조 1)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정에 기재)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 기재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인은 지급을 대신하는 서면기록을 통하여 수표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계정에 기재) 항목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3)전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경우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31조 제628조, 제629조, 제630조 법령을 준수하여 수표는 통용가능하고 다른 수표의 모든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06 **제5절 지급거절** (632-635)

제632조 1)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 거절증서를 통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경우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거절증서 대신에 지급인의 선언을 통해 지급거절을 증명하고 수표제시일을 기재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수표에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2)소지인이 요청하고 수표가 무비용상환조건을 포함하더라도 수표의 전항에 명시한 항목기재는 거부할 수 없다. 채무자는 제시기간의 말일에 수표를 제시하더라도 수표제시에 이은 3거래일 이내에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3조 지급거절은 제시기간경과 이전에 전조의 1항에 명시한 방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말일에 제시한 경우 그 거래일 익일에 지급거절을 증명할 수 있다.

제634조 소지인은 수표제시기간 경과 까지 모든 발행인이 지급대가를 제시하고 지급인이 이 대가를 가지고 발행인에 대한 다른 행위로 이 대가가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인에게 수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기간 동안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에 있어 권리를 보전한다.

제635조 1)법정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2)소지인은 자신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560조에 따라 이 연속통지를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3)소지인은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4)불가항력이 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수표제시기간 이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키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인적 사항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07 제6절 변조와 복본 (636-640)

제636조 1)지급인은 수표에 성명을 기재한 발행인으로부터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수표에 명시한 항목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가 발생하였다고 증명하지 아니하면 발행인의 서명의 위조 또는 그 문언에 명시한 항목의 변조를 통한 수표의 지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발행인이 양도한 수표장부보관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37조 1)아랍에미리트에서 발행하여 외국 또는 타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수표의 경우 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수 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2)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한 경우 그 증권의 본문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수 통의 복본은 각별의 수표로 본다.

제638조 1)거부 또는 적법성결여 시 다음 각 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1)수표제시기간종결로부터 2년 경과 후 수표금액지급에 대하여 발행인, 배서인, 채무자에 대한 소지인의 소구권에 관한 소송
2)채무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일자 또는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한 일자로부터 1년 경과 후 채무자 간의 소구권에 대한 소송
3)수표제시기간종결로부터 3년 경과 후 소지인의 지급인에 대한 소송
4)지급대가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가를 제시하고 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한 발행인에 대한 소송과 부당이득을 취득한 모든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상기 명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9조 1)피고인들은 소송시효기간종결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해야 하는 경우 맹세로써 자신의 채무면제를 항변하여야 한다.
2)피고인들의 상속인 또는 타 계승자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가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들이 이를 인지하지 아니하였음을 맹세 하여야 한다.

제640조 1)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제기의 말일 이후에 제638조에

명시한 기간을 적용한다.

2)채무에 대한 판결을 공표하거나 개별증서를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갱신에 대한 승인을 취득한 경우 상기 명시한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소송시효기간종결을 채택한 자 이외의 자는 소송시효에 대하여 명시한 기간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8 **제7절 벌칙** (641-644)

제641조 이하 각 항의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ㄱ)고의로 사실과 상위하게 수표지급대가가 소멸 또는 수표금액보다 대가가 적다고 밝히는 자

ㄴ)악의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지급을 거절하고 이에 관하여 적법한 반대를 제시하지 아니한 소지인의 지급대가를 취득한 자

ㄷ)제632조에 명시한 선언의 작성을 거부한 자

제642조 법원이 벌칙법에 명시한 수표범죄 중 1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한 경우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국가에서 발행한 매일신문에 판결요약문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기재에는 선고받은 자의 성명, 주소지, 직업, 벌칙을 포함한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3조 법원은 벌칙법에 명시한 수표범죄 중 1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한 경우 선고받은 자로부터 수표장부를 발행하고 지정기간 동안 새 장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44조 발행인에 대하여 벌칙법에 명시한 수표범죄 중 1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지인은 민권을 통하여 법원에 필요 시 보상대신 수표금액과 같은 금액 또는 수표금액 중 미지불액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05 제5편 파산과 파산 전 중재 (645-900)

01 제1장 파산 (645-830)

01 제1절 파산선고 (645-667)

제645조 1)파산 전 중재법령을 준수하여 만기에 상업부채지급을 정지하여 재정기반이 악화되고 신용이 불안한 모든 상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2)재정상태의 악화로 부채지급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아니한 또는 비합법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모든 상인은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본다.

3)파산선고는 관할민사법원에서 선고한다.

4)파산선고는 파산의 경우 결정한다. 또한 법이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정지 또는 상인의 지급에 있어 일반적이지 아니하거나 비합법적인 방식이용에 있어 판결의 공표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646조 1)상인의 사망 또는 영업정리 또는 능력상실이 지급정지 동안

발생하는 경우 상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지급일 또는 영업정리 시 상업등기에 상인의 성명을 말소한 일자 또는 상인의 능력상실일자로부터 1년 이내 파산선고요청을 제시하여야 한다.
2)상인의 사망 시 파산선고소송은 상속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상인의 최근 소재지에서 선포한다.
3)상속인은 제1항의 지정기간을 준수하여 상인의 사망 후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상속인이 파산선고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관계인의 이득에 따라 그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647조 1)상인의 요청 또는 채권자 중 1인의 요청에 따라 상인의 파산을 선고한다.
2)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의로 상인의 파산선고를 결정할 수 있다.

제648조 법원이 자의로 상인의 파산선고를 결정한 경우 개정일자에 상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법원은 1시간 이내라도 상인에게 직접통지 후 파산선고를 명할 수 있다.

제649조 1)상인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지급을 중단한 경우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지급중단으로부터 30일 경과 시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파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이 요청은

지급정지의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와 다음의 증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행한다: ㄱ)주요상업등기

ㄴ)계정원금에 따른 최근 예산안과 손익회계의 사본

ㄷ)파산선고요청이전의 2년 동안 또는 영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 동안의 개인비용에 대한 전체 항목

ㄹ)상인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과 지급정지일의 부동산, 동산의 가격에 대한 세부항목

ㅁ)파산선고요청이전의 2년간 상인에 대하여 작성한 거절증서에 대한 항목

2)이 증서는 상인이 일자를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증서의 일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항목의 일부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서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의 서기는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50조 1)상업채무 또는 민사채무에 대한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업채무지급정지의 증명을 제시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의 채무자인 상인의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조건에 따라 지연된 상업채무 또는 민사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무자에게 국가에 통지한 주소지가 없거나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점포를 폐쇄하거나 이를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상업채무지급정지를 증명한다는 조건 하에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51조 상인의 형사처벌과태료 또는 어떠한 종류의 과태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이유로 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수 없다.

제652조 1)파산신고 고려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에 필요한 조치채택을 명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할 수 있다.
2)법원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지급정지의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53조 1)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민사법원이 담당한다. 점포가 여러 곳인 경우 본점의 관할법원이 담당한다. 상인이 영업을 정리한 경우 그 국가 내 상인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담당한다. 소재지가 없는 경우 지급을 정지한 지역의 관할법원이 담당한다.
2)국가 내 효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국가 내 지점 또는 대리점 또는 분점이 있는 상인에 대하여 외국에서 파산선고를 공표하지 아니하더라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점 또는 대리점 또는 분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법원이 파산선고를 담당한다.

제654조 1)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파산으로 인한 모든 요청과 소송을 담당한다.
2)소송이 파산관리에 관한 것이거나 소송에서 파산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파산관련소송으로 본다. 제3자의 파산채무 또는 제3자에 대한 파산채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파산을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파산관리업무로 인한 소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55조 1)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임시지급정지기간을 지정하고 채무자의 점포처분을 명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2)법원은 파산선고를 공표한 즉시 파산선고판결문의 사본을 검찰, 파산관재인, 재정산업부, 상공회의소연합, 관할상업등기사무소, 중앙은행에 발송한다.

제656조 파산을 선고한 부서의 판사가 파산을 담당한다. 파산을 선고한 항고법원의 경우 원심법원부서의 판사 중 1인을 파산담당판사로 선임한다.

제657조 1)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판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할 수 있다.
2)파산판사의 교체의 승인에 대하여 일반항소방식의 항소는 수락하지 아니한다.

제658조 1)파산선고 시 지급정지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고공표일을 임시지급정지기간으로 한다.
2)채무자의 사망 또는 영업정리 또는 능력상실 이후 파산선고를 공표하고 지급정지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 또는 영업정리 또는 능력상실에

대한 기간을 임시지급정지기간으로 본다.

제659조 1)법원은 자의로 또는 검사, 채무자, 채권자, 파산관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임시지급정지기간을 제728조1항의 법령에 따라 이행한 부채목록의 임치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의 경과 후에는 최종지급정지기간으로 한다.
2)이러한 경우 파산선고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급정지기간을 복구할 수 없다.

제660조 1)파산선고 또는 지급정지기간변경에 대한 결정은 등기법령에 따라 상업등기에 기재한다.
2)법원은 이 결정의 발표의 익일에 30일간 법원게시판에 이 결정의 부착을 명령하고 이를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지점 또는 대리점 또는 분점의 관할지역에 발송하여 30일간 이 지역의 관할법원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한다.

제661조 1)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파산선고판결문의 요약문을 매일신문과 법원이 지정한 기타 관보에 게재한다. 이는 결정공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요약문은 파산자의 성명, 소재지, 상업등기의 기재번호, 파산을 선고한 법원, 판결공표일, 임시지급정지기간, 파산판사의 성명,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의 부채의 기재에 대한 채권자의 요청도 기재한다. 지급정지기간변경에 관한 요약문은

이 항목과 법원이 지정한 새 기간을 포함한다. 이는 같은 요약문을 통하여 기재한다.
2)파산관재인은 채무자들의 이름으로 판결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소에 판결요약문을 기재한다.

제662조 1)제3의 이해관계인은 판결을 공표한 법원에 대한 항의방식으로 파산선고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이는 관보에 판결의 요약문을 게재한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659조의 법령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파산소송에서 발표한 모든 판결에 대한 제3자의 항소기간은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공표일로부터 10일이며, 이 기간은 게재일로부터 진행한다.
2)항소판결에 대하여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제663조 파산소송판결의 항소 시 민사절차법에서 지정한 절차와 일자를 따른다.

제664조 채무자가 -파산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 지급하여야 할 부채 총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판결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65조 1)파산소송은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긴급 시 법원에

지급정지요인과 긴급진행의 이유를 포함한 청원서요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1시간 이내라도 상대측의 참석을 명한 후 이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자신의 최근 주소지를 통지하면 된다.
2)파산소송에서 발표한 판결은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 없이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66조 1)채무자가 파산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고의적 파산행위가 드러난 경우 채무자를 5000디르함 이상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채권자 1인이 파산선고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자의 상업적 명성을 훼손하였음이 드러난 경우 채권자에게 전항에 명시한 벌금에 처하고 채권자의 부담으로 법원이 지정한 관보에 이 판결을 게재한다. 이는 채무자의 배상요청권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러하다.

제667조 파산선고 시 파산선고판결 또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게재 또는 항소 또는 파산자 재산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취소 또는 파산자 재산의 보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현금이 없는 때에는 이 비용은 파산판사의 명령에 따라 공공금고에서 지불하고 공공금고는 모든 채권자에 우선하여 제1의 파산부채를 통하여 지불한 금액을 환수한다.

02 제2절 파산채무자 (668-681)

제668조 1)법원은 파산선고판결 또는 추후 판결 시 파산관리금으로 소위 파산관재인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파산판사는 자의로 또는 파산자 및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3명을 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1명 또는 그 이상의 파산관재인의 추가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669조 1)이전에 파산자의 채권자 또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또는 파산선고이전 2년간 파산자의 동업자 또는 고객 또는 회계사 또는 대리인이었던 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2)이전에 위법행위 또는 절도, 횡령, 반역, 사기, 과태파산, 위증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670조 1)파산관재인은 파산재산을 관리, 보존하며, 관재인에 대한 소송은 상업채무 또는 민사채무에 상관없이 파산선고결정공표 이후 제기할 수 있다.

2)파산관재인은 매일 파산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번호를 기재하고 파산판사가 서명하고 끝부분에는 말소에 대하여 언급한 특별장부에 기록한다.

3)법원, 파산판사, 이 장부의 감사위원, 파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판사의 허가를 통하여 장부를 일람할 수 있다.

제671조 1)수 인의 파산관재인의 경우 공동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연대하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그러나 파산판사는 이들의 업무를 분할하거나 수인 중 1인에게 지정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자신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3)수인의 파산관재인은 그 일부에게 대리하여 그들에게 위임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파산판사의 허가를 통하여서만 제3자에게 업무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은 이 업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2조 파산자와 감사위원은 파산판사에게 파산관재인의 업무완료 이전에 이 업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또한 이 항의를 통하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파산판사는 항의 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의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판사의 결정은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673조 파산판사는 자의로 또는 파산자 또는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해임 또는 수인의 파산관재인 수의 감원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파산판사는 이 요청이 제기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결정은 항소할 수 있으며 지정일자에 파산판사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요청은 자동으로 법원에 상정된다.

제674조 1)파산관재인의 선임료과 관련비용은 관재인이 관리보고서를 제출한 후 판사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2)파산판사는 전항에 명시한 보고서 제출 이전에 선임료의 일부를 공제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3)모든 이해관계인은 판사의 파산관재인의 선임료와 기타 비용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의할 수 있다.

제675조 1)파산판사는 이 법에서 지정한 관할당국과 파산관리를 감시하고 그 절차를 용이하게 이행하고 파산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2)파산판사는 채권자에게 법에서 지정한 경우 집회를 소집하고 집회를 주재한다.
3)파산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자 또는 그의 상속자 또는 대리인 또는 고객 또는 타인을 호출하여 파산에 관한 그들의 의견경청을 요구할 수 있다.
4)파산판사는 3월마다 1회에 걸쳐 파산상태와 모든 파산관련 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676조 파산판사가 발표한 판결문은 발표의 익일에 법원서기에게 위임한다. 법원서기는 관계인에게 판결문교부를 명할 수 있다.

제677조 1)파산판사가 발표한 판결문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이

판결문이 판사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불평을 제기할 수 있다.

2)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불평을 제기한 결정발표일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불평을 관할항고법원에 제시하여 항소할 수 있다. 법원은 신속히 심의실에서 그 결정을 발표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방식을 통하여 항소할 수 없다.

3)법원은 항소에 대하여 결정할 때까지 제기한 결정이행의 임시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678조 1)파산판사는 자의로 지원한 채권자 중에서 감사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한다.

2)파산자와 모든 채권자는 감사위원선임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항소로 결정이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679조 감사위원 또는 지정법인의 대리인에 대하여는 파산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써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80조 1)감사위원은 지정관할당국과 채권자가 제출한 예산안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이행하고 파산판사를 지원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시한다.

2)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절차의 진행, 그 성과와 비용, 관련소송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1조 1)감사위원은 업무를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2)감사위원은 파산판사의 결정과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3)감사위원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03 **제3절 파산의 효력** (682-735)

01 **제1관 채무자에 있어서** (682-702)

제682조 1)파산자가 고의로 재산 또는 장부를 은닉하거나 파산판사의 결정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파산판사는 자의로 또는 검사,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자를 구인 또는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 채택을 명할 수 있다. 검사는 공표즉시 이 결정을 이행한다.

2)파산자는 전항에 따라 공표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 항고로 결정이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3)파산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자에 대한 감시 또는 구인, 파산자에 대한 예방책 채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83조 1)파산을 선고 받은 자는 국무위원회 또는 지방의회 또는 상공회의소 또는 직업별조합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하거나 임명될 수 없다. 또한 모든 회사의 운영위원회의 책임자 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상업대리업무 또는 수출 및 수입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금융어음매매의

중개업 또는 경매에 종사할 수 없다.

2)파산을 선고 받은 자는 제3자의 재산관리를 대리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 받은 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를 대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84조 파산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그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떠날 수 없다. 또한 파산판사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국가를 떠날 수 없다.

제685조 1)단순한 파산선고공표로 파산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파산선고공표일에 이를 이행하는 경우 공표 이후에 이행한 것으로 본다.

2)파산자가 기록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권리를 통제 또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한도에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파산공표일 이전에 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86조 파산자에 대한 재산관리와 양도금지는 파산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687조 1)파산자는 파산선고판결공표 이후에 자신의 부채를 지급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그러나 파산자가 상업어음을 소지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543조에 따라 지급에 반대하지 아니하면 만기 시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8조 파산자의 권리와 의무 간 연관성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공표이후 이 권리와 의무를 청산한다. 이 권리와 의무가 하나의 이유로 발생하거나 당좌계정이 이를 포함하는 경우 특별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89조 1)파산자의 재산관리와 양도금지는 파산선고공표일에 파산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파산 시 파산자가 보유할 재산을 포함한다.

2)그러나 재산관리와 양도금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ㄱ)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파산자에게 확정된 지원금

ㄴ)파산자 외의 타인이 소유한 재산

ㄷ)파산자의 개인적 사유에 관한 권리

ㄹ)파산선고판결공표 이전의 적법한 보증계약 시 수혜자가 수령하여야 할 보상, 그러나 수혜자는 법이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파산자에게 지정한 지급정지일로부터 파산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파산에 상환하여야 한다.

ㅁ)제1항에 명시한 파산자의 재산관리와 양도금지는 파산자 개인 또는 가장으로써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권리 또는 순수한 학문적 이득에 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파산자가 활동 또는 상업을 통하여 취득하여 파산자 자신 또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판사가 이에

적절하다고 지정한 액수만큼의 이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90조 1)파산자가 이전에 없었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이 재산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수령하기 전에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2)파산관재인은 파산판사의 감시 하에 파산자가 상속한 유산의 청산, 부채의 지급, 유산에 관한 모든 소송의 정지, 파산선고판결공표를 통한 집행절차이행으로 인한 유산의 청산을 담당한다.

제691조 파산선고판결공표 이후 파산자에 대한 또는 파산자로 인한 소송을 제기 또는 진행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소송은 예외로 한다: 1)파산자의 재산관리와 양도금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과 권리와 양도에 관한 소송

2)법이 파산자에게 그 이행을 허용한 파산업무에 관한 소송

3)형사소송

4)변호행위차단결정에 대한 소송

제692조 1)법원은 파산관련소송에 파산자를 포함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송에 채권자의 이득이 관련된 경우 채권자도 포함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다.

2)파산자로 인한 또는 파산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파산자 개인 또는 개인적 사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 소송이 금전적인

요구를 포함하는 경우 파산관재인도 소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93조 파산선고 이후 파산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닥칠 손해배상을 판결한 경우 선고 받은 자는 파산자와의 공모를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한 배상을 파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94조 1)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말을 경청한 후 파산자 또는 그 부양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요청자에게 파산재산양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파산판사는 자의로 또는 파산관재인 또는 지원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액수를 변경하거나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3)상황의 해결을 확인하여 또는 채권자연맹의 요청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95조 파산자는 파산판사의 허가를 취득하여 파산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새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상업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채권자들은 우선적으로 상업재산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이행한다.

제696조 채무자가 지급정지일 이후와 파산선고판결 이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에 대항하는데 있어 이 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 1)관습에서 통용하는 작은 선물을 제외한 모든 회사

2)지급방식에 상관없이 만기 이전의 부채지급

3)합의하지 아니한 물품을 통한 부채지급, 상업어음 또는 은행송금을 통한 지급은 현금지급으로 본다.

4)이전부채의 담보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다른 합의담보 또는 보증

제697조 파산자가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이행하였던 전항에 언급하지 아니한 모든 양도에 대하여 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양수인이 파산자의 지급정지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에 대항하는데 있어 효력을 갖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698조 전 두 조에 언급한 모든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부채상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어음 또는 수표지급의 경우 자신만을 위하여 환어음 또는 수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상기 언급한 소송을 제기한다. 증권지급의 경우 제1의 배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두 경우 상환을 요구한 자가 상업어음발행 시 채무자의 지급정지를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99조 1)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지정한 담보권 또는 이권은 지급정지일 이후에 이를 기록한 경우 채권자 협의회에 대항하는데 있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항하는데 있어 효력이 없는 담보 이후의 담보소지자에게 담보 또는 이권이 결정된 재산판매금을 통하여 이전담보의 효력으로 취득한 것만을 제공한다. 또한 그 잔액은 모든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한다.

제700조 1)채권자협의회의 권리에 양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 양도로 인하여 파산자로부터 취득한 것과 수령한 물품의 가격을 파산에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일 이후에 수령한 이윤과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양수인은 파산에 배상이 포함되는 경우 파산자가 제시한 배상을 상환할 수 있다. 배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 협의회에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금을 요청하고 그 이상으로 일반채권자로써 파산에 관여할 수 있다.

제701조 파산관재인은 민사거래법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파산선고판결 공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채권자 협의회의 권리에 있어서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모든 채권자의 권리의 양도 이전 또는 이후의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02조 1)파산관재인의 제3자에 대한 소송시효에 대한 법적기간과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채택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지정기간에 파산선고판결확정일로부터 6월을 첨부한다.

2)거부, 적법성결여 시 파산선고판결공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1조에 명시한 법령적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02 **제2관 채권자에 있어서** (703-710)

제703조 파산선고판결공표로 인한 법의 힘으로 채권자협의회가 발생하며 파산자에 대항하는데 있어 채권자의 권리는 파산선고판결공표 이전에 적법한 이유로 발생한다. 또한 이 모든 채권자협의회는 법적인 특성이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이를 대표한다. 담보가 설정된 부채 또는 이권을 가진 소지인은 전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이는 소지인들이 이 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일반 채권자로써 파산에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704조 1)파산선고판결 공표로 일반채권자 또는 일반이권이 있는 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개인적인 조치와 소송을 중단한다.

2)전항에 명시한 채권자의 경우 재산집행절차를 채택할 수 없다.

제705조 1)파산선고판결로 인하여 보통현금채무 또는 일반 및 특정 이권이

설정된 현금채무에 상관 없이 파산자에 대한 모든 현금채무기간을 폐지한다.

2)법원은 이자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연기된 부채에서 파산선고일로부터 채무만기일까지의 법적 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706조 1)파산선고판결로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일반부채이자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수 있다.

2)이 부채의 저당재산 판매금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권이 설정된 부채의 이자를 요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공표이전에는 부채원금을 우선적으로 삭감한 후 만기이자를 삭감하며, 공표 이후에는 만기이자를 삭감한다.

제707조 폐지조건으로 인한 부채를 통하여 파산에 관여하고 대리인을 제시할 수 있다. 중단조건으로 인한 부채의 경우 할당액 중 그 부분을 공제하여 조건의 결과를 명백히 한다.

제708조 1)1건의 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존재하고 이 중 채무자1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경우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파산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파산을 선고한 채무자의 상황을 조정한 경우 그에 대한 조건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9조 채권자가 1건의 채무에 대한 수인의 채무자로부터 부채의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 채무자들 또는 채무자 1인이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나머지 부채에 대하여서만 파산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파산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나머지 부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채무자는 자신이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파산에 관여할 수 있다.

제710조 1)1건의 채무에 대한 수인의 채무자 모두 한번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그의 모든 부채로 모든 파산에 관여하여 원금, 비용,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2)하나의 파산에 대하여 파산에 대한 지급액으로 다른 파산에 관여할 수 없다.

3)채권자가 수령한 총액이 부채와 그 기타비용보다 많은 때에는 채무순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보증된 자의 파산에 첨부한다. 이 순서가 없는 때에는 부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파산에 첨부한다.

03 **제3관 저당이 설정된 부채 또는 동산에 대한 이권소유자** (711-717)

제711조 1)채권자협의회에는 저당 설정된 부채 또는 동산에 대한 이권을 소유한 파산자의 채권자 성명을 게재하고 저당 또는 이권에 대하여 언급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파산판사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저당설정된 부채를 지급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소유한 저당물을 상환할 수 있다.

제712조 1)저당설정 된 동산을 저당관자의 요청에 따라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 추가금액을 채권자협의회를 위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이 판매액이 부채보다 적은 때에는 저당권자는 나머지 부채를 통하여 일반채권자로써 파산에 관여한다. 이는 부채가 이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는 조건하에 그러하다.

2)파산관재인은 저당권자에게 협의회 종결 이전에 저당물 집행에 필요한 법적조치에 대한 채택여부를 통지하여 항변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이 조치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저당권자의 말을 경청한 후 관재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판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파산판사의 저당권자에 대한 판매허가를 통지한다. 이 채권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 이 항고로 판매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713조 1)파산관재인은 파산판사의 허가를 수령한 후 파산선고판결 공표일 이후 10일 이내에 파산선고판결 공표 전 30일에 대한 직원과 피고용자의 임금과 월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부채가 존재하더라도 관재인이 관리하는 파산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이 부채지급에 필요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우선하는 이전의 다른 부채가

존재하더라도 제1의 파산금액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전항에서 언급한 금액보다 많은 우선하는 부채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정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4조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채를 지급하거나 타인이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지급한 경우 그의 부채는 제1의 파산금으로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또한 모든 자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한다.

제715조 파산자에게 임대한 물품의 소지인은 제722조에 따라 임대계약종결 시 파산선고공표 이전의 1년과 그 해당연도 1년에 대하여 수령하여야 할 금액의 보증에 대한 이권이 있다. 임대물 내 동산을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이권이 있다.

제716조 다양한 종류의 세금으로 인한 정부의 지정이권은 파산선고공표 이전의 2년 동안 파산자가 지급하여야 할 세금에 대한 부채만 포함한다. 2년 이후의 지급하여야 할 세금은 일반부채로써 할당액에 포함한다.

제717조 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제안에 따라 필요 시 파산자의 동산에 대한 이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권리의 지급에 있어 제1의 파산금 사용을 명할 수 있다. 단, 제757조1항에 명시하고 반대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채의 최종목록에 채권자들의 이름을 기재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이권에 대한 반대가 제기된 경우 최종판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04 제4관 저당을 설정한 부채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권소유자에 있어서 (718-720)

제718조 동산가격분할 이전에 부동산가격을 분할하거나 이를 동시에 분할하는 경우 저당권자 또는 부동산가격으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제1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와 자신들이 소지한 나머지 부채로 채권자협의회의 권리에 관한 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그들의 부채는 지급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719조 1)부동산가격분할 이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동산가격을 분할하는 경우 저당권자 또는 제1의 채권자는 그들의 부채가 지급된다는 조건 하에 모든 부채를 통하여 분할에 참여한다.

2)저당권자와 제1의 채권자 등급에 따라 부동산을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후 상기 언급한 부동산 가격으로 통하여 모든 부채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수령한 동산가격의 분할금을 공제한 후 부채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이 금액은 일반채권자협의회에 상환한다.

3)채권자가 부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이 취득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일반채권자협의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동산가격할당 이전에 저당 또는 이권이 설정된 부동산가격을 할당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또한 나머지 부채는 파산에 포함한다.

제720조 담보를 설정한 부동산가격을 통하여 일정부분을 수령하지 아니한 저당권자 또는 제1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 본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채권자협의회 업무와 존재하는 경우 법적조정으로 인한 모든 효력을 적용한다.

05 **제5관 파산선고 이전의 적법하고 확정된 계약 시 파산의 효력** (721-724)

제721조 1)파산선고판결로 인하여 쌍방의 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은 개인적인 사유를 토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자를 그 일방으로 하는 계약이다.

2)파산관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은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채택하는 모든 결정은 파산판사에게 보고하여 그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이 있어 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유예를 지정할 수 있다.

3)계약자는 그에게 법적으로 지정한 이권에 대한 배상보존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채권자로써 계약파기로 인한 배상으로 파산에 관여할 수 있다.

제722조 1)파산자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인 경우 파산선고공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단하거나 나머지 계약기간을 종결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상위한 모든 조건은 무효로 본다.

2)임대인이 부동산 내의 동산의 집행을 시작하고 파산선고공표일 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의 예비조치이행권과 일반규정에 따른 부동산철거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파산선고공표일로부터 60일간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공표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를 취소하고 파산판사는 이후 30일간 집행연속정지를 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인에게 집행정지기간동안 임대차계약종결 또는 계약지속에 대한 그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3)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차후 임대료지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담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판사에게 임대차계약종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지속에 대한 의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4)파산관재인은 파산판사의 허가를 취득한 후 비밀리에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는 파산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권자협의회의 실질적이고 명백한 이득이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배상을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723조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 고용인과 파산관재인은 노동법에서 명시한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제724조 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파산 시 대리업무를 종결한다. 그러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득과 관련된 경우 피대리인의 파산으로 업무를 종결하지 아니한다.

06 **제6관 상환** (725-732)

제725조 1)모든 자는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시 자신의 소유권이 증명된 파산의 지정 목적물을 상환하여야 한다.

2)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파산판사의 허가를 취득한 후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관재인이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 사안을 법원에 상정한다.

제726조 1)파산자가 소유한 물품은 임치형태로 상환하거나 또는 소유자를 위한 판매기간 또는 수령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이는 파산의 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러하다. 또한 현금 또는 상업어음 또는 조정 또는 파산자와 매수인의 당좌계정의 기입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가격을 상환할 수 있다.

2)상환의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자가 수령하여야 할 권리를 지급하여야 한다.

3)파산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치한 경우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4)파산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설정하고 채권자가 저당 시 파산자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설정한 부채를 지급한 이후에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727조 파산자에게 인수한 상업어음과 기타 가격이 있는 수표에 대하여는 파산의 목적물이 있고 파산선고 시 그 가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하여 그 가격 또는 이득을 취득하거나 특정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어음과 수표가 상환요청자와 파산자 간의 당좌계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상환할 수 없다.

제728조 파산자가 보관하는 현금은 상환의무자가 파산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전 또는 화폐에 상관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제729조 상환의무자는 전조에 명시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자가 수령하여야 할 권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30조 1)매수인의 파산선고공표 이전에 계약의 결정 또는 조건에 따라 판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파산 목적물이 있다는 조건 하에

파산으로부터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파산선고공표 후 계약파기를 결정한 경우에도 공표 전에 상환 또는 파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조건 하에 상환할 수 있다.

제731조 1)매수인이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파산하고 상품은 매도인에게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보관할 수 있다.

2)상품을 발송한 후 매수인의 창고 또는 매매를 담당한 대리인의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매수인이 파산하는 경우 매도인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분실하거나 파산자가 상품도착 이전에 고의로 재산목록 또는 운송증서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에게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상환할 수 없다.

3)어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파산판사의 허가를 취득한 후 매도인에게 합의가격을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상품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관재인이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파기와 배상청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732조 1)이 법의 제48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격을 지급하기 전, 상품을 매수인의 창고 또는 미미를 담당한 대리인의 창고에 보관한 후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파기 또는 상품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그의 이권은 소멸한다.

2)매도인의 상품상환 또는 상품에 대한 이권을 보전에 관한 모든 조건으로

채권자 협의회에 대항하지 아니한다.

07 제7관 파산자의 배우자의 권리 (735-733)

제733조 1)배우자 중 1명은 자신의 배우자의 파산 시 지급정지일 이전 5년 동안의 희사로 채권자 협의회에 대항할 수 없다.

2)채권자협의회는 배우자 중 1명의 파산 시 파산자의 배우자가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제공한 희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34조 결혼에 따른 재정시스템에 상관 없이 각 배우자는 배우자의 파산으로 일반규정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이 증명된 동산과 부동산 재산을 상환할 수 있다. 이 재산은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통하여 소유한다.

제735조 1)파산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상업에 종사한 일자 이후 매입한 재산은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자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파산재산에 포함시킨다.

2)파산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하여 파산선고일 이전 5년 동안 매입한 재산은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자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파산재산에 포함시킨다.

3)배우자 중 1명이 지급한 파산한 배우자의 부채는 다르게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한 배우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04 **제4절 파산관리** (736-761)

01 **제1관 재산관리** (736-751)

제736조 1)파산판사는 파산선고공표 즉시 파산자의 점포, 사무실, 창고, 장부, 어음, 동산에 대하여 날인한다. 또한 법원관계자를 파견할 수 있다. 각 관할 법원의 장은 파산자에게 재산을 지정하여 이 재산에 대하여 날인한다.

2)파산판사가 1일 이내에 파산자 재산의 조사장소를 지정한 경우 날인하지 아니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이 날인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이행한 자가 이에 서명한다. 조사를 이행한 자가 없는 때에는 판사에게 조서를 양도한다.

제737조 파산자와 부양자에게 필요한 옷과 동산에 대하여는 날인할 수 없다. 파산판사는 파산목적물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파산자에게 양도하고 파산자와 판사는 이에 서명한다.

제738조 1)파산판사는 자의로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ㄱ)상업장부

ㄴ)상업어음과 가까운 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 또는 어음으로 인한 권리보전조치가 필요한 어음

ㄷ)파산목적물의 양도에 필요한 현금

ㄹ)멸실 또는 가격저락의 위험이 있는 물건 또는 보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건

ㅁ)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 점포운영에 필요한 물건

2)전항에 명시한 물건에 대한 조사는 파산판사 또는 판사가 파견한 자의 참석 하에 이행하고 조사한 물건의 목록은 판사에게 양도하여 판사가 이에 서명한다.

3)파산판사가 가능한 경우 파산자의 입회 하에 상업장부를 폐쇄한 이후 장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739조 1)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파산자 재산의 조사에 대하여 날인취소를 명할 수 있다.

2)날인취소와 조사는 파산선고공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제740조 1)조사는 파산판사 또는 판사가 파견한 자, 파산관재인, 법원서기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또한 파산자에게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재산에 대한 목록은 2통의 사본을 작성하며 파산판사 또는 판사가 파견한 자와 파산관재인과 법원서기는 이에 서명한다. 1통의 사본은 법원에 예치하고 다른 1통의 사본은 관재인이 보관한다.

3)이 목록에는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날인을 취소한 재산을 명시한다.

4)조사진행과 재산평가 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41조 상인이 사망한 후 파산을 선고하고 사망 시 조사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선고 이후 상인이 사망하고 조사목록을 작성하기 이전 또는 목록작성을 완성하기 이전인 경우 즉각 목록을 작성하거나 전조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작성을 지속하여야 한다. 이는 파산자의 상속인의 참석 하에 또는 상속인에게 참석을 통지한 이후 진행한다.

제742조 파산관재인은 조사 후 파산자의 재산, 장부, 어음을 수령하고 조사목록의 끝부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서명한다.

제743조 파산자가 예산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즉각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법적 회계감사관에게 위임하고 예산에 대한 업무를 종결한 즉시 법원에 예산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4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성명과 관련사안을 기재한 서신을 수령하고 이를 분류하여 보관하고 파산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745조 1)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대한 파산자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이행하고 이 권리를 요청하고 그 이행을 요구한다.

2)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무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권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3)파산관재인은 파산판사에게 3개월에 걸쳐 1회 이상 파산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6조 1)준비절차기간 동안에는 파산재산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한 멸실 또는 가격저락의 위험이 있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물건에 대하여는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 또는 파산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산자의 말을 경청하거나 파산자에게 판매를 통지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동산판매는 파산판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판매는 민사절차법 내 부동산에 대한 절차에 명시한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파산자재산판매에 대한 파산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747조 1)파산판사는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산자의 말을 경청하거나 또는 파산자에게 통지 후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에 관한 모든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허용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소송에 관한 분쟁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2)분쟁에서 가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가치가 10000디르함 이상인 경우 조정 또는 중재는 이 조건에 대한 판사의 승인 이후 효력이

있다. 판사는 파산자에게 승인 시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참석한 경우 그의 말을 경청한다.

3)파산관재인은 전 두 항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파산자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승인할 수 있다.

4)파산판사가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승인거부를 공표하는 경우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748조 1)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제안 또는 파산자의 요청에 따라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공이익 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점포운영을 지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파산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제안에 따라 점포 운영자와 그 비용을 지정하며, 점포운영을 위하여 파산자를 임명할 수 있다. 파산자가 수령한 임금은 지원금으로 본다.

3)파산관재인은 점포운영을 위하여 임명한 자를 관리하며 영업에 대하여 판사에게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파산자와 파산관재인은 판사가 점포운영지속중단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749조 파산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파산절차를 이행한다. 또한 상속인들은 대리인을 위임하여 업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위임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판사가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의 대리인위임과는 별개로 제3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50조 1)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위하여 수령한 금액은 수령당일 또는 은행의 익일거래일에 법원금고 또는 판사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이는 파산비용을 위하여 할당한 금액공제 후 이행한다. 파산관재인은 예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액에 대한 계정을 파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파산판사의 명령이 없는 경우 파산을 위하여 제3자가 예치한 금액에서 이 금액 또는 기타 비용을 인출할 수 없다.

제751조 1)파산판사는 필요 시 감사위원의 의견을 경청한 후 부채를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재산분배를 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마련한 목록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며 판사는 이 목록에 분배에 대한 사안을 기입한다.

2)파산자와 모든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에 대한 재산분배에 관한 판사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02 **제2관 채무이행** (752-759)

제752조 1) 특정 담보를 포함한 부채이거나 법령에 따라 확정된 부채에 상관 없이 모든 채권자는 파산선고공표 후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증서와 함께

이 채무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보와 파산선고공표 당일의 통용하는 환시세에 따라 국내통화로 평가한 채무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교부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서에 서명하고 관재인은 보고서와 채무증서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 후 이 증서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종결일로부터 1년 동안 증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53조 1)모든 채권자가 관보에 파산선고를 게재한 이후 10일 이내에 예산, 채무증서에 그들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즉각 파산판사가 지정한 매일 신문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전 조항에 명시한 보고서와 그들의 채무증서제출촉구를 게재하고 주소가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신문게재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증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1월로 한다.

제754조 1)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지원, 파산자의 참여 하에 또는 파산자에게 참여 통지 후 채무를 이행한다.
2)수 건의 채무 중 1건 또는 그 액수 또는 그 담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 또는 파산자가 반대하는 경우 관재인은 채권자에게 이를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수령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을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채권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3)채무이행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세금을 이유로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는 정부에 예속되지 아니한다.

제755조 1)파산관재인은 채무를 이행한 후 법원에 채무증서와 채무반대이유와 인수 또는 거절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 채무목록을 임치한다. 또한 부채액수와 저당물의 종류를 지정한 파산자 재산에 대한 저당물과 이에 대하여 지정한 재산을 갖고 있는 채권자명단도 임치한다.

2)이 임치는 파산선고판결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파산판사의 승인을 통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파산관재인은 임치일자로부터 5일 동안 파산판사가 지정한 매일 신문에 임치에 관한 보고서를 게재하고, 파산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목록과 채권자명단과 인수한 채무총액에 대한 보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모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치한 채무목록과 채권자명단을 일람할 수 있다.

제756조 파산자와 채무목록에 이름을 기입한 모든 채권자는 신문에 임치를 게재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국외에서 거주하는 채권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파산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으며 항의는 등기서신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757조 1)파산판사는 전조에 명시한 기간종결 후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한 최종목록을 작성하고 이 채무증서를 첨부하는 보고서에 채무인수와 각 채무금액에 대한 사안을 기입한다.

2)파산판사는 어떠한 항의를 받지 아니한 채무라도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파산판사는 항의기간종결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의를 받은 채무에 대하여 결정한다.

4)파산판사는 이해관계인에게 재판을 개정하기 최소 3일 전에 개정기간을 통지한다. 또한 항의에 대한 결정통지 즉시 이 결정을 이들에게 통지한다.

제758조 1)채무인수 또는 거절에 대한 파산판사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원이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불복신청으로 파산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3)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평가한 채무금액으로 채무에 대한 임시인수를 명할 수 있다.

4)형사소송으로 채무를 거절하는 경우 임시로 인수할 수 없다.

5)채무에 대한 불복신청이 그 담보에 관련된 경우 일반채무로써 임시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6)최종적으로 또는 임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경우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759조 1)적법한 기간에 요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경우 진행중인 분할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들은 항의하여 금액분할을 종결하고 항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이 항의로 파산판사가 명령한 분할이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기 명시한 채권자들은 파산판사가 임시로 평가한 금액으로 새 분할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항의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자신의 할당액을 보유할 수 있다.

3)그 이후 채무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완료한 할당에서 자신의 할당액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할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서 그들이 이전의 할당업무에 참여하여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할당액을 인수할 수 있다.

03 **제3관 비용부족으로 인한 관습(파산)폐지** (760-761)

제760조 1)증재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협회를 결성하기 전 비용부족으로 파산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법원은 자의로 또는 파산판사의 결정에 따라 파산폐지를 명할 수 있다.

2)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으로 모든 채권자는 조치채택과 파산자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행에 있어서 권리를 복권한다.

3)채권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금액, 최종적인 채무인수를 포함한 파산판사의 지급명령과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에 따라 파산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761조 1)파산자와 모든 이해관계인은 파산비용을 충당하는데 충분한 비용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파산관재인에게 이에 충분한 비용을 양도한 경우 어느 때라도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법원은 자의로 또는 파산판사의 요청에 따라 파산재개와 파산절차지속을 명할 수 있다.
3)어떠한 경우에도 전 두 항에 따라 이행한 절차에 대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05 **제5절 파산종결** (762-799)

01 **제1관 채권자협의회 이익소멸** (762-763)

제762조 법원은 제757조에 언급한 채무목록작성 후 파산자가 파산을 제기한 채권자들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원금, 이자, 파산비용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임치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파산자의 요청에 따라 파산종결을 명할 수 있다.

제763조 1)법원은 전 조에 명시한 조건 중 1조건의 이행을 언급한 판사의 보고서를 일람한 후 채권자협의집회 이익소멸로 인한 파산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2)파산은 이 결정의 단순한 공표로 인하여 종결하며 파산자는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 단, 파산자의 회생을 위하여 복권판결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02 제2관 법적 조정 (764-784)

제764조 1)파산판사는 최종적으로 또는 임시로 채무를 인수한 채권자들에게 조정집회 참석을 요청한다.

2)제757조에 명시한 채무목록작성으로부터 7일 동안 채무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집회에 참석을 요청한다. 채무반대가 제기된 경우 채무인수 또는 거절에 대한 파산판사의 최종결정의 불복신청기간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참석을 요청한다.

3)파산관재인은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조정집회 참석요청을 파산판사가 지정한 매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65조 1)조정집회는 파산판사의 지휘 하에 판사가 지정한 장소와 일자에 이행한다.

2)채권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집회에 참석한다.

3)파산자도 집회참석요청을 받으나 판사가 수락할 만한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할 수 없다. 파산자가 구류상태인 경우 파산판사의 명령으로 집회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766조 1)파산관재인은 파산상태, 파산에 관한 절차, 파산자의 조정에 대한

제의, 이에 대한 관재인의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조정집회에 제출한다.
2)조정집회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낭독하고 이에 서명하고 파산판사에게 양도하고 파산자의 말을 경청한다. 파산판사는 집회에서 진행한 바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제767조 1)과반수로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또는 임시로 인수한 채무의 3분의 2를 소유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조정을 이행할 수 없다.
2)조정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제768조 1)파산자에게 대부해준 배우자 또는 친척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조정집회에 참석하거나 조정조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2)이 채권자 중 1인이 파산선고공표 이전에 제3자에게 채무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조정집회에 참석하거나 조정조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없다.

제769조 1)파산자 재산에 대하여 지정한 담보를 소유한 채권자의 경우 이 담보를 이전에 양도한 때에는 담보를 포함한 채무로 조정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양도는 개정기록에 기재한다.
2)전항에 명시한 채권자들 중 1인이 담보양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조정에 대한 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는 담보양도로 본다.
3)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담보를 양도할 수 없다.

4)조정이 무효가 된 경우 양도한 담보는 반환한다.

제770조 1)조정이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에 대하여 동의한 집회 조정기록서에 서명한다.
2)제767조에 명시한 과반수의 채권자는 집회가 10일 연기되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 유예기간을 갖지 아니한다.
3)제1집회에 참석하거나 그 대리인이 참석하여 개정기록에 서명한 채권자의 경우 제2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1집회에서 조정에 대한 그들의 동의는 제2집회에서 유효하다. 단,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이전의 동의를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두 집회 사이의 기간에 자신의 제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제771조 사기파산에 대한 처벌을 선고 받은 파산자와 채무조정을 할 수 없다. 이 범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경우 조정집회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772조 1)파산자에 대한 과태파산에 대한 처벌선고는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이 범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경우 채권자는 조정집회를 이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773조 1)조정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지급기간을 허용한다. 또한 채무의 일부를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자는 일반채무로써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채무를 이행한다.

2)채무자가 조정일자로부터 5년 동안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 경우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채권자는 조정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인 1인 또는 수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74조 1)파산판사는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승인을 위하여 조정기록서를 제출한다. 조정의 각 당사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2)모든 이해관계인은 조정기록서에 서명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파산판사에게 조정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법원은 전항에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후 3일 이내에 조정취소 또는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4)조정은 정당한 사유로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5)조정에 대한 단순한 승인결정발표로 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파산감사위원은 조정조건이행을 감시한다. 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법원은 조정조건이행을 위하여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제775조 1)조정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모든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들의 권리에 적용한다.
2)조정은 이권과 담보를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권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산기간 동안 채무가 발생한 일반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제776조 1)조정승인결정은 파산을 선고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한다. 신문에 게재한 그 요약문은 채무자의 성명, 소재지, 상업등기번호, 승인결정일자와 가장 주요한 조정조건에 대한 요약문을 포함한다.
2)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조정승인결정공표일자로부터 10일 동안 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써 조정감사위원의 이름으로 그 요약문을 파산자의 부동산이 위치한 모든 관할지역에 기록한다. 이 기록으로 조정을 적용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보증을 위하여 상기 명시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한다. 감사위원은 조정조건이행 후 저당소멸을 요청한다.
3)이 법의 제48조 법령을 준수하여 파산관재인은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써 감사위원의 이름으로 조정승인판결요약문을 파산자 점포의 관할지역에 위치한 상업등기소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록으로 조정을 적용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보증을 위하여 파산자 점포의 주요재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한다. 감사위원은 조정조건이행 후 저당소멸을 요청한다.

제777조 1)특정법령에 명시한 권리박탈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의 모든

효력은 법원의 조정승인결정공표로 소멸한다. 또한 이는 형사관련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파산관재인은 파산자에게 최종계정을 제출하고 파산판사의 입회 하에 이 계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3)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결되고 파산자는 영수증에 따라 자신의 재산, 장부, 어음을 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다. 관재인은 파산자가 최종계정승인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파산판사는 모든 진행사안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는 경우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회부한다.

제778조 1)조정에 대한 승인 후 파산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조정을 무효로 한다.

2)조정에 대한 승인 후 파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조정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기행각이 드러난 일자로부터 6월 이내에 조정무효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은 승인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에 대한 승인결정공표일자로부터 3년 경과 후 조정무효요청을 제기한 경우 이 요청은 승인될 수 없다.

3)조정무효로 조정조건이행의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제779조 조정승인 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거나 조정승인 후 이 범죄로 파산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채택을 명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거나 파산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에 따라 폐지한다.

제780조 1)파산자가 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 법원에 조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조정취소로 조정조건이행의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소요청을 담당한 법원의 개정 시 참석하여 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781조 1)법원은 조정무효 또는 취소판결 시 파산판사와 관재인을 임명한다.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날인을 명할 수 있다.
2)파산관재인은 조정무효 또는 취소판결 공표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판결의 요약문을 파산판사가 지정한 매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3)파산관재인은 판사 또는 판사가 파견한 자의 참석 하에 파산자 재산의 추가목록과 추가예산을 작성한다.
4)파산관재인은 새 채권자들에게 채무조사절차에 따라 파산조사를 위한 채무증서제출을 요청한다.

제782조 새 채무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이전에 인수한 채무조사는 재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전액을 지급한 채무는 제외하고 일부를 지급한 채무는 삭감하여야 한다.

제783조 조정에 대한 승인과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공표 후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비용은 채권자들의 권리에 효력이 있다. 채권자들은 비용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민사거래법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조정무효 또는 취소일자로부터 2년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84조 1)파산자는 채권자들에게 조정무효 또는 취소 후 그들의 채무 전액을 반환한다.
2)이 채권자들은 조정에서 지정한 액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원금 전액으로 채권자협의회에 가입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한 상기 명시한 액수만큼 채무원금에서 삭감하여야 한다.
3)전 두 항에 명시한 법령은 조정조건이행을 완료하기 전 채무자에게 다시 파산을 선고한 경우 적용한다.

03 **제3관 재산포기와 조정** (785-786)

제785조 1)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가격을 채권자에게 할당할 수 있다.

2)조정과 그 효과, 무효, 취소에 대하여서는 최종조정관련 법령을 따른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이 포기한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양도할 수 없다.
3)재산은 채권자집회에서 재산판매와 분할 시 지정한 방식에 따라 판매하고 그 가격을 분할한다.

제786조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판매액이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금액은 반환한다.

04 **제4관 채권자집회** (787-799)

제787조 채권자들은 최종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회를 소집한다.

제788조 1)파산판사는 채권자집회설립 후 채권자들에게 파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파산관재인의 연임 또는 교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파산자 재산에 지정한 담보를 소유한 채권자의 경우 이 토론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들의 담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2)참석한 채권자의 과반수가 파산관재인 교체를 결정한 경우 파산판사는 즉각 제3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새 관재인은 채권자집회 관재인으로 명한다.
3)이전 관재인은 협회관재인에게 파산판사가 지정간 일자에 판사의 입회하에 그의 관리에 대한 계정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계정양도일자를 통지한다.

제789조 1)전항에 명시한 집회에서 파산재산의 일부 지원금을 채무자 또는 그의 부양자에게 지원하는 결정에 있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참석한 채권자 과반수가 파산자 또는 그 부양자에 대한 지원결정에 동의한 경우 파산판사는 협회관재인과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액을 지정하여야 한다.
3)협회관재인은 지원액지정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불복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때까지 제공한다.

제790조 1)협회관재인은 수와 비용에 있어 채권자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과반수로부터 위임한 후 이전에 허가 받은 채무자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위임 시 그 기간, 관재인의 권한, 영업하기 위하여 관재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하여야 한다.
2)파산판사의 승인을 취득한 이후에 영업지속에 대한 위임을 이행할 수 있다.
3)영업지속으로 인하여 협회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속에 동의한 채권자는 그들의 특정재산으로 개별적으로 이 초과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채권자가 위임한 한도 내의 업무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각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791조 1)협회관재인은 파산자의 동산, 점포를 판매하고 파산자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파산자의 부동산판매는 민사절차법에 명시한 부동산집행법령에 따라 파산판사의 감독 하에 협회관재인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협회설립이전에 채무자부동산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재인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파산판사가 집행연기를 명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설립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관재인은 제747조에 명시한 법령을 준수하여 파산자의 모든 권리를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다. 단, 파산자에게 조정 또는 중재하는데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92조 1)파산판사는 협회관재인에게 파산자의 동산과 점포의 판매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2)협회관재인은 파산판사의 허가를 취득한 후 채무총액의 대가로 1회에 걸쳐 파산재산을 판매할 수 있다. 파산판사는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모든 이해관계인은 판사의 파산자동산판매방식의 지정에 대한 결정 또는 채무총액의 대가로 1회에 걸친 파산재산의 판매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불복신청으로 결정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793조 1)협회관재인은 파산자재산의 판매액을 수령의 익일까지 법원금고 또는 파산판사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2)관재인은 청산상황과 예치한 금액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3)이 금액은 파산판사의 명령 없이 인출할 수 없다.

제794조 1)세금과 파산관리비용, 파산자와 그 부양자에게 결정된 지원금, 제1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파산자의 재산판매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무에 따라 분할한다.
2)반대를 제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 채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보관한다.

제795조 파산판사는 채권자간의 금액분할을 명하고 분할금을 지정하고 협회관재인은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판사는 필요 시 그가 지정한 매일 신문에 분할결정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제796조 1)협회관재인은 채권자가 채무이행과 인수를 명시한 채무증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채무증서에 지급한 금액을 명시한다.
2)채권자가 채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파산판사는 채무인수를 확인한 후 채무지급을 허가할 수 있다.

제797조 파산업무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협회결성으로부터 6월 경과 시 관재인은 청산상태와 지연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채권자들에게 이 보고서를 발송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한 집회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재인이 청산업무를 완수하지 아니하고 6월 경과 시 이를 재차 이행한다.

제798조 1)협회관재인은 청산업무종료이후 최종계정을 파산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이 계정의 사본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하거나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후 채권자들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이 두 경우 채권자들에게 상기 명시한 계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집회를 요청하고 파산자에게도 집회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2)이 계정에 동의한 후 법령에 따라 협회는 해산하고 파산은 종결한 것으로 본다.
3)협회관재인은 파산종결일자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수령한 장부, 증서,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99조 협회해산 이후 모든 채권자는 자신의 나머지 채무수령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리를 상환한다. 파산채무인수는 이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06 **제6절 소파산(**小破産**) (800-800)**

제800조 파산자 재산목록 작성 후 재산액이 50000디르함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파산판사는 자의로 또는 관재인 및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법령 전부 또는 일부에 의거하여 파산진행을 명할 수 있다: 1)제753조, 제754조2항, 제755조2항, 제756조, 제757조3항, 제770조2항에 명시한 기간을 반으로 단축한다.

2)파산판사의 모든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3)파산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4)파산자 또는 그 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5)채무이행 시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 이의제기에 대한 파산판사의 결정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집회참석을 요청한다.

6)조정은 채권자집회의 단순한 동의로 효력이 있다. 파산판사는 집회의 결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7)채권자협회결성 시 파산관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다.

8)파산재산판매 종결 후 채권자들에 대하여 1회 이상 분할을 이행할 수 없다.

07 **제7절 회사파산** (801-816)

제801조 회사파산에 대하여는 이 장에 명시한 법령과 이하의 조항에 명시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802조 1)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에 지급을 중단하여 재정업무가 불안해진 모든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2)청산단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청산업무를 완료한 경우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3)상기 명시한 법령은 폐지를 선고 받고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03조 주식회사(株式會社),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따른다:
1)회사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회사청산 또는 법적 운영의 각 요청에 대한 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2)회사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파산종결 이전에 회사를 청산하거나 법적 운영할 수 없다.

제804조 1)상황에 따라 회사경영자 또는 청산인은 과반수의 연대보증회사와 위탁회사와 타 회사 내 특별총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회사의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제649조에 명시한 보고서는 파산선고관할법원에 제출한다.
3)이 보고서는 지급을 중지한 이후 퇴사한 연대 동업자의 성명과 그들의 소재지, 상업등기의 퇴사공시일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05조 회사의 채권자는 동업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닌 동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회사의 파산선고를 요청할 수 없다.

제806조 회사의 재정기반에 도움이 되거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자의로 또는 회사요청에 따라 파산선고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채택을 명할 수 있다.

제807조 1)회사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모든 동업자에 대하여도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정지 이후 퇴사한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에 대하여도 파산을 선고한다. 이는 상업등기의 퇴사공시일자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파산을 종결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2)법원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들의 관할법원이 아니라도 이들에 대하여 통합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3)법원은 회사의 파산,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들의 파산에 대하여 1인의 판사를 선임한다. 그러나 각 파산에 대하여 파산관리, 채무조사, 종결방식은 개별적으로 이행한다.

제808조 회사의 파산선고를 요청한 경우 법원은 자신을 위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하고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양도한 모든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판결할 수 있다.

제809조 회사의 재산이 채무의 최소 20%를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회사운영위원회 또는 경영자의 전체 또는 일부에게 연대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회사법에 따라 그들의 책임을 증명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810조 파산을 선고 받은 회사의 대표자는 법에서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표하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파산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직접 참석한다. 또한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 파산판사 또는 관재인에게 직접 요청 받은 정보 또는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11조 파산관재인은 판사의 허가를 취득한 후 동업자들에게 만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파산판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회사채무지급에 필요한 액수만큼 제한할 수 있다.

제812조 회사법에서 지정한 원금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대부증서는 채무이행절차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증서는 회사가 지불할 금액을 공제한 후 명목가격으로 인수한다.

제813조 1)조정제안은 과반수의 연대보증회사와 위탁회사, 타 회사 내 특별총회의 동의를 통하여 마련한다.
2)회사대표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조정제안을 제시한다.

제814조 1)채무총액의 20%를 상회하는 대부증서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 증서소유자 총회에서 조정조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통하여 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정이 합의하지 아니한 조건과 증서에서 발행한 조건을 포함하는 때에는 모든 경우 총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회사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라 증서소유자 총회의 결정을 발표한다.
3)증서소유자 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조정집회요청은 총회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연기한다.

제815조 1)채권자협회를 통하여 회사의 파산을 종결하고 1인 또는 수인의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들과 조정하는 때에는 회사의 재산을 이 조정의 조건에 따른 지급 또는 조건이행보증을 위하여 할당할 수 없다. 조정을 받은 동업자의 경우 연대책임을 면한다.
2)회사와 조정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들이 협회를 통하여 파산을 종결하는 때에는 이 조정으로 회사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회사와 동업자의 파산을 조정으로 종결하는 때에는 각 조정은 개별적으로

이행하고 그 조건은 각 조정의 해당파산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816조 협회를 통한 파산종결로 회사를 해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협회해산 후 나머지 회사재산이 청산업무를 유용하게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증명된 경우 회사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08 **제8절 파산자복권(復權) (**817-830)

제817조 사기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을 통하여 박탈한 파산자의 모든 권리는 파산종결일자로부터 3년 경과 후 복권된다.

제818조 1)파산자게 책임을 면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원금, 비용, 1년 간의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 전항에 명시한 기간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파산자는 복권된다.

2)파산자가 파산을 선고 받은 회사의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인 경우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해당조정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회사채무의 원금, 비용, 1년간의 이자를 모두 지급한 후 복권될 수 있다.

제819조 다음 각 항의 경우 제817조에 명시한 기간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파산자는 복권될 수 있다: 1)자신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고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 이 법령은 파산을 선고 받은 회사의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해당조정을 받고 그 조건을 수령한 경우 동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채권자들이 파산종결 후 자신의 모든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하였다고 증명하는 경우

제820조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파산자의 경우 제818조, 제819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벌칙이행 후 또는 사면 후 또는 벌칙이행정지를 판결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거나 경과하고 소멸한 후 복권될 수 있다.

제821조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파산자의 경우 선고한 벌칙이행 또는 사면 또는 기간경과 후 소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복권될 수 있다. 이는 파산자가 모든 채무금,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 채권자와 타협하여 해결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822조 파산자는 상속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급 후 복권될 수 있다. 전 두 조에 명시한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23조 채권자가 채무수령을 거부하거나 소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금을 법원금고에 예치할 수 있다. 복권에 관하여 예치영수증은 채무면제증서로 본다.

제824조 1)복권신청서는 필요한 증서와 함께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원은 즉각 검사와 상업등기국에 신청서의 사본을 발송하고 파산채무를 수령한 채권자들에게 복권신청서에 대하여 통지한다.

3)신청서의 요약본은 파산자의 비용으로 법원이 지정한 매일 신문에 게재한다. 이 요약본은 파산자 성명, 파산선고공표일자, 파산종결방식, 필요시 채권자들의 반대제기예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25조 검사는 복권신청서 사본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의 종류, 파산범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판결 또는 이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제826조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신문의 복권신청서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필요한 증서와 함께 서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827조 법원은 전조에 명시한 기간 경과 후 복권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에게 이 신청에 대한 재판개정일자를 통지한다.

제828조 1)법원은 관할항고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복권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2)복권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판결공표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829조 복권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파산범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파산자에게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이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사를 완료하거나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공표할 때까지 복권신청에 대한 결정을 중단한다.

제830조 복권에 대한 판결을 공표한 후 채무자가 파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복권에 대한 판결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는 제820조, 제821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그 이후에 복권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02 제2장 파산조정 (831-877)

제831조 1)재정상태가 악화된 상인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지급정지로부터 20일 이내에 파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채무지급을 중지한 상인은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전 항에 명시한 여러 조건을 갖춘 경우 파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합명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 두 항에 명시한 조건을 갖춘 모든 회사에게 파산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 중인 회사의 경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32조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파산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제833조 1)조정 신청자가 신청이전 1년 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조정신청을 수락한다. 이 기간 동안 상업등기와 장부에 관하여 법령이 제시한 업무를 이행한다.
2)경영자는 연대보증회사와 위탁회사 내 과반수의 동업자와 타 회사 내 특별총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34조 유산 또는 유언으로 사망자의 점포를 물려받을 자가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전 상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사망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중 1인이 조정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따라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835조 예비조정을 이행하는 동안 채무자는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836조 파산조정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채무자의 파산선고신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837조 1)조정신청서는 파산을 선고한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이

신청서에는 영업악화원인, 조정제안, 조정제안에 대한 담보를 기입하고 제시한 조정안은 채무금의 50%이상으로 한다. 또한 지급기간은 조정승인일자로부터 3년 이하로 한다.

2)조정신청 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조정에 언급한 항목에 필요한 증서

ㄴ)조정신청 이전 1년 동안 등기법령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한 상업등기사무소의 증명서

ㄷ)조정신청 이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였음을 명시한 상업회의소의 증명서

ㄹ)필요한 상업장부

ㅁ)최근 예산안과 손익계산서의 사본

ㅂ)조정신청 이전의 1년에 대한 개인적인 총 비용에 관한 보고서

ㅅ)동산과 부동산, 조정신청 시 동산과 부동산의 대체가격(對替價格)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

ㅇ)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지, 권리와 채무의 정도, 이에 대한 담보에 관한 보고서

ㅈ)채무자가 이전에 제839조2항에 명시한 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지 아니하였고 예비조정에 대하여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3)회사의 조정에 대한 신청서인 경우 상업등기국에서 승인한 회사설립계약서, 자본에 따른 주요 시스템에 관한 서류, 신청서 제출자에

대한 증명서의 사본과 조정신청에 대한 동업자 또는 총회결정서의 사본, 연대책임을 지는 동업자의 성명과 주소지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조정신청자는 이 증명서에 일자를 부기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일부를 제출할 수 없거나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법원서기는 상기 언급한 증명서수령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제838조 조정신청을 고려 중인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채택을 명하여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 재정악화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속히 조정심의상대방의 부재에도 조정신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839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한다: 1)조정신청자가 제837조에 명시한 증명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만 제출한 경우
2)조정신청자가 사기파산 또는 위조, 절도, 사기, 배신, 공금횡령의 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3)조정신청자가 이전 조정에 필요한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자가 파산을 선고 받고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신청자가 영업을 정리하거나 도주한 경우

6)신청자가 제시하여 조정한 금액할당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840조 법원은 조정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상인이 고의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이를 야기하였다고 밝혀진 경우 상인에게 5000디르함 이상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자의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41조 1)법원은 조정신청을 수락한 경우 절차이행을 명하고 절차이행 시 조정감시를 위하여 판사 1인과 조정관리인 1인 또는 수 인을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2)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금액을 법원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절차이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지정한 기간에 해당금액을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842조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또는 판사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판사가 발표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677조에 명시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843조 제668조에 따라 조정관리인을 임명하고 관리인에 대하여는 제669조에 명시한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제844조 1)법원은 관리인선임결정을 결정공표의 익일까지 조정관리인에게 통지한다.
2)관리인은 선임통지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절차개시결정을 상업등기에 기재하고 그 요약문을 채권자들의 집회참석요청과 함께 조정판사가 지정한 2개의 매일 신문에 게재한다.
3)관리인은 전항에 명시한 기간에 주소지가 알려진 채권자들에 대하여 집회참석요청을 발송하고 조정제안에 대하여 통지한다.

제845조 1)조정판사는 조정절차개시결정을 공표한 즉시 채무자의 장부를 폐쇄하고 이에 서명한다.
2)관리인은 선임통지 즉시 채무자와 법원서기의 참석 하에 조사절차를 개시한다.

제846조 1)채무자는 조정절차개시결정 공표 후 조정관리인의 감시 하에 재산을 관리한다. 또한 자신의 상행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행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기 명시한 결정공표 후 지급한 희사는 채권자들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채무자는 조정판사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결정공표 후

차용하거나 조정 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상행위에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집행행위에도 그러하다. 이행한 모든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847조 1)채무자에 대한 소송과 집행절차는 조정절차개시결정공표로 중단한다. 이 중단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대리인의 연대채무자들은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채무자로부터 제기된 소송과 채무자가 이행한 집행절차는 관리인의 투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조정절차개시결정공표 후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결정하고 기록한 담보와 이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848조 조정절차개시결정공표로 채무기간을 만료하거나 그 이자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49조 조정신청 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은닉 또는 훼손하거나 악의로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제645조에 명시한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자의로 조정절차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850조 1)모든 채권자는 채무가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특정담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절차개시결정의 요약문을 신문에 게재한 일자 또는 통지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채무와

존재 시 그 담보, 결정공표일 통용하는 환시세에 따라 국내통화로 계산한 채무금액을 기재한 채무증서를 조정관리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와 증서를 관리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2)전항에 명시한 기간은 국외에 거주하는 채권자의 경우 30일로 한다.

제851조 1)조정관리인은 전조에 명시한 기간종결 후 조정절차의 참가를 요청한 채권자 명단, 각 채무금액과 이에 필요한 증서와 존재 시 이에 대한 담보와 채무인수 또는 거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관리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설명 또는 증서첨부 또는 채무액수 및 그 특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52조 1)조정관리인은 법원에 채무목록을 위탁할 수 있다. 조정절차개시결정공표일자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필요 시 조정판사의 결정으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관리인은 위탁의 익일3일 동안 조정판사가 지정한 국내 매일 신문에 조정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게재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목록과 각 채무로부터 인수한 금액에 대한 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3)각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위탁한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853조 채무목록에 성명을 기재한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는 신문의

위탁계재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항의할 수 있다. 서면항의는 조정판사에게 제출하며 등기서신 또는 우편 또는 [13]텔렉스(telex) 또는 [14]텔레팩스(telefax)를 통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거리로 인하여 걸리는 기간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54조 1)조정판사는 전조에 명시한 기간종결 후 항의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한 최종목록을 작성하고 채무에 관한 보고서에 채무인수와 인수금액을 기입한다.

2)판사는 이전에 어떠한 항의도 받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채무로 볼 수 있다.

3)판사는 항의기간종결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의를 받은 채무에 대하여 결정한다.

4)판사는 이해관계인에게 재판개정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개정일자를 통지한다. 또한 항의에 대한 결정을 공표한 즉시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제855조 1)채무인수 또는 거부에 대한 조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2)이 불복신청으로 법원이 명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

[13] 가입자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임의의 시간에 전신회선망(電信回線網)에 의해 통신할 수 있는 전신.

[14] 팩시밀리의 하나. 문자, 도표, 그림, 사진 따위의 정지 화상을 흑백의 2치 화소(畵素)로 분해하여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하고, 수신하는 쪽에서 그것과 서로 같은 2치 화상을 재현하는 통신 방식

3)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 평가한 금액으로 임시채무인수를 명할 수 있다.
4)임시채무인수에 대하여는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허가할 수 없다.
5)채무에 대하여 제기한 항의가 그 담보에 관한 경우 일반채무로써 임시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56조 제850조에 명시한 기간에 채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또는 임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857조 1)조정판사는 채무조사종결 후 채권자들에게 조정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기간을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또는 임시로 채무를 인수한 모든 채권자에게 이 집회의 참석요청을 발송한다.
2)조정판사는 지정한 국내 매일 신문에 이 요청에 게재를 명할 수 있다.

제858조 1)조정관리인은 채권자집회지정기간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채무자의 재정상태, 재정상태의 악화원인에 대한 보고서와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 명단을 법원에 위탁한다.
2)이 보고서는 조정에 있어 채무자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관리인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59조 1)조정판사는 채권자집회를 지휘한다.
2)채권자는 자신이 임명한 대리인을 통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채무자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판사가 수락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860조 조정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낭독한 후 조정조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집회에서 조정조건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861조 1)채무의 3분의 2를 소유한다는 조건 하에 최종적으로 또는 임시로 채무를 인수한 두 부류의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조정을 이행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은 이 두 부류의 과반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채무의 경우도 동일하다.
2)대부증서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조정의 경우 제814조에 명시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862조 1)파산조정에 대하여는 제768조에 명시한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2)지정한 담보를 소유한 채권자들의 조정에 대한 투표참여에 대하여는 제769조에 명시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863조 1)투표를 진행한 개정에서 조정에 대하여 서명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본다.
2)제861조1항에 명시한 두 부류의 채권자 과반수 중 1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770조에 명시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64조 1)조정재판개정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판사, 관리인, 참석한 채무자, 채권자는 이에 서명한다.
2)모든 이해관계인은 조정조서의 서명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판사에게 서면으로 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통지할 수 있다.
3)조정판사는 상기 명시한 기간종결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 명하여 조정취소 또는 승인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4)조정취소결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5)조정에 대한 단순한 승인결정공표를 통하여 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결정으로 법원은 채권자들 중 1인 또는 수인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정조건이행을 감시하고 법원에 채무자의 조건위반행위를 통지하도록 한다.

제865조 1)채무자가 조정이행일자로부터 5년 동안 재정능력을 갖춘 경우 조정계약은 채무전액지급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액이 조정으로 인한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자가 재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채권자는 1인 또는 수인의 조정조건이행보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66조 1)조정승인결정은 파산을 선고한 방식으로 공표한다. 신문에 게재한 그 요약문은 채무자의 성명과 소재지, 상업등기번호와 승인결정일자, 가장 주요한 조정조건에 관한 요약문을 포함한다.

2)조정조건이행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써 조정승인결정공표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결정문을 파산자 부동산의 각 관할등기국에 기록한다. 또한 조정에 있어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록으로 조정을 적용하는 채권자권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상기 명시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한다. 감사위원은 조정조건이행 후 저당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67조 파산법령에 따라 일반채무가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정을 적용한다.

제868조 1)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대리인의 연대채무자들은 혜택을 얻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조정을 이행하는 경우 조정에 대하여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건으로 회사채무에 대한 재산을 책임지는 동업자들은 혜택을 얻는다.

2)관련비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절차개시결정공표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제869조 법원은 조정절차개시결정공표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지급기간이 조정을 위한 지정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령을 관련비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870조 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조정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871조 조정조건이행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은 조정조건이행종결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절차폐지결정공표를 요청한다. 이 요청은 제844조에 명시한 방식으로 통지한다.

제872조 절차폐지결정은 신문게재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한다. 또한 이 결정문은 등기관련법령에 따라 상업등기에 기재한다.

제873조 1)조정승인 후 채무자의 사기행위가 드러난 경우 조정은 무효로 한다. 재산은닉 또는 채무위조 또는 보고서에 채무를 과장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로 본다.

2)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에 대한 승인결정공표일자로부터 2년 경과 후 조정무효신청을 제기 시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제874조 1)조정무효로 인하여 조정조건이행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2)채권자는 조정무효판결 이전에 자신이 수령한 채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제875조 채무자가 조정조건을 이행한 경우 조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임이 밝혀진 경우 조정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76조 조정파기로 인하여 조정조건이행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보증인의 위임은 파기요청을 고려한 법원의 개정 시 참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77조 1)조정판사는 조정관리인의 임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문을 결정공표의 익일에 법원에 위탁한다.
2)모든 이해관계인은 위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송사할 수 있다. 송사에 대한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본다.

03 제3장 파산범죄와 조정 (878-895)

제878조 법령을 통하여 파산을 선고 받고 다음의 행위 중 1행위를 이행하는 모든 상인은 사기파산자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상업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훼손한 자

2)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횡령하거나 은닉하는 자

3)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서면 또는 구술 또는 예산안에서 취득하였거나 어음 또는 설명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승인을 취득하고 이를 인지한 자

4)고의로 조정을 받은 자

제879조 회사의 파산선고를 공표하는 경우 회사운영진 또는 경영자 또는 회사를 청산한 자들이 다음의 행위 중 1행위를 행하였다고 증명된 경우 이들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회사장부를 은닉 또는 훼손

2)회사재산의 일부를 횡령 또는 은닉

3)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소유한 증서제출을 거부한 행위

4)고의로 회사에 대한 조정을 받은 행위

5)사실과 상위하는 서명한 또는 지급한 재산을 공개 또는 허위이윤을 분배 또는 법, 회사설립계약, 회사의 기본체제에 명시한 액수이상의 배상의 점유.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관한 결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한 자의 경우 이 조에서 명시한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0조 파산을 선고 받고 다음의 경우에서 중대한 태만으로 채권자의 손실을 야기하였다고 증명된 모든 상인에 대하여 과태파산자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상행위와 상관없는 도박 또는 투기에 막대한 액수를 지출한 경우

2)지급중단 후 조정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자 중 1인의 채무를 이행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3)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또는 조정폐지연기를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처분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현금을 얻기 위한 불법방식을 이용한 경우

제881조 다음의 경우에 파산을 선고 받은 모든 상인에 대하여는 과태파산자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재정상태를 조사하는데 충분한 상업장부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상업등기기재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대리 없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상태에 대한 큰 약정을 하는 경우

4)파산판사 또는 관할법원이 요청한 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지급정지 후 조정을 목적으로 채권자 중 1인에게 특권을 허용하는 경우

6)이전조정으로 인한 약정을 이행하기 전에 다시 파산한 경우

7)막대한 금액을 지급정지 이전 또는 이후에 개인적 비용 또는 자신의 점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제882조 회사파산선고공표 시 회사의 운영진, 경영자, 회사를 처분한 자가 다음의 행위를 이행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이들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1)회사재정상태를 조사하는데 충분한 상업장부를 소지하지 아니한 행위
2)파산판사 또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보고서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3)회사의 지급정지 후 채권자들에게 회사재산의 비공개를 목적으로 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4)조정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회사의 지급정지 후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나머지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채권자 중 1인에게 나머지 채권자에 우선하여 특권을 제공하는 행위
5)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 또는 조정폐지연기를 목적으로 회사의 상품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거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금을 얻기 위한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한 행위
6)막대한 금액을 회사의 업무와 상관 없는 도박 또는 투기에 지출하는 행위
7)위법행위 또는 회사설립계약 또는 기본체제에 가담하거나 이 행위를 용인한 행위.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관한 결정을 준수하였음이 증명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에 명시한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3조 파산자 또는 파산한 회사의 운영진 또는 경영자 또는 회사를 청산한 자에 대하여 사기파산 또는 과태파산으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전 조의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판결을 공표한 경우 민사 또는 상업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또한 법이 지정한 대로 파산업무 관련절차도 진행한다. 법이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법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한다.

제884조 1)파산재산을 관리하는 동안 이를 횡령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고의로 파산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제885조 파산자의 배우자 또는 파산자의 본사 또는 지점에서 나온 자 또는 파산자의 배우자의 본사 또는 지점에서 나온 자라 하더라도 파산재산에 대한 횡령 또는 절도 또는 은닉을 범한 모든 자는 구류와 벌금 또는 둘 중 1벌칙에 처한다. 법원은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더라도 파산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제886조 다음의 행위를 행한 파산자의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1)고의로 파산자의 채무를 가중시키는 행위

2)파산자 또는 제3자와 파산집회 또는 조정집회에서 파산자에게 유리한 투표를 대가로 자신의 특권을 조건으로 붙이는 행위

3)지급정지 후 파산자와 이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채권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종의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인지한 행위. 법원은 파산자와 제3자에 대하여 상기 명시한 합의무효를 결정한다. 또한 무죄를 선고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가 된 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반환을 명한다.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제887조 고의로 자신의 이름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파산 시 허위의 채무를 제공한 모든 자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제888조 1)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조정관리인은 상황에 따라 검사에게 요청하는 모든 서류와 증서와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조사 또는 형사소송 중 서류와 증서는 법원서기가 보관한다. 이 서류와 증서에 대하여는 법원이 다르게 명하지 아니하는 한 열람하거나 공식적인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3)조사 또는 소송종결 후 서류와 증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에게 영수증의 대가로 반환한다.

제889조 다음의 채무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조정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거나 보고서에 재산을 과장하는 자

2)고의로 허위채권자가 되어 조정에 참여할 수 없거나 채무를 과장하거나 집회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고의로 이에 참여하는 자

3)고의로 채권자 명단의 채권자기재를 태만한 자

제890조 다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1)채무보고서에 자신의 채무를 고의로 과장하는 자

2)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조정집회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자

3)채무자와 이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채권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종의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인지하는 자

제891조 채권자가 아니라도 조정집회 또는 투표에 참여하고 이를 인지한 모든 자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제892조 고의로 채무자의 상태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한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구류에 처한다.

제893조 법이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사기파산 또는 과태파산에 대한 형사소송제기로 인하여 파산절차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894조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과 조정투표의 대가로 채권자의 이권수령 또는 나머지 채권자의 손해발생에 관한 합의에 대한 범죄의 경우 형사법원은 자의로 이 합의의 무효를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가 된 합의에 따라 수령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제895조 파산범죄에 대한 모든 형사판결은 파산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재한다.

04 제4장 벌금과 비용 (896-900)

제896조 검사가 제기한 과태파산에 관한 벌금과 형사소송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 협의회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97조 조정의 경우 소송비용은 파산자가 부담한다. 또한 공공금고는 조정 시 허용기간종결 후 파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98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의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비용은 파산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부담한다. 파산자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공공금고가 이 비용을 부담하며 금고는 파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99조 채권자 중 1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비용은 파산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자신이 부담한다. 파산자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공공금고가 이 비용을 부담하며 금고는 파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0조 사기파산에 관한 벌금과 형사소송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협의회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채권자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개인적으로 기소하고 파산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